

연구보고서 2017-06

제주지역 아동학대 실태 및 예방대책

| 김 홍 석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제주지역 아동학대 실태 및 예방대책

연구책임자 : 김 흥 석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연구원)

연구기간 : 2017년 4월 ~ 9월



(재) 제주여성가족연구원
JEJU WOMEN & FAMILY RESEARCH INSTITUTE

발 간 사

제주지역에서는 전국최초로 2007년 6월 20일에 「제주특별자치도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2008년도부터는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은 제주지역의 아동학대 발견율과 신고인식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주지역 아동학대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정에서 친부모에 의해 아동학대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본 연구는 아동학대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관심과 보호체계가 요구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제주지역 아동학대의 실태와 부모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조사, 전문가 심층면접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 더 나아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 및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본 연구가 마무리되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먼저 좋은 의견을 주신 연구자문위원님, 아동학대 예방대책에 마련을 위해 심층인터뷰에 응해주신 열분의 면접자 분들, 조사에 응해주신 응답자분들과 조사를 담당해주신 조사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연구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꼼꼼히 검토하여 의견을 주신 외부 연구평가위원님, 아동학대 예방 정책과 관련하여 도움주신 여성가족정책 관련 공무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책임을 맡아 진행한 김홍석 연구원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본 연구가 제주지역사회에서 아동학대 근절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2017년 9월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원장 이 은 희

연구 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 제주도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부모교육과 신고위무자 대상으로 끊임없이 교육을 실시하여 왔으며, ‘제주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매년 4월 27일에 도내의 아동학대 피해 심각성 등을 도민에게 알리고 아동학대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현재의 도정책의 중심방향은 아동학대 신고위무자 중심의 교육과 아동학대 발생 후 대처서비스에 비중을 두고 있어 제주사회의 아동학대 인식개선에 한계점이 있음. 궁극적 목적인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대처체계(사후대처 서비스) 중심의 정책에서 예방체계 정책으로 관심 변화가 필요함
- 아동학대 사례를 보면, 대부분의 아동학대가 부모에 의해 이루어지며, 학대에 대해 무지하거나 인식이 낮아 자녀를 때리거나 방임 혹은 폭언 등 정서적 학대를 하면서도 학대인 줄 모르는 것으로 나타남
- 아동학대 조사를 위해 가정을 방문한 관계자들은 종종 부모들의 항의에 직면함. “내 자식 내 맘대로 하지 못하냐”, “아동이 잘못해서 혼육 및 교육차원에서 아동을 지도했는데 왜 그러냐”, “내 자식 교육하는데 간섭하지 말라” 등 아직도 우리사회에서 아동학대가 제대로 인식되지 않는다는 반증임
- 본 조사연구의 목적은 아동학대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관심과 보호체계가 요구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제주지역 아동학대의 실태와 부모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조사를 통해 아동학대 예방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있음

2. 연구 내용과 방법

가. 연구내용

- 제주지역 아동학대 현황 및 정책 파악
- 제주지역 아동학대 실태 및 인식 조사
- 제주지역 아동학대 예방대책 및 정책

나. 연구방법

1) 문헌연구

- 문헌연구는 아동학대 현황 및 동향 파악, 아동학대 예방대책 및 정책 파악, 이론적 배경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함

2) 설문조사

- 아동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선정한 11개 초등학교 5,6학년 626명으로, 제주지역을 2개의 권역(제주시, 서귀포시)로 나누고 다시 제주의 동쪽과 서쪽 지역 학교 수를 고려하여 각 학교마다 학년당 1개반만 표집하였으며,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양육태도, 훈육방법, 아동이 지각하는 학대 경험,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함
- 부모는 10대 학생을 자녀로 둔 부모 500명(부: 250명, 모:250명), 제주지역을 4개의 권역(제주시 동, 서귀포시 동, 제주시 읍면, 서귀포시 읍면)로 나누어 할당하여 표집하였으며, 부모의 양육행동, 훈육방법, 아동학대 경험과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학대 인식 등을 조사함

3) 심층면접 조사

- 심층면접 조사는 아동학대 예방 및 치료, 보호 관련 전문가 10섭외하여 현장에서 느끼고 경험하는 아동학대의 어려움과 아동학대 예방대책 및 정책방향을 찾기 위해 심층면접을 진행함

제2장. 아동학대 현황 및 정책

1. 선행연구 검토

가. 아동학대 인식

- 아동학대 인식을 최근 연구 중심으로 살펴보면, 아동학대 인식이 개선은 됐지만 아직도 개선의 여지가 많이 보고됨
- 심각한 신체학대는 학대로 인식하는 반면 가벼운 신체학대는 학대로 인식하는 정도가 낮으며, 많은 부모가 아직도 정서학대를 아동학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굿네이버스 아동권리실태조사, 2016)
- 신체적 학대인 경우에 부모들은 심각한 폭행이나 상처가 나타나야 아동학대라 인정하며, 훈육차원의 체벌은 아동학대로 인정하지 않음. 정서적 학대인 경우에 신고도 적도 증거도 없다고 보고 있으며, 폭언은 학대로 인정하지 않음. 방임인 경우는 부양자가 정신질환이 원인 경우에 많이 발생하며 아동은 학대 고위험에 노출됨. 하지만 타인에 의해 내 자녀가 폭력을 당한 경우는 경미할지라도 아동학대라 생각함(문제우, 김상철, 이선화, 오현주, 2016)
- 아동들은 부모에 의해 학대유형 중 방임을 가장 많이 경험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정서적 학대, 신체적 학대로 나타남. 학대에 대처하는 방법으로 “그냥 가만히 있거나 꺾 참는다” 와 같은 무반응적 대처방식이 가장 많이 나타남(임흥수, 박송춘, 2016)
- 미취학아동 부모들은 훈육과 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학대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행위를 자신이 행할 경우에 훈육으로 생각함(오정옥, 이경원, 2015).
- 아동학대 현장에 있는 실무자들은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과 민감성이 상당히 높아졌지만, 아동학대 행위자들은 인식이 낮아 여전히 학대하고 있어도 학대인 줄 모르며, 사회적 개입도 강하게 거부함(김혜정, 신희영, 2017)

나. 선행연구에 제시된 아동학대 예방대책

- 최근에 선행연구에 나타난 예방대책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문제우 외(2016)의 연구

를 살펴보면,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다양한 예방대책이 제시되었으며, 그 중 여러 연구자가 공동적으로 가장 많이 제안하는 예방대책으로는 ‘관련기관 간 공조체계 구축’이며, 다음으로 ‘신고의무자 확대, 교육, 보호’와 ‘지역사회지원체계 구축’, ‘예비부모 또는 부모를 대상으로 상담·교육 확대’와 ‘보호시설 확충 및 인프라 구축’ 등이 있음

다. 아동학대 근절 체계와 정부정책

- 2014년 2월에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조기발견·보호 종합대책」이 발표하였지만, 계속되는 아동학대 사망 사건 발생으로 정부는 2016년 3월 29일(화)에 국무총리 주재로 ‘제 8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방법을 총 망라한 종합대책인 「아동학대 방지 대책」을 마련함
- 「아동학대 방지 대책」에서는 아동학대를 단계별로 근절하기 위한 체계(예방 및 발견 단계, 신고 및 수사단계, 사후 관리단계),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역할을 나누어 제시하고 있음(조범근 외, 2017)
- 아동학대 정부정책 방향은 크게 3가지로서, 핵심과제로서 아동학대 대국민 인식개선에 중점을 두고, 아동학대 예방 및 조기발견 강화, 아동학대 신속 대응 체계 구축하여 세부 정책을 실시하고 있음. 이러한 정책이 그대로 잘 실현된다면 아동학대 근절과 예방정책으로는 효과적임. 하지만 현장이나 지역에서 느끼는 체감도는 낮음

2. 제주지역 아동학대 현황

- 제주지역 아동학대 신고인식과 발견율은 전국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이 결과는 제주지역의 아동학대 인식이 많이 개선됨을 보여줌
- 제주지역은 아동학대 전국대비 아동학대 발생 비율이 2014년 2.87%, 2015년 2.13%, 2016년 1.48%으로 나타났으며, 제주지역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신고 비율은 2014년 21.4%, 2015년 17.1%, 2016년 20.8%으로 나타남
- 제주지역 아동학대 행위자는 부모가 학대한 경우 2014년 67.7%, 2015년 72.8%, 2016년 74.9%로 나타났으며, 부모 중에 친부의 비율이 높았음. 또한 아동학대 유형별로

살펴보면, 중복학대가 가장 많았으며, 중복학대를 구분하지 않고 살펴보았을 때는 신체학대와 정서학대가 높게 나타남

- 피해아동 보호조치 결과를 살펴보면, 원가정 보호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친족 보호가 많음

3. 제주지역 아동학대 정책

- 2007. 6. 20일 전국최초로 「제주특별자치도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가 제정·시행됨에 따라 민·관이 함께하는 보다 적극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2008년도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의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지원 정책은 정부의 정책방향과 맥을 같이하여 「2017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종합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음

가. 아동인권 보호 및 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추진

- 아동복지시설장 및 종사자 대상 교육실시
- ‘아동학대 추방 의 날’ 기념 강의를 통한 대도민 교육실시
- 부모 및 아동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확대 추진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의무 교육 체계 확립
- 생애주기별 부모대상 교육 실시
- 아동의 학대 인지 및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한 아동대상 교육 실시

나. 아동복지시설 내 아동 인권 확산 사업 추진

- 시설내 아동인권 보호를 위한 ‘아동학대 신고함’ 등 운영 철저
- 시설내 ‘운영위원회’ 운영 및 아동인권 보호관 활동 강화
- 시설 보호 아동 중 심리정서 치유가 필요한 아동에서 치료비 지원

다. 학대피해아동 발굴체계 구축

- 학대를 받고 있어도 발견되지 못하는 위기의 아동을 발굴하기 위해 민간네트워크 활용

라. 아동학대 사건에 적극적 대응

- 아동학대 예방 유관기관별 역할을 명확하여 단계별 협력방안 마련

마. 학대피해아동 가족기능 강화 및 재학대 방지 대책

- 학대행위자 대상으로 행위자 특성(성학대, 알코올, 가해부모 등)에 따른 맞춤형 상담 교육 치료 프로그램 실시
- 원가정보호 조치 후 모니터링 방법적 모색
- 원가정 보호 시에도 민관 협력체계를 통해 지속적인 사례관리 추진
- 재학대 방지를 위한 학대피해 대상아동 및 가족에 대한 심리치료 서비스 지원

제3장. 제주지역 아동학대 실태 조사 분석 결과

1. 초등학교 아동학대 실태 및 인식

가.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양육태도와 훈육방법

- 아동들은 부모들이 대체적으로 애정과 관심을 갖고 양육하고 있다고 생각함. 하지만 소수의 부모들은 자녀가 잘못하면 신체적 처벌을 훈육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아동에게 관심이 없는 부모들도 소수 있음. 또한 높은 편은 아니지만 부모들은 자녀에게 과잉기대와 과잉간섭을 하고 있음
- 부모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훈육방법은 ‘말로 야단치기’이며, 다음으로 ‘장남 감이나 게임기, 휴대폰 사용 제한하기’, ‘선물, 말로 칭찬하기, 칭찬스티커 주기’ 등이며, 신체적 처벌은 5%, 벌세우기는 9.5%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나. 학대 받은 경험

- 아동은 전반적으로 신체학대를 낮게 경험하고 있으나, 눈여겨 볼 부분은 심각한 신체학대에 비해 가벼운 신체적 학대는 아동이 많이 경험하고 있다는 것임. 또한 신체적 방임과 정서방임 경험은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남
- 아동들에게 직접적으로 정서적 학대를 당한 적이 있는지 묻었을 때는 ‘전혀 없음’ 이 92%로 나타났지만, 구체적 정서학대 문항에서는 ‘전혀 없음’ 이 39.4% ~ 86.1%까지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면, 아동들이 정서학대에 대한 인식 부족함을 알 수 있음. 또한 부모들은 자녀훈육에 있어서 정서적 학대인 욕을 사용하거나 심하게 언어적 야단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성학대 경험은 소수의 학생이 경험했던 것으로 나타남

다. 아동학대 인식

- 학대받는 아동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을 알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40.0%의 아동들이 ‘모른다’ 고 응답하였으며, 그리고 60.0%의 아동들이 아동학대 신고전화를 ‘모른다’ 고 응답함
- 생활하면서 고민이 있거나 어려움이 생기면, 주로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지 조사한 결과, 주로 부모님(84.1%), 다음으로 친구나 선·후배(46.3%), 학교 선생님(30.7%)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으로 나타남
- 자신에게 아동학대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하겠는지 조사한 결과, 아동들은 부모님(47.6%), 다음으로 경찰서(39.1%), 아동보호전문기관(38.2%), 선생님(24.1%) 순으로 도움을 요청함. 그냥 가만히 참는 아동도 4.5%로 나타났으며, 참는 이유로는 이길 힘이 없어서(32.1%), 가족이기 때문에(28.6%), 무서워서(25.0%), 대응하면 폭력이 심해지므로(21.4%) 순으로 나타남
- 친구에게 아동학대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하겠는지 조사한 결과, 선생님(45.3%), 다음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42.5%), 경찰서(42.4%), 부모(28.9%) 순으로 알리는 것으로 나타남

2. 부모의 아동학대 실태 및 인식

가. 부모 양육태도와 훈육방법

- 전반적으로 부모들은 거부적이지 않고 온정적 양육태도 가지고 있으며, 부모의 규칙과 기대를 분명하고 양육에 있어서 일관된 태도를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음. 또한 자녀의 자율성을 지지하고 강제적으로 자녀를 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자녀 양육과정에서 신체적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모는 34.0%, 모르겠다는 11.6%, 불필요하다는 54.4%로 나타나 자녀양육에서 체벌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함을 알 수 있음
- 양육과정에서 자녀 훈육방법을 살펴본 결과는 훈육방법에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차이가 없었으며, 부모들은 가장 많이 사용하는 훈육방법은 칭찬과 보상 사용하기 (69.2%), 다음으로 말로 야단치기(59.0%), 장난감이나 게임기, 휴대폰 사용 제한하기 (45.4%)로 나타났지만, 아직도 부모들은 신체적 처벌(4.0%)과 벌 세우기(6.8%)을 하고 있었음

나. 아동학대를 한 경험

- 부모들의 아동학대를 한 경험을 조사한 결과, 부모들은 가벼운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인 욕, 심하게 야단치는 것은 가정에서 훈육으로 생각하고 사용하고 있음. 또한 어두워 질 때까지 혼자 집을 보게 하는 행위와 식사 때가 되어도 밥을 챙겨주지 않는 방임 행위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다. 부모 아동학대 인식

- 대부분의 부모들은 아동학대가 심각하다고 인식(84.2%)하고 아동학대 신고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음(94.8%). 하지만 많은 부모들은 학대받는 아동을 도와줄 수 있는 기관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65.6%)
- 아동학대를 하는 장면을 보고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유로는 양육은 부모의 권한이므로 간섭할 수 없어서(68.2%), 개입할 정도로 심하지 않았거나 그 증거가 확실치 않아서(51.4%), 부모나 아동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 두려워서(30.2%), 신고자의

신변 노출 위험으로 신고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서(28.2%) 순으로 나타남. 아직도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인식이 개선되지 않음을 알 수 있음. 또한 아동학대가 초기에 발견되지 못하고 은폐되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 다양한 학대행위를 아동학대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사회인식(60.6%), 아동학대를 가족문제로 취급하는 사회적 분위기(57.6%)가 높게 나타남

3. 부모와 아동의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인식 비교

- 아동이 부모보다 신체적 학대 행위에 대한 인식 수준이 조금 낮게 나타남. 또한 아동과 부모 모두 심각한 신체적 학대 행위는 학대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으나, 가벼운 수준의 신체적 학대 행위는 학대로 인식하는 비율이 낮게 나타남
- 정서학대 행위에 대한 인식 수준은 아동이 부모보다 낮게 나타남. 아동인 경우 ‘심하게 야단쳐서 기를 완전히 꺾는 행위’ 에서 가장 낮은 학대인식, 부모인 경우는 욕을 하는 행위에서 가장 낮은 학대인식을 보임
- 방임 행위에 대한 인식 수준은 아동이 부모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성학대 행위에 대한 학대 인식은 부모와 아동이 모두 높게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부모가 아동보다 조금 높게 나타남
- 이상의 결과들은 아동과 부모 모두 아동학대 예방 및 인식개선 교육이 시급히 필요하지만 특히, 아동대상으로 교육이 더 시급함을 알 수 있음

제 4장. 제주지역 아동학대 예방대책 심층면접 결과

1. 아동학대 인식

- 아동학대 관계 전문가들은 아동학대 예방교육이나 홍보로 인해 도민의 아동학대 인식 전반적으로 개선됐다고 동의하고 있지만, 아직도 훈육이라는 이름하에 가정에서 학대가 이루어지고 있음. 부모들은 자녀교육에서 학대와 훈육을 구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부모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인식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아동의 학대 신고률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은 아동학대 예방 교육의 효과로 볼 수 있음. 그러나 아직도 신고를 어려워하는 학생이 많고, 욕을 학대로 생각하지 않는

부분도 존재하고 있어 아동의 인식 개선이 필요함

- 부모의 신체적 아동학대 인식은 많이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도 정서적 학대는 낮은 학대인식을 가지고 있음. 부모들은 자녀 인권을 고려하지 않고 자녀를 나의 비속이고 내가 내 새끼니까 내 맘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아동인권 측면의 교육이 부모에게 확대 보급되어야 함
- 아동복지법의 아동학대 개념은 포괄적이기 때문에 신고의무자 입장에서 보면 학대 기준이 모호하여 현장에서 적용하는데 혼란을 경험함. 현장에서 학대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훈육과 학대 범주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함

2. 아동학대 예방 정책 방향

가. 현장에서 경험하는 어려움

- 예방과 관련하여 좋은 교육이 많으나 부모들의 관심부재로 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특히, 부모교육 대상자 모집이 어렵고 늘 보이는 사람이 교육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의 관심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가 필요함. 예를 들어, 교육 이수증이 있으면 지방세 할인해 준다거나 각종 사업에 우선권을 주는 방안. 학교현장에서도 아동학대 예방관련 부모교육을 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부모 참석률로서 부모교육 의무화 방안이 모색 될 필요가 있음
- 현장에서 친권문제로 부모와 갈등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고, 친권 일시 정지 등 친권을 제한하기까지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법률적 측면의 문제가 산재함으로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음. 또한 친권문제로 학대 보호자에게 알림으로서 일어나는 2차 학대 문제가 제기됨. 친권문제로 관련하여 빠르게 법률적, 서류적 문제를 도와주는 체계가 필요함
- 부모가 바쁘거나 상담 및 교육에 거부적일 때 사례관리가 어려움. 특히, 너무 늦은 시간에 부모가 집에 오거나 전화를 거부하는 경우 사례관리가 힘들므로 사례관리 측면에서 부모의 참여를 의무화 할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함
- 현장에서 관련기관 간에 네트워크 문제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 기관 간 역할을 구체화 위한 협의체나 모임을 확대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더 나아가 기관 간 역할을

상세화한 매뉴얼 제작·보급이 필요함

나. 현장에서 바라본 아동학대 예방교육 정책의 방향

- 경찰조직이 아동학대 업무를 본인들의 업무로 중요하게 인식함. 더 나아가 아동학대 자체 조사를 경찰이나 공공쪽에서 해야한다고 인식변화가 있음. 전체적으로 경찰조직의 아동학대 인식이 긍정적으로 많이 변화하였으며, 그 역할이 점점 커짐에 따라 지속적인 역할 강화가 필요함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이 효과적이고 긍정적 정책이기 때문에 더욱 확대가 필요함. 특히, 교사대상 신고의무자 교육을 강화 확대하고 학생교육을 활성화 할 필요가 있음
-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교육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현재의 교육방법을 바꾸어 1회성 교육과 집체교육 지양하며, 단순 지식 나열식 교육보다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사례중심의 소규모 교육이 활성화가 필요함
- 지역에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정책을 체감하기 어려움. 읍면동 협의체 위원들이 활동을 잘하는 곳도 있지만, 임원의 변화가 없고 형식적으로 사업을 하는 문제가 제기됨. 지역까지 내려가는 체감형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정책을 펼치기 위하여 지역 협의체 위원들에게 아동학대 근절 및 예방 교육을 의무화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지역(마을) 전담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위원을 지정하여 아동학대 예방과 근절을 위해 앞장서도록 하며 연말에 그 실적을 가지고 포상도 하는 정책을 제안함
-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체크리스트에 체크해보고 아동학대하고 있는 정도를 알 수 있는 체크리스트 개발이 필요함. 또한 현장에서 딱 필요할 때 쓸 교재 개발이 필요 그리고 개발된 체크리스트를 선거 공보물이나 가정에 세금고지서, 도에서 보내는 각종 우편물에 지면을 활용하여 가정에 배포하는 방법을 제안함
- 위기가정이나 아동학대 예방교육이 꼭 필요한 가정을 찾아가는 상담 및 교육이 필요함. 특히, 예방교육을 거부하는 가정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교육이 이루어져야 사회인식개선이 빨라짐
- 부모의 교육이 어렵다면 먼 미래의 부모인 아동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함.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강화하는 것을 제안함

다. 아동학대 예방대책 및 정책 방안

- 부모대상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의무교육이 필요함. 호주인 경우, 연금을 받을 때 운동을 하는지 정기적으로 체크하여 연금을 깎는 제도가 있음. 제주도의 지원을 받는 자는 모두 의무적으로 예방교육을 집중적으로 이수하지 않으면 지원금을 깎거나 불이익을 주며, 이수한 경우는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도입이 필요함(예, 자동차세를 할인하는 것처럼 지방세를 할인한다거나 각종 지원제도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
- 현재 정부에서는 온라인으로 양육수당을 신청할 때 의무적으로 4분정도의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음. 제주도의 지원을 받고 있는 수급자, 한부모, 장애인, 양육자 등에게 아동학대 예방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위원회에 위촉을 받으려면 반드시 의무교육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몇 개 이수해야 한다고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음. 더불어 자생단체도 의무교육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받아야 하는 문제에 대해 의견이 제기됨
- 자생단체나 주민단체 위원회를 하게 되면 성폭력이나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게끔 조례 제정이 필요하며, 조례제정이 어려울 경우는 도 업무지침이나 권고라고 했으면 함
- 생애주기별로 부모대상 교육 강화가 필요함. 특히, 결혼, 재혼, 이혼 과정에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받지 않으면 신고를 안받아주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또한 군대, 예비군, 민방위 교육 시에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 추진이 필요함
- 현재 학교에서는 관심이 없는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교육을 강제할 방법이 없음. 부모교육 반드시 받아야 하는 의무규정을 만드는 것이 필요함. 필요에 따라서는 가정을 찾아가는 제도를 만들어서라도 의무적으로 교육을 하는 방법이 필요함
- 학교현장에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학기초라든가 학기말에 아동학대 및 정신건강 의심 징후 진단검사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도를 강화·확대하여 진단검사를 의무화하므로써, 교육과 상담이 필요한 아동과 가정을 선별하여 아동학대 예방교육과 상담을 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함. 그리고 학생들을 현장에서 가장 가까이서 관찰하

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선생님이기 때문에 선생님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더욱 강화·확대하여 아동을 보호 할 수 있는 시스템 강화가 필요함

- 학교폭력, 안전, 정신건강, 아동학대 등 학교에서 아동에게 필요한 중요한 교육을 모아 통합교과목을 만들어 교육시키는 방법이 필요함. 또한 학생과 부모에게 배포할 책이나 교재,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여 아동학대 인식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함. 현재 유치원 교사용 아동학대 자가 체크리스트가 있으며, 의료인이 아동학대를 구별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도 있음. 하지만 현재 초·중·고 교사용 체크리스트, 가정에서 부모가 자신이 얼마나 아동학대를 하는지 체크하는 체크리스트는 없기 때문에 체크리스트 개발이 필요성이 제기됨
- 교육청에 바라는 점은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달라는 것과 교육은 누가 해야 하는지에 대해 명확한 기준과 다양한 연수와 홍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 그리고 교재 개발과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예산 지원이 필요함
- 신고의무자의 신고률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사례관리 차원에서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인력 증원과 처우개선이 시급히 필요함. 또한 예방 교육 현장이 많아짐에 따라 교육인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 일반가정보다 더 많이 아동학대의 위험에 노출된 장애가정 사례지원을 위해 찾아가는 지원이 필요함. 특히, 활동보조인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지적장애인 3급자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함(예, 동네 복지위원회 연계 사례관리)

제5장. 제주지역 아동학대 예방대책 및 정책 제언

1. 요약 및 시사점

가. 아동학대 인식

- 아동학대 예방교육이나 홍보로 인해 도민의 아동학대 인식 전반적으로 개선됐지만, 아직도 훈육이라는 이름하에 가정에서 학대가 이루어지고 있음. 훈육과 학대에 대한 부모교육이 현장에서 요구됨
- 자녀 양육과정에서 신체적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모는 34.0%, 모르겠다는

11.6%, 불필요하다는 54.4%로 나타나, 자녀양육에서 체벌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함

- 대부분의 부모들은 아동학대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아동학대 신고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하지만 학대받는 아동을 도와줄 수 있는 기관을 알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많은 부모들이 모르고 있었음. 부모대상 아동학대 예방 교육이 현장에 까지 체감되지 않기 때문으로 보임
- 아동학대를 하는 장면을 보고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유로는 ‘양육은 부모의 권한이므로 간섭할 수 없어서’ 와 ‘개입할 정도로 심하지 않았거나 그 증거가 확실치 않아서’ 라고 인식함. 또한 아동학대가 초기에 발견되지 못하고 은폐되는 이유로는 ‘다양한 학대행위를 아동학대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사회인식’, ‘아동학대를 가족문제로 취급하는 사회적 분위기’ 등 때문으로 나타남
- 부모의 신체적 아동학대 인식은 많이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도 정서적 학대 인식은 낮은 것으로 나타남. 부모들의 자녀 인권을 고려하지 않고 자녀를 나의 비속이고 내가 내 새끼니까 내 맘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변화시켜야 함. 따라서 아동인권 측면의 교육이 부모에게 확대 보급되어야 함. 특히, 부모의 아동학대 인식 개선을 위해 지역단위(동네, 마을) 찾아가는 교육이 필요함
- 아동들은 정서학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서학대를 당하고 있어도 정서학대를 당하는지 잘 모름. 부모들은 자녀훈육 과정에서 정서적 학대인 욕을 사용하거나 심하게 언어적 야단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부모교육에서 이 부분을 강화하여 다룰 필요가 있음
- 최근 아동의 신고률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은 아동학대 예방 교육의 효과로 볼 수 있음. 하지만 아직도 신고를 어려워하는 학생이 많이 있음. 그리고 학대받는 아동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을 알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60.0%의 아동들이 아동학대 신고전화를 ‘모른다’ 라고 응답함
- 생활하면서 고민이 있거나 어려움이 생기면, 주로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지 조사한 결과, 주로 부모님(84.1%), 다음으로 친구나 선·후배(46.3%), 학교 선생님(30.7%)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으로 나타남
- 자신에게 아동학대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하겠는지 조사한 결과, 아동들은 부모님(47.6%), 다음으로 경찰서(39.1%), 아동보호전문기관(38.2%), 선생님(24.1%) 순으로

도움을 요청함

- 친구에게 아동학대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하겠는지 조사한 결과, 선생님(45.3%)에, 다음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42.5%), 경찰서(42.4%), 부모(28.9%) 순으로 알리는 것으로 나타남
- 이상의 결과들은 아동과 부모 모두 아동학대 예방 및 인식개선 교육이 시급히 필요하지만 특히, 아동대상으로 교육이 더 급함을 알 수 있음

나. 아동학대 예방 정책 방향

1) 현장에서 경험하는 어려움

- 아동복지법의 아동학대 개념은 포괄적이기 때문에 신고의무자 입장에서 보면 학대 기준이 모호하여 현장에서 적용하는데 혼란을 경험함.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학대기준의 도출과 훈육으로서의 학대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공론화 할 필요가 제기 됨
-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예방교육과 관련하여 부모들의 관심 부재로 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과 사회 인식개선을 위해 다각적인 부모참여 방법을 모색해야한다는 것임. 특히, 부모의 관심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가 필요함. 예를 들어, 교육 이수증이 있으면 지방세 할인을 해주는 방안. 그리고 학교현장에서도 아동학대 예방관련 부모교육을 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부모참석률로서 부모교육 의무화 방안이 모색 될 필요가 있음
- 현장에서 친권문제로 부모와 갈등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고, 친권 일시 정지 등 친권을 제한하기까지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법률적 측면의 문제가 산재함으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음. 그리고 친권문제로 학대 보호자에게 알림으로서 일어나는 2차 학대 문제가 제기됨. 친권문제로 관련하여 빠르게 법률적, 서류적 문제를 도와주는 법률 도움 체계가 필요함
- 부모가 바쁘거나 상담 및 교육에 거부적일 때 사례관리가 어려움. 특히, 너무 늦은 시간에 부모가 집에 오거나 전화를 거부하는 경우 사례관리가 힘들기 때문에 사례관리 측면에서 부모의 참여를 의무화 할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함
- 현장에서 관련기관 간에 네트워크 문제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 기관 간 역할을 구체

화하기 위한 협의체나 모임을 확대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더 나아가 기관 간 역할을 상세화한 매뉴얼 제작·보급이 필요함

2) 현장에서 바라본 아동학대 예방교육 정책의 방향

- 경찰조직이 아동학대 업무를 본인들의 업무로 중요하게 인식함. 더 나아가 아동학대 자체 조사를 경찰이나 공공쪽에서 해야한다고 인식변화가 있음. 전체적으로 경찰조직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역할 강화가 필요함
- 위기가정이나 아동학대 예방교육이 꼭 필요한 가정을 찾아가는 상담 및 교육이 필요함. 특히, 예방교육을 거부하는 가정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교육이 이루어져야 사회인식개선이 빨라짐
- 부모의 교육이 어렵다면 먼 미래의 부모인 아동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함.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강화하는 것을 제안함
- 교육청에 바라는 점은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달라는 것과 교육은 누가 해야 하는지에 명확한 기준과 다양한 연수와 홍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 그리고 교재 개발과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예산 지원이 필요함

2. 정책 제언

- 본 연구는 아동학대 사후관리 측면보다는 아동학대 인식개선과 예방대책 측면에 초점을 두었으며, 아동학대 실태조사와 심층면접을 통해 나타난 결과를 중심으로 정책 제언을 함

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확대와 인력 충원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이 효과적이고 긍정적 정책이기 때문에 더욱 확대해야함. 특히, 교사대상 신고의무자 교육을 강화·확대하고 학생교육을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음
- 신고의무자의 신고률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사건 처리와 재학대 예방

을 위한 사례관리 차원에서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인력 증원이 필요하며, 또한 일이 과중한 만큼 처우개선이 시급히 필요함. 특히, 예방 교육 현장이 점점 많아짐에 따라 교육할 수 있는 인원 증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나.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교육방법 개선

-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교육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현재의 교육방법을 바꾸어 소모적인 1회성 교육과 집체교육 지양하며, 단순 지식 나열식 교육보다 실제 체험할 수 있는 사례중심의 소규모 교육이 활성화 될 필요가 있음. 또한 교육의 질도 높여야 함

다. 지역 체감형 정책

- 지역에서 아동학대 예방 정책을 체감하기 어려움. 읍면동 협의체 위원들이 활동을 잘하는 곳도 있지만, 임원의 변화가 없고 형식적으로 사업을 하는 문제가 제기됨. 지역까지 내려가는 체감형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정책을 펼치기 위하여 지역 협의체 위원들에게 아동학대 근절 및 예방 교육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지역(마을) 전담 아동학대 예방 위원을 지정하여 아동학대 예방과 근절을 위해 앞장서도록 하여 연말에 그 실적을 가지고 포상도 하는 정책을 제안함
- 부모가 바쁘거나 너무 늦게 집에 오거나 교육에 거부적인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경우 사례관리가 힘들기 때문에 사례관리를 지역사회(마을) 위원과 연계하여 꾸준히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함

라. 현장 체감형 아동학대 교육 자료 및 자가 체크리스트 개발

- 가정에서 부모들이 체크리스트에 체크해보고 아동학대하고 있는 정도를 알 수 있는 체크리스트 개발이 필요함. 또한 현장에서 딱 필요할 때 쓸 교재 개발이 필요. 그리고 개발된 체크리스트를 선거 공보물이나 가정에 세금고지서, 도에서 보내는 각종 우편물에 지면을 활용하여 가정에 배포하는 방법을 제안함

다. 아동학대 예방 교육 의무화

- 부모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의무화 필요가 있음. 호주인 경우, 연금을 받을 때 운동을 하는지 정기적으로 체크하여 연금을 깎는 제도가 있음. 제주도의 지원을 받는 자는 모두 의무적으로 예방교육을 집중적으로 이수하지 않으면 지원금을 깎거나 불이익을 주며, 이수한 경우는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도입이 필요함(예, 자동차세, 지방세를 할인한다거나 각종 지원제도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
- 현재 학교에서는 관심이 없는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교육을 강제할 방법이 없음. 부모교육 반드시 받아야 하는 의무규정을 만드는 것이 필요함. 필요에 따라서는 가정을 찾아가는 제도를 만들어서라도 의무적으로 교육을 하는 방법이 필요함
- 현재 정부에서는 온라인으로 양육수당을 신청할 때 의무적으로 4분정도의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음. 제주도의 지원을 받고 있는 수급자, 한부모, 장애인, 양육자 등에게 아동학대 예방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위원회에 위촉을 받으려면 반드시 의무교육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몇 개 이수해야 한다고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음. 더불어 자생단체도 의무교육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받아야 하는 문제에 대해 의견이 제기됨
- 자생단체나 주민단체 위원회를 하게 되면 성폭력이나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게끔 조례 제정이 필요하며, 조례제정이 어려울 경우는 도 업무지침이나 권고라고 했으면 함

바. 생애주기별 아동학대 예방교육 강제화 제도 도입

- 생애주기별로 부모대상 교육을 강화하며 특히, 결혼, 재혼, 이혼 과정에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받지 않으면 신고를 안받아주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또한 군대, 예비군, 민방위 교육 시에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 추진이 필요함

사. 학교현장 진단검사 도입과 사례관리

- 학교에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학기초라든가 학기말에 아동학대 및 정신건강 의심 징후 진단검사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도를 강화·확대하여 진단검사를 의무화하

고, 교육과 상담이 필요한 아동과 가정을 선별하여 아동학대 예방교육과 상담을 하는 제도가 필요함. 또한 학생들을 현장에서 가장 가까이서 관찰하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선생님이기 때문에 선생님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더욱 강화·확대하여 아동을 보호할 필요가 있음

아. 학교현장에서 교과목을 활용한 아동교육 강화

- 학교폭력, 안전, 정신건강, 아동학대 등 학교에서 아동에게 필요한 중요한 교육을 모아 통합교과목을 만들어 교육시키는 방법이 필요하며, 학생과 부모에게 배포할 책이나 교재를 개발하여 아동학대 인식 개선에 사용해야 함

차.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법적 시스템 강화

- 아동학대 관련기관 간 협력의 문제가 계속적으로 언급되고 있음. 아동학대 관련기관 협의체를 만들어 각 기관의 역할과 법적 권한을 명시한 구체적 매뉴얼 개발과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학대아동을 도와주려고 해도 가족이 동의하지 않으면 접근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법적으로 경찰이나 아동전문기관이 교육이나 치료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시스템 구축과 친권문제와 관련하여 법률적으로 서류나 행정을 도와줄 수 있는 법률행정 지원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함

목 차

제1장. 서론	1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3
2. 연구 내용과 방법	4
가. 연구내용	4
나. 연구방법	5
제2장. 아동학대 현황 및 정책	7
1. 아동학대 개념 및 인식	9
2. 아동학대 예방대책	10
3. 아동학대 근절 체계와 정부정책	12
4. 제주지역 아동학대 현황	16
5. 제주지역 아동학대 정책	19
제3장. 제주지역 아동학대 실태 조사 분석 결과	23
1. 조사 개요	25
2. 초등학생 아동학대 실태 및 인식	27
3. 부모의 아동학대 실태 및 인식	50
4. 부모와 아동의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인식 비교	71
5. 소결	76
제4장. 제주지역 아동학대 예방대책 심층면접 분석 결과	81
1. 조사개요	83
2. 면접조사 분석 결과	85
3. 소결	119
제5장. 제주지역 아동학대 예방대책 및 정책 제언	125
1. 요약 및 시사점	127
2. 정책 제언	130
참고문헌	134

표 목 차

〈표 1〉 선행연구에 나타난 아동학대 예방대책	11
〈표 2〉 아동학대 단계별 근절체계	13
〈표 3〉 아동학대 신고건수 및 판정 건수 현황	16
〈표 4〉 사례판단 결과 아동학대 연도별 현황	17
〈표 5〉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신고 비율	17
〈표 6〉 아동학대 행위자별 현황	17
〈표 7〉 아동학대 유형별 현황(중복학대 구분)	18
〈표 8〉 아동학대 유형별 현황(개별)	18
〈표 9〉 피해아동 보호조치 결과	18
〈표 10〉 아동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27
〈표 11〉 감독적 양육태도	28
〈표 12〉 합리적 설명 양육태도	29
〈표 13〉 비일관적 양육태도	29
〈표 14〉 과잉기대적 양육태도	30
〈표 15〉 과잉간섭적 양육태도	30
〈표 16〉 학대적 양육태도	31
〈표 17〉 방치적 양육태도	31
〈표 18〉 애정적 양육태도	32
〈표 19〉 성별에 따른 부모양육태도 차이 분석	33
〈표 20〉 부모 훈육방법	34
〈표 21〉 부모 훈육방법 성별 차이	35
〈표 22〉 정서학대	36
〈표 23〉 신체학대	37
〈표 24〉 정서방임	38
〈표 25〉 신체방임	39
〈표 26〉 정서학대에서 성별 차이	39
〈표 27〉 신체학대에서 성별 차이	40
〈표 28〉 정서방임에서 성별 차이	41
〈표 29〉 신체방임에서 성별 차이	41
〈표 30〉 학대유형 별 성별 차이	42

<표 31> 신체학대 행위.....	43
<표 32> 정서학대 행위.....	44
<표 33> 방임 행위.....	45
<표 34> 성학대 행위.....	46
<표 35> 학대행위에서 성별 차이.....	46
<표 36> 학대받은 아동에게 도움을 줄만한 기관에 대한 인지	47
<표 37> 아동학대 신고전화 인지.....	47
<표 38> 생활고민이나 어려움 발생시 도움 요청인(다중응답).....	48
<표 39> 자신에게 아동학대가 발생할 때 대처방법(다중응답).....	48
<표 40> 아동학대 발생 시 그냥 가만히 참는 이유(다중응답).....	49
<표 41> 친구에게 아동학대가 발생할 때 대처방법(다중응답).....	50
<표 42> 부모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51
<표 43> 결혼생활 만족도.....	52
<표 44> 성별에 따른 결혼생활 만족도 차이.....	52
<표 45> 온정적 양육태도.....	53
<표 46> 거부적 양육태도.....	54
<표 47> 구조적 양육태도.....	55
<표 48> 혼란적 양육태도.....	55
<표 49> 자율성 지지적 양육태도.....	56
<표 50> 강제적 양육태도.....	57
<표 51> 온정적 양육태도 성별 차이.....	58
<표 52> 거부적 양육태도 성별 차이.....	58
<표 53> 구조적 양육태도 성별 차이.....	59
<표 54> 혼란적 양육태도 성별 차이.....	59
<표 55> 자율성 지지적 양육태도 성별 차이.....	60
<표 56> 강제적 양육태도 성별 차이.....	60
<표 57> 부모 양육태도 하위요인별 성별 차이.....	61
<표 58> 자녀 양육과정에서 신체적 처벌이 필요성.....	61
<표 59> 자녀 훈육방법.....	62
<표 60> 성별에 따른 자녀 양육과정에서 신체적 처벌이 필요성 비교.....	62
<표 61> 성별에 따른 자녀 훈육방법 차이.....	63
<표 62> 신체학대 경험.....	64

<표 63> 정서학대 경험.....	65
<표 64> 방임 경험.....	66
<표 65> 성학대 경험.....	67
<표 66> 성별에 따른 학대유형 차이.....	67
<표 67> 아동학대 심각성.....	68
<표 68> 아동학대 보호조치 하지 않는 이유(다중응답).....	69
<표 69> 아동학대 신고제도의 필요성.....	69
<표 70> 학대받는 아동에게 도움을 줄 기관 인지.....	70
<표 71> 아동학대 보호조치 하지 않는 이유(다중응답).....	70
<표 72> 아동학대 예방교육 참여 여부.....	71
<표 73> 신체학대 행위에 대한 인식 차이.....	72
<표 74> 정서학대 행위에 대한 인식 차이.....	73
<표 75> 방임 행위에 대한 인식 차이.....	74
<표 76> 성학대 행위에 대한 인식 차이.....	75
<표 77> 신체학대 행위에 대한 인식 차이.....	76
<표 78> 심층면접 대상자의 특성.....	83
<표 79> 심층면접 내용.....	84

그림 목 차

<그림 1> 연구 수행 절차.....	6
<그림 2> 지역별 아동학대 신고인식과 발견율의 상관관계.....	16

제 1 장

서론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2. 연구 내용과 방법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주지역에서 아동학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제주경찰은 돌을 갖 지난 어린 여자아기가 폭행을 당해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해 20대 아버지를 용의자로 보고 긴급 체포함(제주일보, 2017.03.30)
 - 2012년부터 미성년자인 자신의 딸이 늦게 귀가한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폭행한 것은 물론, 2014년 가을에는 딸을 공동묘지로 끌고가 함께 죽자고 위협하는 등 장기간에 걸쳐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40대 아버지가 징역형에 처해짐(시사제주, 2017.03.31)
- 제주도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부모교육과 신고위무자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왔으며, ‘제주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매년 4월 27일에 도내의 아동학대 피해 심각성 등을 제주도민에게 알리고 아동학대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현재의 도정책의 중심방향은 아동학대 신고위무자 중심의 교육과 아동학대 발생후 대처서비스에 비중을 두고 있어 사회의 아동학대 인식개선에 한계점이 있음. 장기적으로 대처체계(사후대처 서비스) 중심의 정책에서 예방체제로 정책 변화가 필요함
- 아동학대 사례를 보면, 대부분의 아동학대가 부모에 의해 이루어지며, 학대에 대해 무지하거나 인식이 낮아 자녀를 때리거나 방임 혹은 폭언 등 정서적 학대를 하면서도 학대인 줄 모르는 것으로 나타남(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5)
- 아동학대 조사를 위해 가정을 방문한 관계자들은 종종 부모들의 항의에 직면함
 - “내 자식 내 맘대로 하지 못하냐”, “아동이 잘못해서 훈육 및 교육차원에서 아동을 지도했는데 왜 그러냐”, “내 자식 교육하는데 간섭하지 말라!” 등
 - 아직도 우리사회에서 아동학대가 제대로 인식되지 않는다는 반증임
- 제주지역의 아동학대 인식개선과 아동·가족을 위한 효과적인 아동학대 예방정책 및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아동학대 실태와 아동의 학대 인식 및 예방대책에 관한 연구가 요구됨
- 특히,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일반가정 부모의 아

동학대 인식과 아동학대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밝히는 것이 필요함

- 그러기 위해 현재 제주지역의 아동학대 실태와 아동학대에 대한 부모 인식을 조사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제안 하고자 함
 - 아동학대 사례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며, 전국 및 지역의 아동학대 발생률 추정은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아동보호기관의 보고서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음
 - 현재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발간하는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신고된 아동학대 사례에 한하여 그 현황을 분석한 자료로서 제주지역 아동학대 실태를 파악하고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정책 수립의 근거자료로 활용하기에 한계가 있음
- 본 조사연구의 목적은 아동학대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관심과 보호체계가 요구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제주지역 아동학대의 실태와 부모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조사를 통해 아동학대 예방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있음

2. 연구 내용과 방법

가. 연구내용

- 제주지역 아동학대 현황 및 정책 파악
- 제주지역 아동학대 실태 및 인식 조사
 -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양육태도, 훈육방법, 아동이 지각하는 학대 경험,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학대 인식 등
 - 부모의 양육행동, 훈육방법, 아동학대 경험과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학대 인식 등
- 제주지역 아동학대 예방교육 문제점 및 예방대책
-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정책지원 방안

나. 연구방법

1) 문헌연구

- 문헌연구는 아동학대 현황 및 동향 파악, 아동학대 예방대책 및 정책 파악, 이론적 배경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함
- 각종 제주특별자치도 아동학대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제주지역 아동학대 현황 및 정책을 파악함

2) 설문조사

- 아동용, 부모용 설문지 개발하여 아동과 부모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함
 - 아동은 제주지역 11개 초등학교 5,6학년으로 각 학교마다 학년당 1개반만 표집하였으며,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양육태도, 훈육방법, 아동이 지각하는 학대 경험,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함
 - 부모는 10대 학생을 자녀로 둔 부모 500명(부: 250명, 모:250명), 제주지역을 4개의 권역(제주시 동, 서귀포시 동, 제주시 읍면, 서귀포시 읍면)로 나누어 할당하여 표집하였으며, 부모의 양육행동, 훈육방법, 아동학대 경험과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학대 인식 등을 조사함
- 본 연구에서 초등 고학년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아동학대 피해자가 가장 많은 학교급이 초등학교이며, 다음으로 아동이 지각하는 아동학대 인식을 설문지로 조사할 경우에 저학년은 문항에 반응하기 어려워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을 생각을 잘 표현 못하는 문제 때문에 초등 고학년을 선정함.

3) 심층면접 조사

- 심층면접 조사는 현장에서 느끼고 경험하는 아동학대의 어려움과 아동학대 예방대책 및 정책방향을 찾기 위해 진행하였음
- 주요 조사내용은 제주지역 아동학대 원인과 심각성, 아동학대가 높아지는 이유, 아동이나 학생, 부모나 성인들의 아동학대 인식, 훈육과 학대에 대한 인식, 현장에서 느끼는 아동학대 예방의 어려움과 보완점, 평소에 생각하는 아동학대 예방대책이나

정책,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나 소속된 기관에 제안하고 싶은 점이나 제도 개선 방안 등

○ 아동학대 예방 및 치료, 보호 관련 전문가 10섭외 및 인터뷰 진행함

4) 연구절차

○ 이상의 연구 수행 절차는 도식화하면 다음 <그림 1>과 같음

1단계	자료 수집 및 분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학대 관련 문헌 검토 • 제주지역 아동학대 발생 현황 및 정책
2단계	연구 설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 방향 및 내용 구성 • 연구 착수 보고
3단계	전문가 자문의견 수렴(1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문회의 개최 및 의견수렴 • 자문의견을 반영한 설문지(안) 작성
4단계	설문지/질문지 개발 및 예비조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문지 개발을 위한 예비조사 • 설문지 개발 및 검토 • 심층면접 질문지 개발 및 검토
5단계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 시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문조사 기관 위탁 및 진행 • 심층면접 진행 및 녹취 정리
6단계	분석 · 집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층 및 설문 조사 결과 분석 • 보고서 초안 작성
7단계	전문가 자문의견 수렴(2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문회의 개최 및 의견수렴
8단계	최종보고서 완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종보고서 완성

<그림 1> 연구 수행 절차

아동학대 현황 및 정책

1. 아동학대 개념 및 인식
2. 아동학대 예방대책
3. 아동학대 근절 체계와 정부정책
4. 제주지역 아동학대 현황
5. 제주지역 아동학대 정책

1. 아동학대 개념 및 인식

가. 아동학대 개념

- 아동학대의 개념으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동복지법 제3조 7항에 명시된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로서, 아주 포괄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아동학대는 크게 4가지 유형(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 성적학대)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아동복지법 제 17조에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음
 - 신체학대(Physical Abuse):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 정서학대(Emotional Abuse):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 방임(Neglect):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 성 학대(Sexual Abuse):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 포괄적 광의의 아동학대 개념은 학대 현장에서나 사법기관의 학대판정 과정에서 상의하게 적용되는 문제를 내포함. 또한 부모의 훈육과 교육의 문제로 마찰을 일으킴

나. 아동학대 인식

- 아동학대 인식을 최근 연구 중심으로 살펴보면, 아동학대 인식이 개선은 됐지만 아직도 개선의 여지가 많이 나타남
 - 굿네이버스 아동권리실태조사(2016) 연구: 아동학대 인식이 여전히 낮게 나타남. 심각한 신체학대는 학대로 인식하는 반면 가벼운 신체학대는 학대로 인식하는 정도가 낮은 것으로 밝혀짐. 또한 부모의 약 40%정도의 부모가 아직도 정서학대를 아동학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문재우, 김상철, 이선화와 오현주(2016)의 연구:** 신체적 학대인 경우에 부모들은 심각한 폭행이나 상처가 나타나야 아동학대라 인정하며, 체벌시 감정이 가미된 경우에 아동학대라고 인정함. 훈육차원의 체벌은 아동학대로 인정하지 않음. 정서적 학대인 경우에 신고도 적도 증거도 없다고 보고 있으며, 폭언은 학대로 인정하지 않음. 방임인 경우는 부양자가 정신질환이 원인인 경우에 발생하며 아동이 학대 고위험에 노출됨. 하지만 타인에 의해 내 자녀가 폭력을 당한 경우는 경미할지라도 아동학대라 생각함
- **임홍수와 박송춘(2016)의 연구:** 아동들은 부모에 의해 학대유형중 방임을 가장 많이 경험하고, 다음으로 정서적 학대, 신체적 학대로 나타났으며, 학대에 대처하는 방법으로 “그냥 가만히 있거나 꼭 참는다”와 같은 무반응적 대처방식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회피적, 공격적, 대인원망적, 자기위안적 대처방식 순으로 나타남. 그리고 학대예방을 위해 부모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아동의 방임예방을 위해 방과 후 프로그램 적극 활용을 제안함
- **오정옥와 이경원(2015)의 연구:** 미취학아동 부모의 훈육과 학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부모들은 훈육과 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학대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행위를 자신이 행할 경우에 훈육으로 생각하고 있음
- **김혜정과 신희영(2017)의 연구:** 아동학대 현장에 있는 실무자들은 아동학대 언론보도나 홍보 등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과 민감성이 상당히 높아졌지만, 아동학대 행위자들의 아동학대 인지는 여전히 낮아 학대하고 있어도 이러한 행위를 양육이나 훈육의 일환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으며 사회적 개입도 강하게 거부함

2. 아동학대 예방대책

- 아동학대 예방대책 선행연구와 관련하여 최근에 선행연구에 나타난 예방대책을 종합적으로 조사한 문재우 외(2016)의 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함
- <표 1>의 선행연구에 나타난 아동학대 예방대책을 살펴보면, 다양한 예방대책이 제시되었는데 그 중 여러 연구자가 공동적으로 가장 많이 제시된 예방대책으로는 ‘관련기관간 공조체계구축’ (빈도: 10)이며, 다음으로 ‘신고의무자 확대, 교육, 보호’ (빈도: 9)와 ‘지역사회지원체계 구축’ (빈도: 7), ‘예비부모 또는 부모 상담·

교육 확대’ (빈도: 9)와 ‘보호시설 확충, 인프라 구축’ (빈도: 7) 등을 제시함

<표 1> 선행연구에 나타난 아동학대 예방대책

연구자	사회적인식개선	(예비) 부모상담교육확대	지역사회지원체계구축	인력의전문성확보	예산확보	신고의무자확대, 교육, 보호	보호시설확충, 인프라구축	법개정및처벌강화	사회적감시망강화	아동학대범위접근	관련기관간공조체계구축	아동교육및권리증진	홍보확대
강동욱(2016)			1			1					1		
강은영, 김희균(2015)	1	1		1			1	1	1				
강지영, 배화옥(2016)			1						1				
김지현(2016)						1				1			
김향미, 홍성대(2016)		1								1		1	
김형모(2016)			1	1		1			1		1		1
이만우(2016)			1				1		1		1		
이은주(2015)				1	1	1	1						
이은주(2016)			1		1		1				1		
임종근(2016)		1	1										
임홍수, 박송춘(2016)		1				1					1		
전경숙(2015)		1				1	1				1		
전경숙, 김람희(2014)	1	1	1				1				1		
정규석(2016)	1	1		1	1	1		1			1	1	
최영진(2015)						1		1					
허남순, 고윤순(2015)			1	1	1		1				1		
황옥경(2016)	1		1			1					1		
합계	4	7	9	5	4	9	7	3	4	2	10	2	1

자료: 문재우, 김상철, 이선화, 오현주(2016). 아동학대 예방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한세대학교협력단(경기도 의회 용역 보고서). p.88

3. 아동학대 근절 체계와 정부정책

가. 아동학대 근절 체계

-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해 2000년에 전면적으로 아동복지법을 개정을 시작으로 아동보호를 위해 노력하였지만 아동학대는 근절되지 않고 계속 발생하고 있음. 2013년 12월에는 칠곡과 울산 아동학대 사망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이 제정됨
- 2014년 2월에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조기발견·보호 종합대책」이 발표하였지만, 계속되는 아동학대 사망 사건 발생으로 정부는 2016년 3월 29일(화)에 국무총리 주재로 ‘제 8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방법을 총 망라한 종합대책인 「아동학대 방지 대책」을 마련함
- 「아동학대 방지 대책」에서는 아동학대를 단계별로 근절하기 위한 체계(예방 및 발견 단계, 신고 및 수사단계, 사후 관리단계)와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역할을 나누어 제시하고 있음(조범근 외, 2017)
-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생애주기별 아동학대 예방체계, 조기발견, 신속대응 및 처벌 강화하고 학대 피해아동 보호·지원 및 재학대 방지에 중점을 두어 종합대책이 마련됨(관계부처 합동, 2016)

〈표 2〉 아동학대 단계별 근절체계

단계	관여 기관	내용
예방 및 발견 단계	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지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 유치원/어린이집 아동학대 조기발견 및 관리 대응 매뉴얼 확충 • 무단결석 아동 및 퇴학아동·청소년 관리 강화 • 신고의무자 교육 확대 • 지자체 복지 및 취학 담당 공무원 대상 아동학대 관련 교육 확대
신고 및 수사 단계	경찰청(112), 아동보호전문기관, 검찰, 법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학대 신고접수 시 112-아동보호전문기관 연계 수사 • 응급상황은 12시간 이내, 일반 아동학대 의심사례는 72시간 내 현장조사 • 현장조사 이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의해 피해아동은 응급조치 실시 • 검사를 통해 청구된 사건에 대해 법원은 학대행위자 임시조치 결정 • 경찰수사 결과 송치된 사건은 검찰서 조사 실시 후 법원서 판결처분
사후 관리 단계	아동보호전문기관, 기타 유관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기관 연계(의료기관, 건강가정지원센터, 법률구조공단, 심리상담센터, 사회복지기관 등) • 심리치료 지원 및 검사, 치료 실시 • 부모 및 아동 상담 및 교육 • 사례회의를 통해 사례종결 여부 결정

자료: 조범근, 김준영, 배귀희, 문명재(2017). 아동학대 보호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20(4), p.275

나. 아동학대 정부정책

- 아동학대 정부정책은 정부가 2016년 3월 29일(화)에 「아동학대 방지 대책」을 마련 이후 1년 동안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보도한 자료를 중심(관계부처 합동, 2017; 보건복지부, 2017)으로 요약하여 살펴보고자 함

1) 아동학대 대국민 인식개선(핵심과제)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비정부단체(NGO) 등과 연대해 교육·홍보 전개
- 2016년 11월부터 온라인을 통해 보육료·양육수당을 신청한 부모 약 23만명 자녀양육 관련 교육영상(4분 가량)을 필수적 시청하도록 함
- 생애주기별(임신·출산, 영유아기, 학령기, 대학, 군대 등) 맞춤형 부모교육 강화

- (초·중·고 교원연수자료 등에 부모교육 내용 포함, 산부인과·산후조리원 리플렛 비치 등)
- 취약가정 부모대상으로 가족상담 및 교육 등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 확대(건강가정지원센터 활용, 여가부의 가족행복드림 사업 확대)
 - 아동권리헌장 및 아동학대 예방 법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작하여 학생교육에 활용
 - 어린이날(5.5), 아동학대 예방의 날(11.18) 전후 아동학대 신고전화(112)와 아동학대 인식 개선 홍보 실시
 - 엘리베이터 모니터·전광판 등 생활밀착형 매체 활용한 공익광고와 함께 아동학대 예방 포스터·리플렛도 제작하여 배포, 카드뉴스·웹툰 등 SNS를 활용한 홍보

2) 아동학대 예방 및 조기발견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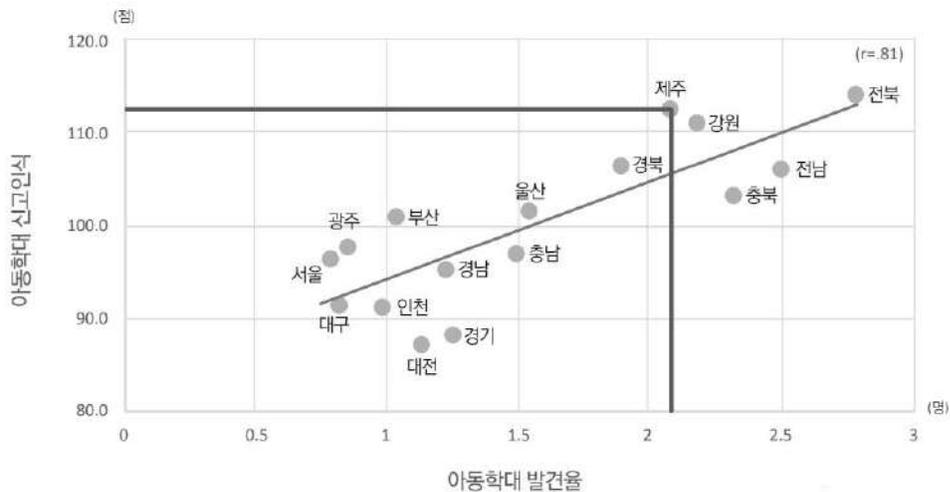
- 장기결석 등 정보 활용, 위기아동에 대해 대대적인 정부 합동 현장점검 실시, 그 중 학대사례 발견하여 피해아동 보호
- 3~5세 위기아동 약 5천 가구 현장점검과 올바른 양육상담 등 찾아가는 부모교육 실시(책자 보급 등)
- 신고의무자 범위 확대 및 신고자 보호 강화를 통한 사회 감시망 확충
- 학교장이 미취학·장기결석 아동 대상 취학·출석 독촉 가능, 아동의 출입국 사실 등 학교장의 확인 권한 부여, 취학관리 전담기구를 교육청에 설치 등의 내용으로 「학교초등교육법 시행령」 개정함
- 아동복지시설 내 학대 예방을 위해 인권보호관(아동위원 300명, 아동양육시설 내 아동보호실태 등 월 1회 점검), 아동보호전문기관 전용 신고함 설치 등을 통해 외부감시 대폭 강화
- 아동학대 범죄경력이 있는 시설장 및 종사자의 취업제한 확대(현행 10에서 최대 20년) 추진
- 교사 등 신고의무자 대상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법교육 출장강연 실시(2017. 9~)
- 보육료·양육수당 미신청, 건강검진·예방접종 미실시 등 각종 정보를 연계하여 학대 위기 아동 예측 시스템을 2017년 하반기 시범운영 예정(e아동행복지원시스템)

3) 아동학대 신속 대응 체계 구축

- 전국 4개 검찰청(대구, 광주, 부산, 대전)에 여성아동범죄조사부를 신설, 59개 검찰청과 252개 경찰서에 각각 전담검사와 여성청소년수사팀을 배치하여 전문적으로 수사를 실시하도록 함
- 피해아동이 사망한 경우, 고의·과실을 불문하고 구속수사 원칙하는 등 사건처리기준 강화
- 피해아동 격리·보호조치 강화를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아동 쉼터도 추가 확충
- 전국 경찰관서에 학대예방경찰관(303명)을 배치하여 학대 예방 및 사후 지원과 함께 아동학대 합동점검 등에 적극 대응
- 2017년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학대 피해아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률상담(대한법률구조공단 등 활용), 전담의료기관 지정을 제도화해 나날 계획
- 이상에서 살펴본 정부 정책이 그대로 잘 실현된다면 아동학대 근절과 예방정책으로 효과적임. 하지만 현장이나 지역에서 느끼는 체감도는 낮음

4. 제주지역 아동학대 현황

○ 아동학대 신고인식과 발견율은 높은 관련성 있으며($r=.81$), <그림 2>에서 알 수 있듯이 제주지역 아동학대 신고인식과 발견율은 전국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이 결과는 제주지역의 아동학대 인식이 많이 개선됨을 보여줌



<그림 2> 지역별 아동학대 신고인식과 발견율의 상관관계

자료: 굿네이버스(2017. 6). 아동학대 현황과 개선 과제. 아동권리이슈포커스, 8, p.5(원자료: 2016년 굿네이버스 아동권리실태조사)

○ <표 3>에서 알 수 있듯이, 제주지역은 아동학대 전국대비 아동학대 발생 비율이 2014년 2.87%, 2015년 2.13%, 2016년 1.48%으로 조금씩 낮아지고 있음

<표 3> 아동학대 신고건수 및 판정 건수 현황

연도	아동학대 신고 건수		아동학대 판정 건수	
	전국	제주도	전국	제주도
2014	17,791	625	10,027	288(2.87%)
2015	19,209	467	11,709	250(2.13%)
2016(잠정치)	29,669	605	18,573	275(1.48%)

자료: 2014, 2015 전국아동학대현황 보고서; 2016 아동학대현황 속보치

○ 제주지역 아동학대 사례는 2014년 288명, 2015년 250명, 2016년 275명으로 큰 폭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음<표 4>

<표 4> 사례판단 결과 아동학대 연도별 현황

연도	전체 접수 건수	아동학대 사례	조기지원 사례	일반 사례	일반 상담	조사 진행
2014	625	288	22	240	75	-
2015	467	250	14	96(중복1)	102	4
2016	605	275	19	167(중복3)	136	5

자료: 2014, 2015 전국아동학대현황 보고서; 2016 아동학대현황 속보치

○ 제주지역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신고 비율을 살펴보면, 2014년 21.4%, 2015년 17.1%, 2016년 20.8%으로 나타나 신고의무자 신고 비율을 더 높일 필요가 있음<표 5>

<표 5>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신고 비율

연도	전체 신고건수	신고의무자 신고건수	비율
2014	625건	134건	21.4%
2015	467건	80건	17.1%
2016	605건	126건	20.8%

자료: 2014, 2015 전국아동학대현황 보고서; 2016 아동학대현황 속보치

○ 제주지역 아동학대 행위자를 살펴보면, 2014년(67.7%), 2015년(72.8%), 2016년(74.9%)에 모두 부모가 학대한 경우가 높았으며, 부모 중에 친부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 <표 6>

<표 6> 아동학대 행위자별 현황

연도	전체 (계)	부 모							조 부모	친 인척	형제 자매	부모 동거인	교사	보육 교직원	시설 종사자	이웃	기타
		소계	친부	친모	계부	계모	양부	양모									
2014	288	203	103	92	5	3			7	18	1	6			42	1	10
2015	250	190	127	55	3	5			12	10	4	5	5		19		5
2016	275	226	158	48	10	6	4		7	8	3	5	4	6	1		15

자료: 2014, 2015 전국아동학대현황 보고서; 2016 아동학대현황 속보치

- 아동학대 유형별로 살펴보면, 중복학대가 가장 많았으며, 중복학대를 구분하지 않고 살펴보았을 때는 신체학대와 정서학대가 높게 나타남<표 7>, <표 8>

<표 7> 아동학대 유형별 현황(중복학대 구분)

연도	학대 유형					
	계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중복학대
2014	288	36	53	3	54	142
2015	250	26	70	5	26	123
2016	275	47	42	5	46	135

자료: 2014, 2015 전국아동학대현황 보고서; 2016 아동학대현황 속보치

<표 8> 아동학대 유형별 현황(개별)

연도	학대 유형				
	계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2014	451	161	193	6	91
2015	380	140	193	6	41
2016	416	179	173	7	57

자료: 2014, 2015 전국아동학대현황 보고서; 2016 아동학대현황 속보치

- 피해아동 보호조치 결과를 살펴보면, 원가정 보호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친족 보호가 많음

<표 9> 피해아동 보호조치 결과

연도	전체 (계)	원가정 보호	격리보호						가정 복귀	사망
			친족 보호	연고자 보호	가정 위탁	일시 보호	장기 보호	병원 입원		
2014	288	165	61	3	2	10	32	0	15	0
2015	250	166	31	1	0	9	11	0	27	1
2016	275	198	28	2	0	16	19	0	12	0

자료: 2014, 2015 전국아동학대현황 보고서; 2016 아동학대현황 속보치

5. 제주지역 아동학대 정책

- 2007. 6. 20일 전국최초로 「제주특별자치도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가 제정·시행됨에 따라 민·관이 함께하는 보다 적극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2008년도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의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지원 정책을 살펴보기 위해, 「2017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종합계획」을 중심으로 정책을 살펴봄

가. 아동인권 보호 및 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추진

- 아동복지시설장 및 종사자 대상 교육실시(아동양육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년 2회 실시)
-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 강의를 통한 대도민 교육실시
- 부모 및 아동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확대 추진(아동보호전문기관, 건강가정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사업 추진)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의무 교육 체계 확립
 - 직무상 아동학대를 쉽게 인지 할 수 있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에 대한 교육을 통해 아동학대에 인식 개선
 - 신고의무자 2인 이상의 직장은 연1회 1시간이상 직장교육(반드시 기관장 참석) 및 시군구 및 교육청에 교육실적 보고 의무화
 - 신고의무자의 교육 이수여부를 철저히 관리하고, 교육 미이수에 대해서는 교육 이수 독려
 -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 사례에 대해 신고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하여 신고의무이행을 강제아동학대의 조기발견 및 예방을 위하여 아동학대 신고의무제 실시
- 생애주기별 부모대상 교육 실시
 -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예비부모 대상 및 일반가정 등 상담 교육 실시
 - 보건소의 임산부 아동대상 사업을 통한 교육

-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에서 학부모 오리엔테이션 및 각종 교육
-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한 맞춤형 교육 실시
- 아동의 학대 인지 및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한 아동대상 교육 실시
 - 연령별 맞춤형 아동 학대 상황 인식 및 적절한 아동안전교육 실시
 -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에서 연령별 아동에 대한 교육 실시(예, 영유아 및 초 등생에게는 인형극, 놀이식, 체험식 교육 실시 등)

나. 아동복지시설 내 아동 인권 확산 사업 추진

- 시설내 아동인권 보호를 위한 ‘아동학대 신고함’ 등 운영 철저
- 시설내 ‘운영위원회’ 운영 및 아동인권 보호관 활동 강화
- 시설 보호 아동 중 심리정서 치유가 필요한 아동에서 치료비 지원

다. 학대피해아동 발굴체계 구축

- 학대를 받고 있어도 발견되지 못하는 위기의 아동을 발굴하기 위해 민간네트워크 활용
 - 희망복지지원단 및 아동드림스타트 사업단을 중심으로 지역 내 민간 사회복지 기관 및 단체, 자원봉사자 등을 통한 사례관리가 필요한 아동의 조기발견
 - 아동안전지킴이, 통(이)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각 자생단체 회의시 중앙아동보호 전문기관의 교육동영상을 통한 사전 교육 실시

라. 아동학대 사건에 적극적 대응

- 아동학대 예방 유관기관별 역할 명확화 및 단계별 협력방안 마련
 - 경찰의 초기 현장 대응 등 공적기능 담당,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은 피해아동 보호 및 가해부모 교육 등을 주로 담당하도록 하여 업무 효율성 강화 도모
 -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업무 유관기관별 협조체계 확립(도내 아동학대업무 관련 유관기관 회의개최 2016.4)

마. 학대피해아동 가족기능 강화 및 재학대 방지 대책

- 학대행위자 대상으로 행위자 특성(성학대, 알코올, 가해부모 등)에 따른 맞춤형 상담 교육 치료 프로그램 실시
- 원가정보호 조치 후 모니터링 방법적 모색
 - 가정방문을 통한 아동 및 부모의 직접적 사례 지속관리
 - 학교의 담당교사와의 연계지원으로 간접 사례관리
 - 지역자원과의 연계를 통한 정기적 모니터링 실시
 -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희망복지지원단, 아동드림스타트 사업단, 지역아동센터, wee센터 등
- 원가정 보호 시에도 민관 협력체계를 통해 지속적인 사례관리 추진
- 재학대 방지를 위한 학대피해 대상아동 및 가족에 대한 심리치료 서비스 지원

제주지역 아동학대 실태 조사 분석 결과

1. 조사 개요
2. 초등학생 아동학대 실태 및 인식
3. 부모의 아동학대 실태 및 인식
4. 부모와 아동의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인식 비교
5. 소결

1. 조사 개요

가. 조사 대상

- 본 연구는 아동과 부모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함
 - 아동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선정한 11개 초등학교 5,6학년 626명으로, 제주지역을 2개의 권역(제주시, 서귀포시)로 나누고 다시 제주의 동쪽과 서쪽 지역 학교 수를 고려하여 각 학교마다 학년당 1개반씩만 표집하여 조사함
 - 부모는 10대 학생을 자녀로 둔 부모 500명(부: 250명, 모:250명), 제주지역을 4개의 권역(제주시 동, 서귀포시 동, 제주시 읍면, 서귀포시 읍면)로 나누어 할당하여 표집하여 조사함
- 본 연구에서 초등 고학년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아동학대 피해자가 가장 많은 학교급이 초등학교이며, 다음으로 아동이 지각하는 아동학대 인식을 설문지로 조사할 경우에 저학년은 문항에 반응하기 어려워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을 생각을 잘 표현 못하는 문제 때문에 초등 고학년을 선정함

나. 조사내용

- 아동용과 부모용 설문지를 구분하여 개발함
 - 아동용 설문지의 내용은 아동의 아동학대 실태와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양육태도와 훈육방법, 아동이 지각하는 학대 경험과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함
 - 부모용 설문지의 내용은 부모의 아동학대 실태와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부모의 아동양육태도와 훈육방법, 부모의 학대했던 경험과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함
-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양육태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허묘연(2004)이 개발한 부모양육 행동척도의 각 하위요인의 문항 중 아버지, 어머니 반응에서 공동적으로 가장 높은 적재량을 갖고 있는 문항을 2문항씩 선정하여 사용함
- 부모의 아동양육태도를 조사하기 위해 정교영과 신희천(2011)의 부모 양육행동 척도를 사용함

- 부모훈육방법을 알아보기 위해 아동종합실태조사(2011)에서 사용한 질문을 활용함
- 아동기 외상경험을 조사하기 위해 유재학, 박지선, 박두흠, 유승호와 하지현(2009)이 한국판 아동기 외상 질문지를 성학대 부분은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초등학생이 이해하기 쉽게 수정하여 사용함
- 아동의 아동학대 경험과 인식, 부모의 학대했던 경험과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선행 연구조사를 통해 개발한 문항과 홍순옥과 이옥경(2010)이 사용했던 학대행위 문항을 사용함

라. 조사방법

- 아동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도움으로 학교현장에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 방법
- 부모 : 전문면접원이 각 가구 방문을 통한 면접조사 방법

마. 조사기간

- 2017년 6월 23일 ~ 7월 5일

2. 초등학생 아동학대 실태 및 인식

가. 아동의 일반적 특성

○ 11개 초등학교 5,6학년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10>과 같음

<표 10> 아동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n	%
지역	제주시	406	64.9
	서귀포시	220	35.1
	전체	626	100.0
성별	남학생	336	53.7
	여학생	290	46.3
	전체	626	100.0
학년	5학년	282	45.0
	6학년	344	55.0
	전체	626	100.0
가족형태	친부모 가정	525	83.9
	부모 재혼가정	9	1.4
	한부모 가정	78	12.5
	조손 가정	9	1.4
	기타 가정	5	0.8
	전체	626	100.0
형제수	0명	81	12.9
	1명	296	47.3
	2명	205	32.7
	3명	30	4.8
	4명	11	1.8
	5명	1	0.2
	6명	2	0.3
	전체	626	100.0

- 제주시 406명(64.9%), 서귀포시 220명(35.1%)으로 지역 초등학교 수를 고려하여 표집 하였음
- 학년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5학년이 282명(45.0%), 6학년이 344명(55.5%)임
- 성별을 살펴보면 남학생 336명(53.7%), 여학생은 290명(46.3%)로 남학생의 수가 조금 많았음
- 가족형태를 살펴보면 대부분이 친부모 가정이 525명(83.9%)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

로 한부모 가정이 78명(12.5%)로 나타남

- 형제수는 대부분이 1명인 경우는 296명(47.3%) 또는 2명은 206명(32.7%)이 많았음
(평균 형제수=1.58명, 표준편차=0.78)

나. 부모양육 실태

1) 부모양육태도

-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양육태도는 총 8개의 요인(감독, 합리적 설명, 비밀관성, 과잉 기대, 과잉간섭, 학대, 방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사결과는 <표 11>, <표 12>, <표 13>, <표 14>, <표 15>, <표 16>, <표 17>, <표 18>에 제시함

가) 감독적 양육태도

- 부모양육태도 중 부모가 아동을 감독하는 행동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표 11>과 같음
 - 부모들은 ‘아동이 방과 후에 어디에 가는지 알고 있거나, 아동이 시간을 어떻게 보는지 알고 있는 것’ (93.7%), ‘내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알고 계신다’ (89.3%)으로 나타남

<표 11> 감독적 양육태도

감독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그렇다 (3점)	매우 그렇다 (4점)	전체	평균	표준 편차
내가 방과 후에 어디에 가는지 알고 계신다	n	11	28	146	441	626	3.62	0.66
	%	1.8	4.5	23.3	70.4	100.0		
내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알고 계신다	n	10	57	209	350	626	3.44	0.72
	%	1.6	9.1	33.4	55.9	100.0		

나) 합리적 설명 양육태도

- 부모양육태도 중 합리적 설명은 부모가 아동을 이해시키거나 설득하는 방법과 관련된 요인으로 조사결과는 <표 12>와 같음

- ‘부모님의 결정을 무조건 따르게 하기보다는, 왜 그래야 하는지 설명해 주신다’ 라고 긍정적으로 응답한 학생은 79.4%로 나타났으며, ‘부모님이 화내는 이유를 잘 설명해 주신다’ 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학생은 77.9%로 나타남

〈표 12〉 합리적 설명 양육태도

합리적 설명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그렇다 (3점)	매우 그렇다 (4점)	전체	평균	표준 편차
부모님의 결정을 무조건 따르게 하기보다는, 왜 그래야 하는지 설명해 주신다	<i>n</i>	31	98	250	246	625	3.14	0.86
	%	5.0	15.7	40.0	39.4	100.0		
부모님이 화내는 이유를 잘 설명해 주신다	<i>n</i>	41	97	240	248	626	3.11	0.90
	%	6.5	15.5	38.3	39.6	100.0		

다) 비일관적 양육태도

○ 〈표 13〉은 부모의 비일관성과 관련된 행동을 조사한 결과임

- ‘같은 일에 대해서 화를 낼 때도 있고 안낼 때도 있다’ 고 응답한 학생은 70.6%로 나타났으며, ‘기분 내키는 대로 나를 대하신다’ 고 응답한 학생은 16.5%로 나타남

〈표 13〉 비일관적 양육태도

비일관성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그렇다 (3점)	매우 그렇다 (4점)	전체	평균	표준 편차
같은 일에 대해서 화를 낼 때도 있고 안낼 때도 있다	<i>n</i>	73	111	295	147	626	2.82	0.92
	%	11.7	17.7	47.1	23.5	100.0		
기분 내키는 대로 나를 대하신다	<i>n</i>	335	188	82	21	626	1.66	0.83
	%	53.5	30.0	13.1	3.4	100.0		

라) 과잉기대적 양육태도

○ 과잉기대하여 자녀성장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는 측면을 조사한 결과는 〈표 14〉와 같음

- ‘모든 면에서 남보다 잘해야 한다고 강조하신다’ 고 응답한 학생은 21.3%로 나타났으며, ‘나에게 내 능력 이상의 높은 기대를 가지고 계신다’ 고 응답한 학생은 46.4% 으로 나타남

〈표 14〉 과잉기대적 양육태도

과잉기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그렇다 (3점)	매우 그렇다 (4점)	전체	평균	표준 편차
모든 면에서 남보다 잘해야 한다고 강조하신다	n	274	218	90	43	625	1.84	0.91
	%	43.8	34.9	14.4	6.9	100.0		
나에게 내 능력 이상의 높은 기대를 가지고 계신다	n	159	176	187	103	625	2.37	1.04
	%	25.4	28.2	29.9	16.5	100.0		

마) 과잉간섭적 양육태도

-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과잉간섭하는 행동을 살펴보면 <표 15>와 같음
 - ‘나의 사생활에 대해서까지 잔소리 하신다’ 고 응답한 학생은 28.1%, ‘작은 일에 대해서도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신다’ 고 응답한 학생은 25.0%로 나타남

〈표 15〉 과잉간섭적 양육태도

과잉간섭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그렇다 (3점)	매우 그렇다 (4점)	전체	평균	표준 편차
나의 사생활에 대해서까지 잔소리 하신다	n	254	196	130	46	626	1.95	0.95
	%	40.6	31.3	20.8	7.3	100.0		
작은 일에 대해서도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신다	n	294	188	106	38	626	1.82	0.92
	%	47.0	30.0	16.9	6.1	100.0		

바) 학대적 양육태도

-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체벌과 관련된 학대 조사 결과는 <표 16>과 같음
 - ‘내가 잘못하면 때부터 드신다’ 고 응답한 학생은 6.4%, ‘심하게 때려서 내 몸엔

항상 멍이나 상처가 있다' 고 응답한 학생은 41%로 나타남

〈표 16〉 학대적 양육태도

학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그렇다 (3점)	매우 그렇다 (4점)	전체	평균	표준 편차
내가 잘못하면 매부터 드신 다	n	466	120	30	10	626	1.34	0.64
	%	74.4	19.2	4.8	1.6	100.0		
심하게 때려서 내 몸엔 항상 멍이나 상처가 있다	n	520	79	22	4	625	1.22	0.53
	%	83.2	12.6	3.5	0.6	100.0		

사) 방치적 양육태도

○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아동을 방치하는 행동을 조사한 결과는 〈표 17〉과 같음

- '나에 대해 관심이 없어서 칭찬하거나 혼내는 일이 없다' 고 응답한 학생은 4.5%,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관심이 없다' 고 응답한 학생은 10.4%로 나타남

〈표 17〉 방치적 양육태도

방치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그렇다 (3점)	매우 그렇다 (4점)	전체	평균	표준 편차
나에 대해 관심이 없어서 칭 찬하거나 혼내는 일이 없다	n	491	107	18	10	626	1.28	0.59
	%	78.4	17.1	2.9	1.6	100.0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지에 대해 관심이 없다	n	422	133	58	13	626	1.46	0.75
	%	67.4	21.2	9.3	2.1	100.0		

아) 애정적 양육태도

○ 부모의 애정적 양육행동을 조사한 결과는 〈표 18〉과 같음

- '나를 좋아한다는 표현을 하신다' 고 응답한 학생은 88.2%, '내가 힘들 때 나에게 용기를 주셨다' 고 응답한 학생은 86.9%로 나타남

〈표 18〉 애정적 양육태도

애정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그렇다 (3점)	매우 그렇다 (4점)	전체	평균	표준 편차
나를 좋아한다는 표현을 하 신다	<i>n</i> %	27 4.3	47 7.5	193 30.9	358 57.3	625 100.0	3.41	0.81
내가 힘들 때 나에게 용기를 주셨다	<i>n</i> %	26 4.2	56 8.9	183 29.2	361 57.7	626 100.0	3.40	0.82

2) 성별에 따른 부모양육태도

- 아동의 성별(남학생=336명, 여학생=290명)에 따른 부모양육태도에서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 19〉에 제시함
- 〈표 19〉을 살펴보면, 성별에 따른 부모의 감독, 과잉기대, 학대에서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합리적 설명, 비밀관성, 과잉간섭, 방치, 애정에서는 성별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음
 - 구체적으로 부모의 감독에서 ‘내가 방과 후에 어디에 가는지 알고 계신다’ 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유의미하게 높았음($t=-3.11, p<.01$), ‘내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알고 계신다’ 에서도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유의미하게 높았음($t=-2.39, p<.05$)
 - 부모의 과잉기대 부분에서는 ‘나에게 내 능력 이상의 높은 기대를 가지고 계신다’ 문항에서만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남($t=2.69, p<.01$)
 - 부모의 신체적 처벌과 관련된 학대에서는 ‘내가 잘못하면 매부터 드신다’ 문항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남($t=-3.22, p<.01$), ‘심하게 때려서 내 몸엔 항상 멍이나 상처가 있다’ 문항도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유의미하게 높음($t=-2.09, p<.05$)

<표 19> 성별에 따른 부모양육태도 차이 분석

양육태도		성별	평균	표준 편차	t
감독	내가 방과 후에 어디에 가는지 알고 계신다	남학생 여학생	3.55 3.71	0.71 0.58	-3.11**
	내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알고 계신다	남학생 여학생	3.37 3.51	0.75 0.69	-2.39*
합리적 설명	부모님의 결정을 무조건 따르게 하기 보다는, 왜 그래야 하는지 설명해 주신다	남학생 여학생	3.10 3.18	0.86 0.85	-1.24
	부모님이 화내는 이유를 잘 설명해 주신다.	남학생 여학생	3.13 3.09	0.88 0.92	0.44
비일관성	같은 일에 대해서 화를 낼 때도 있고 안낼 때도 있다	남학생 여학생	2.83 2.82	0.92 0.93	0.18
	기분 내키는 대로 나를 대하신다	남학생 여학생	1.67 1.66	0.85 0.80	0.22
과잉기대	모든 면에서 남보다 잘해야 한다고 강조하신다	남학생 여학생	1.91 1.77	0.92 0.91	1.89
	나에게 내 능력 이상의 높은 기대를 가지고 계신다	남학생 여학생	2.48 2.26	1.03 1.04	2.69**
과잉간섭	나의 사생활에 대해서까지 잔소리 하신다	남학생 여학생	1.97 1.92	0.96 0.95	0.69
	작은 일에 대해서도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신다	남학생 여학생	1.89 1.74	0.94 0.90	1.93
학대	내가 잘못하면 때부터 드신다	남학생 여학생	1.41 1.25	0.70 0.56	3.22**
	심하게 때려서 내 몸엔 항상 멍이나 상처가 있다	남학생 여학생	1.26 1.17	0.55 0.49	2.09*
방치	나에 대해 관심이 없어서 칭찬하거나 혼내는 일이 없다	남학생 여학생	1.32 1.23	0.62 0.56	1.92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관심이 없다	남학생 여학생	1.46 1.46	0.72 0.78	0.15
애정	나를 좋아한다는 표현을 하신다	남학생 여학생	3.36 3.47	0.83 0.77	-1.71
	내가 힘들 때 나에게 용기를 주셨다	남학생 여학생	3.37 3.44	0.85 0.78	-1.06

* $p < .05$, ** $p < .01$

3) 부모 훈육방법

- 양육과정에서 부모의 훈육방법을 살펴본 결과는 <표 20>과 같음
- <표 20>를 보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훈육방법은 ‘말로 야단치기’이며, 다음으로 ‘장남감이나 게임기, 휴대폰 사용 제한하기’, ‘선물, 말로 칭찬하기, 칭찬스티커 주기 등’, ‘벌 세우기’, ‘신체적 처벌’ 순으로 나타났음
 - 부모들이 ‘신체적 처벌’ 을 자주한다는 비율은 5.0% 정도 나타남
 - ‘벌 세우기’ 는 9.3%의 부모들이 자주 사용한가고 함
 - ‘말로 야단치기’ 는 58.5%의 부모들이 자주 사용하고 있었음.
 - ‘장남감이나 게임기, 휴대폰 사용 제한하기’ 는 36.8%의 부모들이 자주 사용함
 - ‘선물, 말로 칭찬하기, 칭찬스티커 주기 등’ 은 35.7%의 부모들이 자주 사용하고 있음

<표 20> 부모 훈육방법

훈육방법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1점)	별로 사용하지 않는다 (2점)	자주 사용한다 (3점)	매우 자주 사용한다 (4점)	전체	평균	표준 편차
신체적 처벌	<i>n</i> %	495 79.2	99 15.8	25 4.0	6 1.0	625 100.0	1.27	0.58
벌 세우기	<i>n</i> %	419 67.3	146 23.4	46 7.4	12 1.9	623 100.0	1.44	0.71
말로 야단치기	<i>n</i> %	103 16.5	156 25.0	248 39.7	117 18.8	624 100.0	2.61	0.97
장남감이나 게임기, 휴대폰 사용 제한하기	<i>n</i> %	224 36.0	169 27.2	157 25.2	72 11.6	622 100.0	2.12	1.03
선물, 말로 칭찬하기, 칭찬스티커 주기 등	<i>n</i> %	271 43.6	129 20.7	126 20.3	96 15.4	622 100.0	2.08	1.12

4) 성별에 따른 부모 훈육방법

- 아동의 성별에 따른 훈육방법을 살펴본 결과는 <표 21>에 제시함
- <표 21>를 보면, ‘장난감이나 게임기, 휴대폰 사용 제한하기’와 ‘선물, 말로 칭찬하기, 칭찬스티커 주기 등’의 훈육방법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지만, ‘신체적 처벌’, ‘벌 세우기’, ‘말로 야단치기’ 훈육방법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음
- ‘장난감이나 게임기, 휴대폰 사용 제한하기’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많이 사용되고 있었으며($t=-3.47, p<.01$), ‘선물, 말로 칭찬하기, 칭찬스티커 주기 등’의 훈육방법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많이 사용되고 있었음($t=-3.33, p<.01$)

<표 21> 부모 훈육방법 성별 차이

훈육방법	성별	평균	표준편차	t
신체적 처벌	남학생	1.28	0.60	0.62
	여학생	1.25	0.55	
벌 세우기	남학생	1.48	0.74	1.42
	여학생	1.40	0.68	
말로 야단치기	남학생	2.60	0.98	-0.15
	여학생	2.61	0.97	
장난감이나 게임기, 휴대폰 사용 제한하기	남학생	2.26	1.06	3.47**
	여학생	1.97	0.97	
선물, 말로 칭찬하기, 칭찬스티커 주기 등	남학생	1.94	1.06	-3.33**
	여학생	2.24	1.16	

** $p<.01$

다. 아동학대 경험 및 인식

1) 아동학대 실태

가) 아동기 외상경험

- 지금까지 부모님 혹은 다른 가족 구성원, 주변사람들과의 사이에서 겪었던 외상경험(정서학대, 신체학대, 정서방임, 신체방임)을 조사한 결과는 <표 22>, <표 23>, <표

24), <표 25>와 같음

- <표 22>를 보면, 정서학대 문항 중에 ‘내가 듣기 싫은 별명으로 부르곤 했다’ 문항을 제외한 모든 정서학대 문항에서 ‘전혀 없음’ 이나 ‘드물게 있음’ 으로 반응하고 있는 비율이 높음
 -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정서적 학대를 당한 적이 있는지 묻는 문항에서는 ‘전혀 없음’ 이 92%로 나타났지만, 다른 정서학대 문항에서는 ‘전혀 없음’ 이 39.4%~86.1%까지 다양하게 나타남. 이런 결과는 정서학대에 대한 아동의 인식이 부족함을 나타냄

<표 22> 정서학대

정서학대		전혀 없음 (1점)	드물게 있음 (2점)	가끔 있음 (3점)	자주 있음 (4점)	전체	평균	표준 편차
내가 듣기 싫은 별명으로 부르곤 했다(예: 멍청이, 똥뎅이)	n	246	175	135	69	625	2.04	1.03
	%	39.4	28.0	21.6	11.0	100.0		
나에게 “너 같은 애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어” 라고 말한 적이 있다	n	537	50	31	6	624	1.21	0.57
	%	86.1	8.0	5.0	1.0	100.0		
가족 중에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고 느꼈다	n	465	83	51	27	626	1.42	0.82
	%	74.3	13.3	8.1	4.3	100.0		
가족 중에 나에게 모욕적인 이야기나 심한 말 등을 해서 마음이 상한 적이 있다	n	406	127	65	28	626	1.54	0.85
	%	64.9	20.3	10.4	4.5	100.0		
나는 정서적으로 학대를 당한 적이 있다	n	574	33	13	4	624	1.11	0.43
	%	92.0	5.3	2.1	0.6	100.0		

- <표 23>을 보면, 전반적으로 신체학대를 경험한 아동은 낮게 나타났지만, 신체적 학대 정도에 있어서 아직도 신체적 학대를 경험하는 아동들이 있음
 - ‘세계 맞아 멍이나 상처를 입은 적이 있다’ 문항에서 ‘가끔 있음’ 과 ‘자주 있음’ 에 응답한 비율이 8.8%로 나타남
 - ‘세계 맞아 병원에 간 적이 있다’ 문항에서 ‘가끔 있음’ 과 ‘자주 있음’ 에 응답한 비율이 1.3%로 나타남

- ‘회초리 이외에 물건(허리띠, 몽둥이)으로 맞은 적이 있다’ 문항에서 ‘가끔 있음’ 과 ‘자주 있음’ 에 응답한 비율이 9.9%로 나타남
- ‘나는 신체적으로 학대를 당한 적이 있다’ 문항에서 ‘가끔 있음’ 과 ‘자주 있음’ 에 응답한 비율이 2.3%로 나타남
- ‘다른 사람들이 알아볼 정도로 너무 많이 맞은 적이 있다’ 문항에서 ‘가끔 있음’ 과 ‘자주 있음’ 에 응답한 비율이 1.7%로 나타남

〈표 23〉 신체학대

신체학대		전혀 없음 (1점)	드물게 있음 (2점)	가끔 있음 (3점)	자주 있음 (4점)	전체	평균	표준 편차
세계 맞아 명이나 상처를 입은 적이 있다	n	439	132	47	8	626	1.40	0.68
	%	70.1	21.1	7.5	1.3	100.0		
세계 맞아 병원에 간 적 이 있다	n	593	25	5	3	626	1.07	0.33
	%	94.7	4.0	0.8	0.5	100.0		
회초리 이외에 물건(허리 띠, 몽둥이)으로 맞은 적 이 있다	n	408	156	55	7	626	1.46	0.70
	%	65.2	24.9	8.8	1.1	100.0		
나는 신체적으로 학대를 당한 적이 있다	n	569	43	12	2	626	1.12	0.40
	%	90.9	6.9	1.9	0.3	100.0		
다른 사람들이 알아볼 정 도로 너무 많이 맞은 적 이 있다	n	587	28	7	4	626	1.09	0.37
	%	93.8	4.5	1.1	0.6	100.0		

○ 〈표 24〉는 정서방임 경험을 나타낸 결과로서, 각 문항을 역채점하여 분석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방임을 많이 경험,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의 정서방임을 경험하고 있음

- 가족 안에서 사랑받았다고 전혀 느끼지 못한 아동의 비율이 1.8% 나타남
- 가족 안에서 내가 중요한 존재가 전혀 생각하지 않는 아동의 비율이 3.0% 나타남
- 가족 서로 가깝다고 전혀 느끼지 못한 아동의 비율이 3.2% 나타남
- 가족이 나를 전혀 지지해 주지 않는다고 느끼는 아동의 비율이 3.4% 나타남
- 우리 가족은 서로를 배려한다고 전혀 느끼지 못한 아동의 비율이 2.1% 나타남

〈표 24〉 정서방임†

정서방임†		자주 있음 (1점)	가끔 있음 (2점)	드물게 있음 (3점)	전혀 없음 (4점)	전체	평균	표준 편차
가족 안에서 사랑받았다고 느꼈다	n	483	97	35	11	626	1.32	0.66
	%	77.2	15.5	5.6	1.8	100.0		
가족 안에서 내가 중요한 존재라는 생각이 들었다	n	431	123	53	19	626	1.46	0.77
	%	68.8	19.6	8.5	3.0	100.0		
우리 가족들은 서로 가깝다고 느꼈다	n	455	101	50	20	626	1.42	0.77
	%	72.7	16.1	8.0	3.2	100.0		
우리 가족은 나를 지지해준다고 느꼈다	n	427	122	56	21	626	1.47	0.79
	%	68.2	19.5	8.9	3.4	100.0		
우리 가족은 서로를 배려한다고 느꼈다	n	403	135	74	13	625	1.52	0.78
	%	64.5	21.6	11.8	2.1	100.0		

† 모든 문항 역채점함

○ 〈표 25〉의 신체방임 경험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신체방임의 정도가 낮았으나 ‘부모님이 술을 너무 많이 마셨다’ 문항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평균=1.84)

- ‘나에게 제때 밥을 챙겨주지 않았다’ 문항에서 ‘가끔 있음’ 과 ‘자주 있음’ 에 응답한 비율이 9.3%로 나타남
- ‘가족들에게 나는 충분한 보살핌을 받지 않았다’ 문항에서 ‘가끔 있음’ 과 ‘자주 있음’ 에 응답한 비율이 9.3%로 나타남
- ‘부모님이 술을 너무 많이 마셨다’ 문항에서 ‘가끔 있음’ 과 ‘자주 있음’ 에 응답한 비율이 23.5%로 나타남
- ‘내가 씻지 않거나 더러운 옷을 입어도 내버려둔 적이 있다’ 문항에서 ‘가끔 있음’ 과 ‘자주 있음’ 에 응답한 비율이 3.6%로 나타남
- ‘내가 아파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문항에서 ‘가끔 있음’ 과 ‘자주 있음’ 에 응답한 비율이 2.9%로 나타남

〈표 25〉 신체방임

신체방임		전혀 없음 (1점)	드물게 있음 (2점)	가끔 있음 (3점)	자주 있음 (4점)	전체	평균	표준 편차
나에게 제때 밥을 챙겨주 지 않았다	<i>n</i>	472	96	48	10	626	1.35	0.69
	%	75.4	15.3	7.7	1.6	100.0		
가족들에게 나는 충분한 보살핌을 받았다†	<i>n</i>	486	82	25	33	626	1.37	0.79
	%	77.6	13.1	4.0	5.3	100.0		
부모님이 술을 너무 많이 마셨다	<i>n</i>	290	189	102	45	626	1.84	0.94
	%	46.3	30.2	16.3	7.2	100.0		
내가 씻지 않거나 더러운 옷을 입어도 내버려둔 적 이 있다	<i>n</i>	542	62	16	6	626	1.18	0.51
	%	86.6	9.9	2.6	1.0	100.0		
내가 아파도 병원에 데려 가지 않았다	<i>n</i>	559	49	12	6	626	1.15	0.47
	%	89.3	7.8	1.9	1.0	100.0		

† 역채점

나) 성별에 따른 아동기 외상 경험

- 성별에 따른 부모님 혹은 다른 가족 구성원, 주변사람들과의 사이에서 겪었던 외상 경험(정서학대, 신체학대, 정서방임, 신체방임)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는 〈표 26〉, 〈표 27〉, 〈표 28〉, 〈표 29〉, 〈표 30〉과 같음
- 〈표 26〉의 정서학대에서 남학생과 여학생의 차이 결과 살펴보면, 정서학대는 남학생과 여학생이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음

〈표 26〉 정서학대에서 성별 차이

정서학대	성별	평균	표준편차	<i>t</i>
내가 듣기 싫은 별명으로 부르곤 했다 (예: 멍청이, 똥똥이)	남학생	2.06	1.02	0.35
	여학생	2.03	1.04	
나에게 “너 같은 애는 태어나지 말았어 야 했어” 라고 말한 적이 있다	남학생	1.22	0.56	0.42
	여학생	1.20	0.58	
가족 중에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고 느꼈다	남학생	1.37	0.79	-1.84
	여학생	1.49	0.84	
가족 중에 나에게 모욕적인 이야기나 심 한 말 등을 해서 마음이 상한 적이 있다	남학생	1.52	0.83	-0.85
	여학생	1.58	0.88	
나는 정서적으로 학대를 당한 적이 있다	남학생	1.11	0.42	-0.21
	여학생	1.12	0.43	

○ 신체학대에서 남학생과 여학생의 차이 결과는 <표 27>과 같음

- ‘세계 맞아 병원에 간 적이 있다’ 문항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남($t=2.62, p<.01$)
- ‘회초리 이외에 물건(허리띠, 몽둥이)으로 맞은 적이 있다’ 문항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남($t=2.07, p<.05$)
- ‘세계 맞아 멍이나 상처를 입은 적이 있다’, ‘나는 신체적으로 학대를 당한 적이 있다’, ‘다른 사람들이 알아볼 정도로 너무 많이 맞은 적이 있다’ 문항은 남학생과 여학생이 유의미한 차이 없음

<표 27> 신체학대에서 성별 차이

신체학대	성별	평균	표준편차	t
세계 맞아 멍이나 상처를 입은 적이 있다	남학생	1.44	0.69	1.74
	여학생	1.35	0.68	
세계 맞아 병원에 간 적이 있다	남학생	1.10	0.40	2.62**
	여학생	1.03	0.22	
회초리 이외에 물건(허리띠, 몽둥이)으로 맞은 적이 있다	남학생	1.51	0.73	2.07*
	여학생	1.40	0.66	
나는 신체적으로 학대를 당한 적이 있다.	남학생	1.13	0.43	1.18
	여학생	1.10	0.37	
다른 사람들이 알아볼 정도로 너무 많이 맞은 적이 있다	남학생	1.10	0.43	1.32
	여학생	1.07	0.30	

* $p<.05$, ** $p<.01$

○ 정서방임에서 남학생과 여학생의 차이 결과는 <표 28>, 정서방임은 남학생과 여학생이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음

〈표 28〉 정서방임에서 성별 차이

정서방임	성별	평균	표준 편차	t
가족 안에서 사랑받았다고 느꼈다	남학생	1.35	0.71	1.19
	여학생	1.29	0.59	
가족 안에서 내가 중요한 존재라는 생각이 들었다	남학생	1.47	0.81	0.36
	여학생	1.44	0.73	
우리 가족들은 서로 가깝다고 느꼈다	남학생	1.43	0.79	0.51
	여학생	1.40	0.75	
우리 가족은 나를 지지해준다고 느꼈다	남학생	1.49	0.84	0.36
	여학생	1.46	0.73	
우리 가족은 서로를 배려한다고 느꼈다	남학생	1.49	0.78	-0.98
	여학생	1.55	0.78	

○ 신체방임에서 남학생과 여학생의 차이 결과는 〈표 29〉와 같음

- ‘부모님이 술을 너무 많이 마셨다’ 문항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남($t=2.62, p<.01$)
- ‘내가 씻지 않거나 더러운 옷을 입어도 내버려둔 적이 있다’ 문항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남($t=2.07, p<.05$)
- ‘나에게 제때 밥을 챙겨주지 않았다’, ‘가족들에게 나는 충분한 보살핌을 받았다’, ‘내가 아파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문항은 남학생과 여학생이 유의미한 차이 없음

〈표 29〉 신체방임에서 성별 차이

신체방임	성별	평균	표준 편차	t
나에게 제때 밥을 챙겨주지 않았다	남학생	1.37	0.69	0.44
	여학생	1.34	0.70	
가족들에게 나는 충분한 보살핌을 받았다 †	남학생	1.36	0.79	-0.30
	여학생	1.38	0.80	
부모님이 술을 너무 많이 마셨다	남학생	1.94	0.96	2.78**
	여학생	1.73	0.91	
내가 씻지 않거나 더러운 옷을 입어도 내버려둔 적이 있다	남학생	1.23	0.56	2.91**
	여학생	1.12	0.42	
내가 아파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남학생	1.15	0.50	0.54
	여학생	1.13	0.43	

† 역채점, ** $p<.01$

- <표 30>은 학대유형(하위요인)별로 성별 차를 분석한 결과로서, 성별에서 신체학대와 신체방임은 남학생이 유의미하게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났지만 정서학대와 정서방임을 성별 차가 나타나지 않았음

<표 30> 학대유형 별 성별 차이

학대유형	성별	평균	표준편차	t
정서학대	남학생	1.45	0.48	-0.59
	여학생	1.48	0.52	
신체학대	남학생	1.26	0.38	2.53*
	여학생	1.19	0.31	
정서방임	남학생	1.44	0.70	0.23
	여학생	1.43	0.63	
신체방임	남학생	1.41	0.42	2.13*
	여학생	1.34	0.40	

* $p < .05$

다) 학대 받은 경험

- 지난 1년 동안 어른으로부터 학대 행위(신체학대, 정서학대, 방임, 성학대)를 받은 적이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 <표 31>, <표 32>, <표 33>, <표 34>와 같음
- <표 31>의 신체학대 결과를 살펴보면, 신체적 학대 수준의 심각성이 낮아질수록 학대 받은 경험의 비율 높아짐
- 회초리로 손바닥이나 엉덩이를 때리는 행위(21.1%), 회초리 이외의 물건으로 엉덩이 이외의 부분을 때리는 행위(15.8%), 손바닥으로 뺨, 얼굴, 머리를 때리는 행위(12.3%)
 - 세계 밀치는 행위(7.3%), 물건을 던지는 행위(7.3%),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리는 행위(6.1%)
 - 사정없이 마구 때리는 행위(3.0%), 칼이나 흉기로 위협하는 행위(0.6%)

〈표 31〉 신체학대 행위

신체학대 행위		전혀 없다 (1점)	가끔 있다 (2점)	자주 있다 (3점)	전체
칼이나 흉기로 위협하는 행위	<i>n</i> %	621 99.4	4 0.6	0 0.0	625 100.0
사정없이 마구 때리는 행위	<i>n</i> %	606 97.0	18 2.8	1 0.2	625 100.0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리는 행위	<i>n</i> %	587 93.9	35 5.6	3 0.5	625 100.0
물건(재떨이, 책, 그릇, 의자 등)을 던지는 행위	<i>n</i> %	580 92.8	41 6.6	4 0.6	625 100.0
회초리 이외의 물건(벨트, 막대기, 빗자루 등)으로 엉덩이 이외의 부분을 때리는 행위	<i>n</i> %	527 84.2	93 14.9	6 1.0	626 100.0
손바닥으로 뺨, 얼굴, 머리를 때리는 행위	<i>n</i> %	555 88.7	63 10.1	8 1.3	626 100.0
세계 밀치는 행위	<i>n</i> %	580 92.7	42 6.7	4 0.6	626 100.0
회초리로 손바닥이나 엉덩이를 때리는 행위	<i>n</i> %	500 79.9	116 18.5	10 1.6	626 100.0

- 〈표 32〉의 정서학대 경험 결과를 살펴보면, 정서적 학대 중 욕을 가장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심하게 야단쳐서 기를 완전히 꺾는 행위로 나타남
- 욕을 하는 행위(20.8%), 심하게 야단쳐서 기를 완전히 꺾는 행위(19.3%)
 - “학교 그만두고 일이나 해라! 돈이나 벌어오라!” 라고 말하는 행위(17.7%)
 - “나가 죽어라!”라고 말하는 행위(4.6%), 다락, 골방, 창고 등의 캄캄한 곳에 가두는 행위(0.5%)

〈표 32〉 정서학대 행위

정서학대 행위		전혀 없다 (1점)	가끔 있다 (2점)	자주 있다 (3점)	전체
다락, 골방, 창고 등의 캄캄한 곳에 가두는 행위	<i>n</i> %	623 99.5	3 0.5	0 0.0	626 100.0
“나가 죽어라”라고 말하는 행위	<i>n</i> %	597 95.4	24 3.8	5 0.8	626 100.0
욕(명칭한 것, 못된 것, 병신 같은 것 등)을 하는 행위	<i>n</i> %	496 79.2	108 17.3	22 3.5	626 100.0
“학교 그만두고 일이나 해라! 돈이나 벌어오라!” 라고 말하는 행위	<i>n</i> %	578 92.3	43 6.9	5 0.8	626 100.0
심하게 야단쳐서 기를 완전히 꺾는 행위	<i>n</i> %	505 80.7	100 16.0	21 3.4	626 100.0

○ 〈표 33〉의 방임 경험 결과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방임 비율은 높지 않지만 어두워질 때까지 혼자 집을 보게 하는 행위는 다른 방임 행위보다 더 많이 경험하고 있었음

- 어두워질 때까지 혼자 집을 보게 하는 행위(16.8%)
- 식사 때가 되어도 밥을 챙겨주지 않는 행위(8.3%), 어떤 친구들과 무엇을 하며 놀든지 전혀 상관하지 않는 행위(6.1%)
- 집에 늦게 들어와도 신경 쓰지 않는 행위(5.4%), 몸이 아프다고 해도 그냥 내버려두는 행위(4.5%)

〈표 33〉 방임 행위

방임 행위		전혀 없다 (1점)	가끔 있다 (2점)	자주 있다 (3점)	전체
몸이 아프다고 해도 그냥 내버려 두는 행위	<i>n</i>	598	23	5	626
	%	95.5	3.7	0.8	100.0
남의 물건이나 돈을 훔쳐도 전혀 상관하지 않는 행위	<i>n</i>	622	3	1	626
	%	99.4	0.5	0.2	100.0
식사 때가 되어도 밥을 챙겨주지 않는 행위	<i>n</i>	573	47	5	625
	%	91.7	7.5	0.8	100.0
집에 늦게 들어와도 신경 쓰지 않는 행위	<i>n</i>	592	29	5	626
	%	94.6	4.6	0.8	100.0
이유 없이 학교를 결석해도 아무 말도 안 하는 행위	<i>n</i>	621	3	1	625
	%	99.4	0.5	0.2	100.0
어떤 친구들과 무엇을 하며 놀든지 전혀 상관하지 않는 행위	<i>n</i>	587	36	2	625
	%	93.9	5.8	0.3	100.0
위험한 물건(칼, 압정, 핀 등)을 가지고 놀아도 내버려 두는 행위	<i>n</i>	614	9	1	624
	%	98.4	1.4	0.2	100.0
옷이 더러워져도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혀주지 않는 행위	<i>n</i>	610	13	2	625
	%	97.6	2.1	0.3	100.0
어두워질 때까지 혼자 집을 보게 하는 행위	<i>n</i>	520	93	12	625
	%	83.2	14.9	1.9	100.0

○ 〈표 34〉의 성학대 경험을 살펴보면, 소수의 학생이 학대 경험을 가지고 있었음

- 싫다고 해도 몸을 만지는 행위(2.2%), 어른이 성기를 만지는 행위(2.2%), 억지로 입을 맞추는 행위(1.3%)
- 싫어하는데도 어른이 자기 몸을 만져 달라고 하는 행위(0.7%), 성인이 발가벗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동영상나 책을 보여주는 행위(0.4%), 억지로 옷을 벗겨 몸을 보려고 하는 행위(0.2%)

〈표 34〉 성학대 행위

성학대 행위		전혀 없다 (1점)	가끔 있다 (2점)	자주 있다 (3점)	전체
싫어하는데도 어른이 자기 몸을 만져 달라고 하는 행위	<i>n</i>	622	3	1	626
	%	99.4	0.5	0.2	100.0
어른이 성기를 만지는 행위	<i>n</i>	611	14	0	625
	%	97.8	2.2	0.0	100.0
성인이 발가벗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비디오(동영상)나 책을 보여주는 행위	<i>n</i>	623	1	1	625
	%	99.7	0.2	0.2	100.0
억지로 옷을 벗겨 몸을 보려고 하는 행위	<i>n</i>	625	1	0	626
	%	99.8	0.2	0.0	100.0
싫다고 해도 몸을 만지는 행위	<i>n</i>	612	12	2	626
	%	97.8	1.9	0.3	100.0
억지로 입을 맞추는 행위	<i>n</i>	618	7	1	626
	%	98.7	1.1	0.2	100.0

라) 성별에 따른 학대받은 경험

○ 〈표 35〉는 학대행위별로 문항의 총점을 구하고, 성별에서 학대행위 차이를 살펴본 결과, 성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음

〈표 35〉 학대행위에서 성별 차이

학대행위	성별	평균	표준 편차	<i>t</i>
신체학대	남학생	8.83	1.60	0.98
	여학생	8.70	1.52	
정서학대	남학생	5.63	1.20	0.41
	여학생	5.59	1.11	
방임	남학생	9.52	1.20	0.38
	여학생	9.49	1.16	
성학대	남학생	6.10	0.53	1.08
	여학생	6.06	0.41	
학대 전체	남학생	30.06	3.31	0.90
	여학생	29.82	3.33	

2) 아동학대 인식

○ 학대받은 아동에게 도움을 줄만한 기관을 알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는 <표 36>에 제시함

- 아동의 60.0%는 학대받은 아동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을 알고 있지만 40.0%의 아동들은 ‘모른다’고 응답하였음

<표 36> 학대받은 아동에게 도움을 줄만한 기관에 대한 인지

구분	알고 있다		모른다		전체	
	n	%	n	%	n	%
남학생	204	32.6	132	21.1	336	53.8
여학생	171	27.4	118	18.9	289	46.2
전체	375	60.0	250	40.0	625	100.0

○ 아동학대신고 전화번호 알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는 <표 37>에 제시함

- 아동의 60.0%의 아동들은 아동학대 신고전화번호를 ‘모른다’고 응답하였음

<표 37> 아동학대 신고전화 인지

구분	알고 있다		모른다		전체	
	n	%	n	%	n	%
남학생	148	23.6%	188	30.0%	336	53.7%
여학생	104	16.6%	186	29.7%	290	46.3%
전체	252	40.3%	374	59.7%	626	100.0%

○ 생활하면서 고민이 있거나 어려움이 생기면, 주로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지 조사한 결과는 <표 38>과 같음

- 조사대상 아동들은 고민이나 어려움이 생기면 주로 부모님(84.1%)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다음으로 친구나 선·후배(46.3%), 학교 선생님(30.7%)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남학생과 여학생을 구분하여 살펴봐도 비슷한 결과를 나타냄

〈표 38〉 생활고민이나 어려움 발생시 도움 요청인(다중응답)

구분	남학생		여학생		전체	
	n	%	n	%	n	%
부모님	281	45.6	237	38.5	518	84.1
친척	17	2.8	19	3.1	36	5.8
학교 선생님	108	17.5	81	13.1	189	30.7
이웃주민	2	.3	0	0.0	2	.3
기관선생님(사회복지관, 지역아동센터 등)	3	.5	8	1.3	11	1.8
친구 부모님	3	.5	7	1.1	10	1.6
학원/과외 선생님	5	.8	6	1.0	11	1.8
경찰	17	2.8	5	.8	22	3.6
친구, 선·후배	131	21.3	154	25.0	285	46.3
전체	329	53.4	287	46.6	616	100.0

○ 자신에게 아동학대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하겠는지 조사한 결과는 〈표 39〉와 같음

- 조사대상 아동들은 부모님(47.6%)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다음으로 경찰서(39.1%), 아동보호전문기관(38.2%), 선생님(24.1%) 주로 알리는 것으로 나타남
- ‘그냥 가만히 참는다’ 고 응답한 아동은 4.5%로 나타남

〈표 39〉 자신에게 아동학대가 발생할 때 대처방법(다중응답)

구분	남학생		여학생		전체	
	n	%	n	%	n	%
그냥 가만히 참는다	13	2.1	15	2.4	28	4.5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한다	125	20.0	114	18.2	239	38.2
집을 뛰쳐 나온다	35	5.6	13	2.1	48	7.7
경찰서에 신고한다	146	23.3	99	15.8	245	39.1
형제자매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19	3.0	16	2.6	35	5.6
친구(학교, 학원)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17	2.7	24	3.8	41	6.5
아빠나 엄마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145	23.2	153	24.4	298	47.6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한다	75	12.0	76	12.1	151	24.1
이웃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26	4.2	21	3.4	47	7.5
전체	336	53.7	290	46.3	626	100.0

○ 자신에게 아동학대가 발생할 때 ‘그냥 가만히 참는 이유’ 를 조사한 결과는 <표 40>에 제시함

- ‘그냥 가만히 참는다’ 는 아동(4.5%)들은 이길 힘이 없어서(32.1%), 가족이기 때문에(28.6%), 무서워서(25.0%), 대응하면 폭력이 심해지므로(21.4%) 순으로 나타났음

<표 40> 아동학대 발생 시 그냥 가만히 참는 이유(다중응답)

구분	남학생		여학생		전체	
	n	%	n	%	n	%
무서워서	4	14.3	3	10.7	7	25.0
대응하면 폭력이 심해지므로	2	7.1	4	14.3	6	21.4
내가 잘못된 것이므로	1	3.6	1	3.6	2	7.1
가족이기 때문에	4	14.3	4	14.3	8	28.6
창피하고 자존심 상해서	0	0.0	1	3.6	1	3.6
그 순간만 넘기면 되므로	3	10.7	2	7.1	5	17.9
이길 힘이 없어서	4	14.3	5	17.9	9	32.1
내가 어른이 되면 복수할 것이므로	4	14.3	2	7.1	6	21.4
신고해봐야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서	0	0.0	2	7.1	2	7.1
기타	1	3.6	2	7.1	3	10.7
전체	13	46.4	15	53.6	28	100.0

○ 친구에게 아동학대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하겠는지 조사한 결과는 <표 41>과 같음

- 아동들은 선생님(45.3%)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다음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42.5%), 경찰서(42.4%), 부모(28.9%) 주로 알리는 것으로 나타남
- ‘그냥 가만히 참는다’ 고 응답한 아동은 2.1%로 나타남

〈표 41〉 친구에게 아동학대가 발생할 때 대처방법(다중응답)

구분	남학생		여학생		전체	
	<i>n</i>	%	<i>n</i>	%	<i>n</i>	%
그냥 가만히 참는다	9	1.4	4	0.6	13	2.1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한다	141	22.6	124	19.9	265	42.5
이웃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43	6.9	22	3.5	65	10.4
경찰서에 신고한다	158	25.4	106	17.0	264	42.4
형제자매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0	0.0	6	1.0	6	1.0
친구(학교, 학원)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22	3.5	18	2.9	40	6.4
아빠나 엄마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83	13.3	97	15.6	180	28.9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한다	130	20.9	152	24.4	282	45.3
기타	10	1.6	2	0.3	12	1.9
전체	334	53.6	289	46.4	623	100.0

3. 부모의 아동학대 실태 및 인식

가. 부모의 일반적 특성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부모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42〉와 같음

〈표 42〉 부모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n	%
지역	제주시 동	292	58.4
	제주시 읍면	76	15.2
	서귀포시 동	73	14.6
	서귀포시 읍면	59	11.8
	전체	500	100.0
성별	남성	250	50.0
	여성	250	50.0
	전체	500	100.0
자녀수	1명	74	14.8
	2명	279	55.8
	3명	125	25.0
	4명 이상	22	4.4
	전체	500	100.0
맞벌이	예	373	74.6
	아니오	127	25.4
	전체	500	100.0
소득	100만원 미만	4	.8
	100~199만원	28	5.6
	200~299만원	82	16.4
	300~399만원	122	24.4
	400~499만원	125	25.0
	500~599만원	75	15.0
	600~699만원	34	6.8
	700만원 이상	30	6.0
	전체	500	100.0
배우자와 거주	예	456	91.2
	아니오	44	8.8
	전체	500	100.0

- 각 읍면동별 인구비례 할당 후 성비를 고려하여 무작위로 500명(부 250명, 모 250명)을 추출한 결과, 제주시 동지역 292명(58.4%), 제주시 읍면지역 76명(15.2%), 서귀포시 동지역 73명(14.6%), 서귀포시 읍면지역 59명(11.8%)이 표집됨
- 자녀수가 2명인 경우(55.8%)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3명(25.0%), 1명(14.8%) 순으로 나타남
- 맞벌이 하는 부부는 74.6%로 나타났으며, 소득은 400~499만원(25.0%)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300~399만원(24.4%), 200~299만원(16.4%) 순으로 나타남
- 지금 배우자와 거주하고 있는 부모는 91.2%로 나타남

나. 결혼생활 만족도

- 부부의 결혼생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는 <표 43>, <표 44>와 같음
- 부모들의 결혼생활 만족도는 대체로 만족하는 편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남편과 아내 중에 남성이 유의미하게 결혼생활 만족도가 높았음($t=3.04, p<.01$)

<표 43> 결혼생활 만족도

구분		매우 불만족하다 (1점)	불만족한 편이다 (2점)	만족하는 편이다 (3점)	매우 만족한다 (4점)	전체
남성	<i>n</i>	5	21	165	56	247
	%	2.0	8.5	66.8	22.7	100.0
여성	<i>n</i>	8	38	166	36	248
	%	3.2	15.3	66.9	14.5	100.0
전체	<i>n</i>	13	59	331	92	495
	%	2.6	11.9	66.9	18.6	100.0

<표 44> 성별에 따른 결혼생활 만족도 차이

구분	성별	평균	표준편차	<i>t</i>
결혼만족도	남성	3.10	.62	3.04**
	여성	2.93	.65	

** $p<.01$

다. 부모 양육 실태

1) 부모 양육태도

- 부모 양육태도는 총 6개의 요인(온정, 거부, 구조, 혼란, 자율성지지, 강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사결과는 <표 45>, <표 46>, <표 47>, <표 48>, <표 49>, <표 50>에 제시함

가) 온정적 양육태도

○ 부모의 온정적 양육태도를 살펴본 결과는 <표 45>와 같음

- ‘우리 아이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 고 응답한 부모는 78.2%로 나타남
- ‘벌어지는 일에 대해 우리 아이가 어떻게 느끼는지 잘 알고 있다’ 고 응답한 부모는 69.6%로 나타남
- ‘우리 아이와 특별한 것들을 한다’ 고 응답한 부모는 41.6%로 나타남
- ‘시간을 내서 우리아이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에 대해 대화를 나눈다’ 고 응답한 부모는 80.8%로 나타남
- ‘언제든지 우리 아이를 위한 시간을 낼 수 있다’ 고 응답한 부모는 68.0%로 나타남.

<표 45> 온정적 양육태도

온정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나는 우리 아이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	n	7	102	340	51	500
	%	1.4	20.4	68.0	10.2	100.0
나는 벌어지는 일에 대해 우리 아이가 어떻게 느끼는지 잘 알고 있다.	n	2	150	323	25	500
	%	.4	30.0	64.6	5.0	100.0
나는 우리 아이와 특별한 것들을 한다.	n	17	275	195	13	500
	%	3.4	55.0	39.0	2.6	100.0
나는 시간을 내서 우리아이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에 대해 대화를 나눈다.	n	3	93	356	48	500
	%	0.6	18.6	71.2	9.6	100.0
나는 언제든지 우리 아이를 위한 시간을 낼 수 있다.	n	3	157	292	48	500
	%	0.6	31.4	58.4	9.6	100.0

나) 거부적 양육태도

○ 부모의 거부적 양육태도를 살펴본 결과는 <표 46>과 같음

- ‘우리 아이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 고 응답한 부모는 25.7%로 나타남
- ‘종종 우리 아이를 좋아하기가 힘들다’ 고 응답한 부모는 14.4%로 나타남

- ‘이따금 우리 아이의 요구가 부담스럽다’ 고 응답한 부모는 27.6%로 나타남
- ‘우리 아이는 내가 줄 수 있는 이상의 시간을 필요로 한다’ 고 응답한 부모는 51.6%로 나타남
- ‘때때로 우리 아이가 나를 필요로 할 때 그곳에 함께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 고 응답한 부모는 37.0%로 나타남

〈표 46〉 거부적 양육태도

거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나는 우리 아이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	n	53	320	126	1	500
	%	10.6	64.0	25.2	0.2	100.0
나는 종종 우리 아이를 좋아하기가 힘들다.	n	144	284	71	1	500
	%	28.8	56.8	14.2	0.2	100.0
이따금 나는 우리 아이의 요구가 부담스럽다.	n	69	293	132	6	500
	%	13.8	58.6	26.4	1.2	100.0
우리 아이는 내가 줄 수 있는 이상의 시간을 필요로 한다.	n	22	220	242	16	500
	%	4.4	44.0	48.4	3.2	100.0
때때로 나는 ‘우리 아이가 나를 필요로 할 때 그곳에 함께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	n	50	265	179	6	500
	%	10.0	53.0	35.8	1.2	100.0

다) 구조적 양육태도

○ 부모의 구조적 양육태도를 살펴본 결과는 <표 47>과 같음

- ‘부모의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 지에 대해 아이에게 분명히 한다’ 고 응답한 부모는 73.8%로 나타남
- ‘우리 아이에게 내가 무엇을 기대하는지 분명히 한다’ 고 응답한 부모는 65.7%로 나타남

〈표 47〉 구조적 양육태도

구조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나는 부모의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 지에 대해 아이에게 분명히 한다.	n	10	121	340	29	500
	%	2.0	24.2	68.0	5.8	100.0
나는 우리 아이에게 내가 무엇을 기대하는지 분명히 한다.	n	12	159	298	31	500
	%	2.4	31.8	59.6	6.2	100.0

라) 혼란적 양육태도

○ 부모의 거부적 양육태도를 살펴본 결과는 〈표 48〉과 같음

- ‘내가 허락해서는 안 되는 것도 우리 아이가 하도록 내버려둔다’ 고 응답한 부모는 14.4%로 나타남
- ‘우리 아이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내 반응은 정말 종잡을 수 없다’ 고 응답한 부모는 19.2%로 나타남
- ‘우리 아이는 내가 무엇을 기대하는지 모르는 것 같다’ 고 응답한 부모는 25.8%로 나타남
- ‘집에서 규칙을 자주 바꾼다’ 고 응답한 부모는 10.2%로 나타남

〈표 48〉 혼란적 양육태도

혼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나는 내가 허락해서는 안 되는 것도 우리 아이가 하도록 내버려둔다.	n	75	353	69	3	500
	%	15.0	70.6	13.8	0.6	100.0
우리 아이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내 반응은 정말 종잡을 수 없다.	n	96	308	92	4	500
	%	19.2	61.6	18.4	0.8	100.0
우리 아이는 내가 무엇을 기대하는지 모르는 것 같다.	n	44	327	127	2	500
	%	8.8	65.4	25.4	0.4	100.0
나는 집에서 규칙을 자주 바꾼다.	n	96	353	47	4	500
	%	19.2	70.6	9.4	0.8	100.0

마) 자율성 지지 양육태도

○ 부모의 자율성 지지 양육태도를 살펴본 결과는 <표 49>와 같음

- ‘우리 아이의 감정을 듣기 힘들 때조차도, 아이에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도록 격려한다’ 고 응답한 부모는 67.8%로 나타남
- ‘우리 아이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때조차도, 아이에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도록 격려한다’ 고 응답한 부모는 73.0%로 나타남

<표 49> 자율성 지지적 양육태도

자율성 지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나는 우리 아이의 감정을 듣기 힘들 때조차도, 아이에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도록 격려한다	<i>n</i>	7	154	311	28	500
	%	1.4	30.8	62.2	5.6	100.0
나는 우리 아이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때조차도, 아이에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도록 격려한다	<i>n</i>	3	132	338	27	500
	%	0.6	26.4	67.6	5.4	100.0

바) 강제적 양육태도

○ 부모의 강제적 양육태도를 살펴본 결과는 <표 50>과 같음

- ‘우리 아이는 매번 나와 싸운다’ 고 응답한 부모는 13.4%로 나타남
- ‘우리 아이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내 반응은 정말 종잡을 수 없다’ 고 응답한 부모는 18.6%로 나타남
- ‘우리 아이가 많은 것을 스스로 결정하도록 내버려 둘 여유가 없다’ 고 응답한 부모는 17.6%로 나타남
- ‘때때로 아이에게 뭔가를 하도록 독촉해야 한다고 느낀다’ 고 응답한 부모는 45.0%로 나타남
- ‘우리 아이와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나 자신을 보곤 한다’ 고 응답한 부모는 39.8%로 나타남

〈표 50〉 강제적 양육태도

강제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우리 아이는 매번 나와 싸운다	<i>n</i>	100	333	63	4	500
	%	20.0	66.6	12.6	0.8	100.0
우리 아이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내 반응은 정말 종잡을 수 없다	<i>n</i>	90	317	91	2	500
	%	18.0	63.4	18.2	0.4	100.0
나는 우리 아이가 많은 것을 스스로 결정하도록 내버려 둘 여유가 없다	<i>n</i>	71	341	87	1	500
	%	14.2	68.2	17.4	0.2	100.0
나는 때때로 아이에게 뭔가를 하도록 독촉해야 한다고 느낀다	<i>n</i>	58	217	220	5	500
	%	11.6	43.4	44.0	1.0	100.0
나는 우리 아이와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나 자신을 보곤 한다	<i>n</i>	64	237	189	10	500
	%	12.8	47.4	37.8	2.0	100.0

2) 성별에 따른 부모양육 태도

○ 부모 성별에 따라 양육태도에서 차이를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표 51〉, 〈표 52〉, 〈표 53〉, 〈표 54〉, 〈표 55〉, 〈표 56〉, 〈표 57〉에 제시함

○ 온정적 양육태도에서 성별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 51〉과 같음

- 전반적으로 온정적 양육태도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비슷하게 나타났지만, ‘우리 아이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 에서만 어머니가 아버지 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남($t=-2.37, p<.05$)

〈표 51〉 온정적 양육태도 성별 차이

온정	성별	평균	표준편차	t
나는 우리 아이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	남성	2.81	0.60	-2.37*
	여성	2.93	0.57	
나는 벌어지는 일에 대해 우리 아이가 어떻게 느끼는지 잘 알고 있다.	남성	2.72	0.54	-0.90
	여성	2.76	0.56	
나는 우리 아이와 특별한 것들을 한다.	남성	2.40	0.64	-0.15
	여성	2.41	0.56	
나는 시간을 내서 우리아이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에 대해 대화를 나눈다.	남성	2.85	0.59	-1.89
	여성	2.94	0.50	
나는 언제든지 우리 아이를 위한 시간을 낼 수 있다.	남성	2.73	0.62	-1.52
	여성	2.81	0.61	

* $p<.05$

○ 거부적 양육태도에서 성별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 52〉와 같음

- ‘우리 아이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 에서 아버지가 어머니 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지만($t=2.37, p<.05$), ‘이따금 우리 아이의 요구가 부담스럽다’ 에서는 어머니가 아버지 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남($t=-2.13, p<.05$)

〈표 52〉 거부적 양육태도 성별 차이

거부	성별	평균	표준편차	t
나는 우리 아이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	남성	2.21	0.59	2.37*
	여성	2.09	0.57	
나는 종종 우리 아이를 좋아하기가 힘들다.	남성	1.85	0.60	-0.35
	여성	1.87	0.69	
이따금 나는 우리 아이의 요구가 부담스럽다.	남성	2.09	0.66	-2.13*
	여성	2.21	0.65	
우리 아이는 내가 줄 수 있는 이상의 시간을 필요로 한다.	남성	2.51	0.62	0.28
	여성	2.50	0.65	
때때로 나는 ‘우리 아이가 나를 필요로 할 때 그곳에 함께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	남성	2.33	0.65	1.58
	여성	2.24	0.66	

* $p<.05$

○ 구조적 양육태도에서 성별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 53>와 같으며, 성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음

<표 53> 구조적 양육태도 성별 차이

구조	성별	평균	표준 편차	t
나는 부모의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 지에 대해 아이에게 분명히 한다.	남성	2.79	0.59	0.47
	여성	2.76	0.56	
나는 우리 아이에게 내가 무엇을 기대하는지 분명히 한다.	남성	2.69	0.65	-0.14
	여성	2.70	0.59	

○ 혼란적 양육태도에서 성별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 45>와 같으며, 성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음

<표 54> 혼란적 양육태도 성별 차이

혼란	성별	평균	표준 편차	t
나는 내가 허락해서는 안 되는 것도 우리 아이가 하도록 내버려둔다.	남성	2.01	0.58	0.32
	여성	1.99	0.54	
우리 아이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내 반응은 정말 종잡을 수 없다.	남성	2.04	0.63	1.12
	여성	1.98	0.65	
우리 아이는 내가 무엇을 기대하는지 모르는 것 같다.	남성	2.20	0.58	0.86
	여성	2.15	0.57	
나는 집에서 규칙을 자주 바꾼다.	남성	1.90	0.55	-0.72
	여성	1.94	0.56	

○ 자율적 지지적 양육태도에서 성별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 55>와 같으며, 성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음

〈표 55〉 자율성 지지적 양육태도 성별 차이

자율성 지지	성별	평균	표준 편차	t
나는 우리 아이의 감정을 듣기 힘들 때조차도, 아이에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도록 격려한다.	남성	2.72	0.62	-0.15
	여성	2.72	0.54	
나는 우리 아이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때조차도, 아이에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도록 격려한다.	남성	2.77	0.55	-0.25
	여성	2.78	0.54	

○ 강제적 양육태도에서 성별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 56〉과 같음

- ‘때때로 아이에게 뭔가를 하도록 독촉해야 한다고 느낀다’ 에서만 어머니가 아버지 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남($t=-4.21, p<.001$)

〈표 56〉 강제적 양육태도 성별 차이

강제	성별	평균	표준 편차	t
우리 아이는 매번 나와 싸운다.	남성	1.92	0.60	-0.82
	여성	1.96	0.60	
우리 아이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내 반응은 정말 중잡을 수 없다.	남성	2.05	0.61	1.38
	여성	1.97	0.62	
나는 우리 아이가 많은 것을 스스로 결정하도록 내버려 둘 여유가 없다.	남성	2.02	0.56	-0.47
	여성	2.05	0.58	
나는 때때로 아이에게 뭔가를 하도록 독촉해야 한다고 느낀다.	남성	2.22	0.70	-4.21***
	여성	2.47	0.66	
나는 우리 아이와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나 자신을 보곤 한다.	남성	2.24	0.68	-1.45
	여성	2.34	0.73	

* $p<.05$, *** $p<.001$

○ 부모 양육태도의 하위요인별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 57〉에 나타냈으며, 온정적 양육태도에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음($t=-2.02, p<.05$)

〈표 57〉 부모 양육태도 하위요인별 성별 차이

부모양육 태도	성별	평균	표준 편차	t
온정	남성	2.70	0.41	-2.02*
	여성	2.77	0.36	
거부	남성	2.20	0.42	0.49
	여성	2.18	0.38	
구조	남성	2.74	0.54	0.18
	여성	2.73	0.46	
혼란	남성	2.04	0.40	0.62
	여성	2.01	0.39	
자율	남성	2.74	0.50	-0.24
	여성	2.75	0.45	
강제	남성	2.09	0.44	-1.71
	여성	2.16	0.45	

* $p < .05$

3) 훈육방법

- 자녀 양육과정에서 신체적 처벌이 필요한지 살펴본 결과는 〈표 58〉과 같음
 - 신체적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모는 34.0%로 나타났으며, 모르겠다고 응답한 부모는 11.6%로 나타남

〈표 58〉 자녀 양육과정에서 신체적 처벌이 필요성

구분		신체적 처벌이 필요하다	신체적 처벌이 불필요하다	모르겠다	전체	평균	표준 편차
신체적 처벌 필요성	n	170	272	58	500	1.78	0.64
	%	34.0	54.4	11.6	100.0		

- 양육과정에서 자녀 훈육방법을 살펴본 결과는 〈표 59〉와 같음
 - 부모들은 가장 많이 사용하는 훈육방법은 ‘칭찬과 보상 사용하기’이며, 다음으로 ‘말로 야단치기’로 나타났음
 - ‘신체적 처벌’은 4.0%의 부모가 사용하기 있었으며, 벌세우기는 6.8% 사용하고 있었음

- ‘말로 야단치기’ 는 59.0%, ‘장난감이나 게임기, 휴대폰 사용 제한하기’ 는 45.4%, ‘칭찬과 보상’ 은 69.2% 사용하고 있었음

〈표 59〉 자녀 훈육방법

훈육방법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1점)	별로 사용하지 않는다 (2점)	자주 사용한다 (3점)	매우 자주 사용한다 (4점)	전체	평균	표준 편차
신체적 처벌	n	316	164	20	0	500	1.41	0.57
	%	63.2	32.8	4.0	0.0	100.0		
벌 세우기	n	270	196	33	1	500	1.53	0.63
	%	54.0	39.2	6.6	0.2	100.0		
말로 야단치기	n	28	177	261	34	500	2.60	0.70
	%	5.6	35.4	52.2	6.8	100.0		
장난감이나 게임기, 휴대폰 사용 제한하기	n	60	213	204	23	500	2.38	0.75
	%	12.0	42.6	40.8	4.6	100.0		
칭찬과 보상 사용하기	n	18	136	283	63	500	2.78	0.70
	%	3.6	27.2	56.6	12.6	100.0		

4) 부모 성별에 따른 훈육방법

- 자녀 양육과정에서 부모 성별에 따른 신체적 처벌의 필요성을 조사한 결과는 〈표 60〉과 같음
 - 신체적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아버지는 33.6%, 어머니는 34.4%로 비슷하게 나타났음

〈표 60〉 성별에 따른 자녀 양육과정에서 신체적 처벌이 필요성 비교

구분		신체적 처벌이 필요하다	신체적 처벌이 불필요하다	모르겠다	전체
남성	n	84	134	32	250
	%	33.6	53.6	12.8	100.0
여성	n	86	138	26	250
	%	34.4	55.2	10.4	100.0
전체	n	170	272	58	500
	%	34.0	54.4	11.6%	100.0

- 부모 성별에 따른 훈육방법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 61>과 같음
 - 훈육방법에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음

<표 61> 성별에 따른 자녀 훈육방법 차이

훈육방법	성별	평균	표준 편차	t
신체적 처벌	남성	1.39	0.57	-0.63
	여성	1.42	0.56	
벌 세우기	남성	1.56	0.65	0.93
	여성	1.50	0.61	
발로 야단치기	남성	2.54	0.70	-1.86
	여성	2.66	0.69	
장난감이나 게임기, 휴대폰 사용 제한하기	남성	2.36	0.75	-0.71
	여성	2.40	0.76	
칭찬과 보상 사용하기	남성	2.77	0.70	-0.44
	여성	2.80	0.71	

다. 부모 아동학대 경험 및 인식

1) 아동학대를 한 경험

- 지난 1년 동안 아동학대 행위(신체학대, 정서학대, 방임, 성학대)를 한 적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는 다음 <표 62>, <표 63>, <표 64>, <표 65>와 같음
- <표 62>의 신체학대 경험 결과를 살펴보면, 회초리 이외의 물건으로 엉덩이 이외의 부분을 때리는 행위를 가장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남
 - 칼이나 흉기로 위협하는 행위(0.6%), 사정없이 마구 때리는 행위(6.0%),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리는 행위(9.8%)
 - 물건을 던지는 행위(7.4%), 회초리로 손바닥이나 엉덩이를 때리는 행위(13.2%), 손바닥으로 뺨, 얼굴, 머리를 때리는 행위(14.4%)
 - 세계 밀치는 행위(14.0%), 회초리 이외의 물건으로 엉덩이 이외의 부분을 때리는 행위(32.2%)

〈표 62〉 신체학대 경험

신체학대 행위		전혀 없다 (1점)	가끔 있다 (2점)	자주 있다 (3점)	전체
칼이나 흉기로 위협하는 행위	<i>n</i>	497	3	0	500
	%	99.4	0.6	0.0	100.0
사정없이 마구 때리는 행위	<i>n</i>	470	30	0	500
	%	94.0	6.0	0.0	100.0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리는 행위	<i>n</i>	451	47	2	500
	%	90.2	9.4	0.4	100.0
물건(재떨이, 책, 그릇, 의자 등)을 던지는 행위	<i>n</i>	463	37	.0	500
	%	92.6	7.4	0.0	100.0
회초리 이외의 물건(벨트, 막대기, 빗자루 등)으로 엉덩이 이외의 부분을 때리는 행위	<i>n</i>	434	63	3	500
	%	86.8	12.6	0.6	100.0
손바닥으로 뺨, 얼굴, 머리를 때리는 행위	<i>n</i>	428	72	0	500
	%	85.6	14.4	0.0	100.0
세계 밀치는 행위	<i>n</i>	430	67	3	500
	%	86.0	13.4	0.6	100.0
회초리로 손바닥이나 엉덩이를 때리는 행위	<i>n</i>	339	158	3	500
	%	67.8	31.6	0.6	100.0

- 〈표 63〉의 정서학대 경험 결과를 살펴보면, 정서적 학대 중 욕을 가장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심하게 야단쳐서 기를 완전히 꺾는 행위로 나타남
- 욕을 하는 행위(26.8%), 심하게 야단쳐서 기를 완전히 꺾는 행위(24.4%)
 - ‘학교 그만두고 일이나 해라! 돈이나 벌어오라!’ 라고 말하는 행위(9.8%)
 - ‘나가 죽어라’ 라고 말하는 행위(2.6%), 다락, 골방, 창고 등의 캄캄한 곳에 가두는 행위(2.0%)

〈표 63〉 정서학대 경험

정서학대 행위		전혀 없다 (1점)	가끔 있다 (2점)	자주 있다 (3점)	전체
다락, 골방, 창고 등의 캄캄한 곳에 가두는 행위	<i>n</i>	490	9	1	500
	%	98.0	1.8	0.2	100.0
“나가 죽어라”라고 말하는 행위	<i>n</i>	487	12	1	500
	%	97.4	2.4	0.2	100.0
욕(명칭한 것, 못된 것, 병신 같은 것 등)을 하는 행위	<i>n</i>	366	128	6	500
	%	73.2	25.6	1.2	100.0
“학교 그만두고 일이나 해라! 돈이나 벌어오라!”라고 말하는 행위	<i>n</i>	451	46	3	500
	%	90.2	9.2	0.6	100.0
심하게 야단쳐서 기를 완전히 꺾는 행위	<i>n</i>	378	117	5	500
	%	75.6	23.4	1.0	100.0

○ 〈표 64〉의 방임했던 경험 결과를 살펴보면, 어두워 질 때까지 혼자 집을 보게 하는 행위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식사 때가 되어도 밥을 챙겨주지 않는 행위로 나타남

- 몸이 아프다고 해도 그냥 내버려 두는 행위(5.6%), 남의 물건이나 돈을 훔쳐도 전혀 상관하지 않는 행위(1.2%), 식사 때가 되어도 밥을 챙겨주지 않는 행위(18.2%)
- 집에 늦게 들어와도 신경 쓰지 않는 행위(7.8%), 이유 없이 학교를 결석해도 아무 말도 안하는 행위(2.6%), 어떤 친구들과 무엇을 하며 놀든지 전혀 상관하지 않는 행위(8.8%)
-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놀아도 내버려 두는 행위(2.8%), 옷이 더러워져도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혀 주지 않는 행위(13.8%), 어두워질 때까지 혼자 집을 보게 하는 행위(21.8%)

〈표 64〉 방임 경험

방임 행위		전혀 없다 (1점)	가끔 있다 (2점)	자주 있다 (3점)	전체
몸이 아프다고 해도 그냥 내버려 두는 행위	<i>n</i>	472	28	0	500
	%	94.4	5.6	0.0	100.0
남의 물건이나 돈을 훔쳐도 전혀 상관하지 않는 행위	<i>n</i>	494	4	2	500
	%	98.8	0.8	0.4	100.0
식사 때가 되어도 밥을 챙겨주지 않는 행위	<i>n</i>	409	87	4	500
	%	81.8	17.4	0.8	100.0
집에 늦게 들어와도 신경 쓰지 않는 행위	<i>n</i>	461	39	0	500
	%	92.2	7.8	0.0	100.0
이유 없이 학교를 결석해도 아무 말도 안하는 행위	<i>n</i>	487	12	1	500
	%	97.4	2.4	0.2	100.0
어떤 친구들과 무엇을 하며 놀든지 전혀 상관하지 않는 행위	<i>n</i>	456	42	2	500
	%	91.2	8.4	0.4	100.0
위험한 물건(칼, 압정, 핀 등)을 가지고 놀아도 내버려 두는 행위	<i>n</i>	486	14	0	500
	%	97.2	2.8	0.0	100.0
옷이 더러워져도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혀 주지 않는 행위	<i>n</i>	431	66	3	500
	%	86.2	13.2	0.6	100.0
어두워질 때까지 혼자 집을 보게 하는 행위	<i>n</i>	391	105	4	500
	%	78.2	21.0	0.8	100.0

○ 〈표 65〉의 성학대 경험을 살펴보면, 소수의 부모가 성학대를 했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싫어하는데도 어른이 자기 몸을 만져 달라고 하는 행위(1.4%), 어른이 성기를 만지는 행위(2.0%), 성인이 발가벗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동영상나 책을 보여주는 행위(0.4%)
- 억지로 옷을 벗겨 몸을 보려고 하는 행위(1.0%), 싫다고 해도 몸을 만지는 행위(1.4%), 억지로 입을 맞추는 행위(4.2%)

<표 65> 성학대 경험

성학대 행위		전혀 없다 (1점)	가끔 있다 (2점)	자주 있다 (3점)	전체
싫어하는데도 어른이 자기 몸을 만져 달라고 하는 행위	<i>n</i>	493	6	1	500
	%	98.6	1.2	0.2	100.0
어른이 성기를 만지는 행위	<i>n</i>	490	8	2	500
	%	98.0	1.6	0.4	100.0
성인이 발가벗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비디오(동영상)나 책을 보여주는 행위	<i>n</i>	498	1	1	500
	%	99.6	0.2	0.2	100.0
억지로 옷을 벗겨 몸을 보려고 하는 행위	<i>n</i>	495	4	1	500
	%	99.0	0.8	0.2	100.0
싫다고 해도 몸을 만지는 행위	<i>n</i>	493	6	1	500
	%	98.6	1.2	0.2	100.0
억지로 입을 맞추는 행위	<i>n</i>	479	18	3	500
	%	95.8	3.6	0.6	100.0

2) 성별에 따른 아동학대를 한 경험

○ <표 66>은 학대유형별로 문항의 총점을 구하고, 성별(부, 모)에서 학대행위 차이를 살펴봄

-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

<표 66> 성별에 따른 학대유형 차이

학대유형	성별	평균	표준 편차	<i>t</i>
신체학대	남성	9.02	1.64	0.30
	여성	8.98	1.63	
정서학대	남성	5.67	1.07	-0.33
	여성	5.70	1.07	
방임	남성	9.88	1.63	0.26
	여성	9.84	1.47	
성학대	남성	6.10	0.44	-0.81
	여성	6.15	0.92	
학대 전체	남성	30.66	3.75	-0.01
	여성	30.67	4.01	

3) 부모 아동학대 인식

○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조사한 결과는 <표 27>에 제시함

- ‘매우 심각하다’ 와 ‘심각한 편이다’ 라고 응답한 경우는 84.2%, ‘심각하지 않은 편이다’ 라고 응답한 경우는 15.8%로 나타남
- 아버지(10.4%)가 어머니(5.4%)보다 높게 ‘심각하지 않은 편이다’ 라고 응답함

<표 67> 아동학대 심각성

구분	남성		여성		전체	
	n	%	n	%	n	%
전혀 심각하지 않다	0	0.0	0	0.0	0	0.0
심각하지 않은 편이다	52	10.4	27	5.4	79	15.8
심각한 편이다	152	30.4	141	28.2	293	58.6
매우 심각하다	46	9.2	82	16.4	128	25.6
전체	250	50.0	250	50.0	500	100.0

○ 아동학대를 하는 장면을 보고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는 <표 58>에 제시함

- 양육은 부모의 권한이므로 간섭할 수 없어서(68.2%), 개입할 정도로 심하지 않았거나 그 증거가 확실치 않아서(51.4%), 부모나 아동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칠까 두려워서(30.2%), 신고자의 신변 노출 위험으로 신고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서(28.2%) 순으로 나타남

〈표 68〉 아동학대 보호조치 하지 않는 이유(다중응답)

이유	남성		여성		전체	
	n	%	n	%	n	%
개입할 정도로 심하지 않았거나 그 증거가 확실치 않아서	134	26.8	123	24.6	257	51.4
양육은 부모의 권한이므로 간섭할 수 없어서	183	36.6	158	31.6	341	68.2
신고자의 신변 노출 위험으로 신고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66	13.2	75	15.0	141	28.2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알지 못해서	27	5.4	33	6.6	60	12.0
신고 절차를 잘 몰라서	20	4.0	26	5.2	46	9.2
부모나 아동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칠까 두려워서	70	14.0	81	16.2	151	30.2
기타	0	0.0	4	0.8	4	0.8
전체	250	50.0	250	50.0	500	100.0

○ 아동학대 신고제도의 필요성을 조사한 결과는 〈표 69〉에 제시하였으며, 대부분의 부모가 ‘필요하다’ (94.8%)고 응답함

〈표 69〉 아동학대 신고제도의 필요성

구분	남성		여성		전체	
	n	%	n	%	n	%
필요하다	235	47.0	239	47.8	474	94.8
필요하지 않다	2	0.4	4	0.8	6	1.2
모르겠다	13	2.6	7	1.4	20	4.0
전체	250	50.0	250	50.0	500	100.0

○ 학대받는 아동을 도와줄 수 있는 기관을 알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는 〈표 70〉에 제시하였으며, 65.6%의 부모들이 ‘모른다’ 고 응답함

〈표 70〉 학대받은 아동에게 도움을 줄 기관 인지

구분	남성		여성		전체	
	n	%	n	%	n	%
알고 있다	78	15.6	94	18.8	172	34.4
모른다	172	34.4	156	31.2	328	65.6
전체	250	50.0	250	50.0	500	100.0

○ 아동학대가 초기에 발견되지 못하고 은폐되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는 〈표 71〉에 제시하였으며, 다양한 학대행위를 아동학대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사회인식 때문(60.6%), 아동학대를 가족문제로 취급하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57.6%)가 높게 나타남

〈표 71〉 아동학대 보호조치 하지 않는 이유(다중응답)

구분	남성		여성		전체	
	n	%	n	%	n	%
다양한 학대행위를 아동학대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사회인식 때문	162	32.4	141	28.2	303	60.6
학대받은 아동이 은폐하기 때문에	56	11.2	60	12.0	116	23.2
아동의 가족이 은폐하기 때문에	93	18.6	130	26.0	223	44.6
아동학대를 가족문제로 취급하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153	30.6	135	27.0	288	57.6
아동학대 관련 서비스가 부족하기 때문에	36	7.2	34	6.8	70	14.0
전체	250	50.0	250	50.0	500	100.0

○ 아동학대 예방교육에 참여한 적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는 〈표 72〉에 제시하였으며, 많은 부모들이 참여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84.2%)

〈표 72〉 아동학대 예방교육 참여 여부

구분	남성		여성		전체	
	<i>n</i>	%	<i>n</i>	%	<i>n</i>	%
예	25	5.0	54	10.8	79	15.8
아니오	225	45.0	196	39.2	421	84.2
전체	250	50.0	250	50.0	500	100.0

4. 부모와 아동의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인식 비교

가. 신체학대 행위에 대한 인식 비교

○ 신체학대 행위에서 부모와 아동의 인식 차이를 살펴보면 〈표 73〉과 같음. 전반적으로 아동이 부모보다 신체적 학대 행위에 인식 수준이 조금 낮게 나타났으며, 아동과 부모 모두 심각한 신체적 학대 행위는 학대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으나, 가벼운 수준의 신체적 학대 행위는 학대로 인식하는 비율이 낮게 나타남

- ‘회초리 이외의 물건으로 엉덩이 이외의 부분을 때리는 행위’에서는 부모(54.4%)가 아동(68.7%)보다 학대로 인식하는 비율이 낮음

〈표 73〉 신체학대 행위에 대한 인식 차이

신체학대 행위	집단		학대가 아니다 (1점)	학대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2점)	학대다 (3점)	전체
	부모	아동				
칼이나 흉기로 위협하는 행위	부모	n %	2 0.4	5 1.0	493 98.6	500 100.0
	아동	n %	32 5.2	26 4.2	562 90.6	620 100.0
사정없이 마구 때리는 행위	부모	n %	4 0.8	13 2.6	483 96.6	500 100.0
	아동	n %	30 4.8	30 4.8	560 90.3	620 100.0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리는 행위	부모	n %	12 2.4	20 4.0	468 93.6	500 100.0
	아동	n %	30 4.8	38 6.1	552 89.0	620 100.0
물건(재떨이, 책, 그릇, 의자 등) 을 던지는 행위	부모	n %	15 3.0	24 4.8	461 92.2	500 100.0
	아동	n %	37 6.0	60 9.7	523 84.4	620 100.0
회초리 이외의 물건(벨트, 막대 기, 빗자루 등)으로 엉덩이 이 외의 부분을 때리는 행위	부모	n %	29 5.8	46 9.2	425 85.0	500 100.0
	아동	n %	43 6.9	91 14.7	486 78.4	620 100.0
손바닥으로 뺨, 얼굴, 머리를 때리는 행위	부모	n %	21 4.2	44 8.8	435 87.0	500 100.0
	아동	n %	35 5.6	74 11.9	511 82.4	620 100.0
세계 밀치는 행위	부모	n %	42 8.4	77 15.4	381 76.2	500 100.0
	아동	n %	47 7.6	130 21.0	443 71.5	620 100.0
회초리로 손바닥이나 엉덩이를 때리는 행위	부모	n %	117 23.4	111 22.2	272 54.4	500 100.0
	아동	n %	70 11.3	124 20.0	426 68.7	620 100.0%

나. 정서학대 행위에 대한 인식 비교

○ 정서학대 행위에서 부모와 아동의 인식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 74〉와 같음. 전
반적으로 아동이 부모보다 정서학대 행위에 인식 수준이 낮게 나타남

- 아동인 경우 ‘심하게 야단쳐서 기를 완전히 꺾는 행위’ 에서 가장 낮은 학대인식

을 보였으며(68.6%), 부모인 경우는 욕을 하는 행위(78.4%)가 가장 낮은 학대인식을 보임

<표 74> 정서학대 행위에 대한 인식 차이

정서학대 행위	집단		학대가 아니다 (1점)	학대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2점)	학대다 (3점)	전체
		n				
다락, 골방, 창고 등의 캄캄한 곳에 가두는 행위	부모	n	4	24	472	500
		%	0.8	4.8	94.4	100.0
	아동	n	33	36	550	619
		%	5.3	5.8	88.9	100.0
“나가 죽어라“라고 말하는 행위	부모	n	5	23	472	500
		%	1.0	4.6	94.4	100.0
	아동	n	36	49	535	620
		%	5.8	7.9	86.3	100.0
욕(명칭한 것, 못된 것, 병신 같은 것 등)을 하는 행위	부모	n	36	72	392	500
		%	7.2	14.4	78.4	100.0
	아동	n	44	98	480	622
		%	7.1	15.8	77.2	100.0
“학교 그만두고 일이나 해라! 돈이나 벌어오라!“ 라고 말하 는 행위	부모	n	33	55	412	500
		%	6.6	11.0	82.4	100.0
	아동	n	47	110	465	622
		%	7.6	17.7	74.8	100.0
심하게 야단쳐서 기를 완전히 격는 행위	부모	n	19	86	395	500
		%	3.8	17.2	79.0	100.0
	아동	n	49	146	427	622
		%	7.9	23.5	68.6	100.0

다. 방임 행위에 대한 인식 비교

○ 방임 행위에서 부모와 아동의 인식 차이를 <표 75>에 제시하였으며, 아동이 부모보다 방임 행위에 대한 학대인식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부모와 아동 모두에서 학대인식이 낮은 행위는 ‘어두워질 때까지 혼자 집을 보게 하는 행위’ 와 ‘옷이 더러워져도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혀 주지 않는 행위’ 로 나타남
- 부모와 아동 간에 학대인식 차이가 큰 행위는 ‘이유 없이 학교를 결석해도 아무 말도 안하는 행위’, ‘어떤 친구들과 무엇을 하며 놀든지 전혀 상관하지 않는 행

위’, ‘집에 늦게 들어와도 신경 쓰지 않는 행위’ 로 나타남

<표 75> 방임 행위에 대한 인식 차이

방임 행위	집단		학대가 아니다 (1점)	학대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2점)	학대다 (3점)	전체
	부모	아동	n %	n %	n %	
몸이 아프다고 해도 그냥 내버려 두는 행위	부모		22 4.4	39 7.8%	439 87.8	500 100.0
	아동		41 6.6	92 14.8%	489 78.6	622 100.0
남의 물건이나 돈을 훔쳐도 전혀 상관하지 않는 행위	부모		16 3.2	60 12.0	424 84.8	500 100.0
	아동		54 8.7	176 28.3	392 63.0	622 100.0
식사 때가 되어도 밥을 챙겨주지 않는 행위	부모		54 10.8	87 17.4	359 71.8	500 100.0
	아동		61 9.8	163 26.2	397 63.9	621 100.0
집에 늦게 들어와도 신경 쓰지 않는 행위	부모		40 8.0	106 21.2	354 70.8	500 100.0
	아동		73 11.7	244 39.2	305 49.0	622 100.0
이유 없이 학교를 결석해도 아무 말도 안하는 행위	부모		21 4.2	87 17.4	392 78.4	500 100.0
	아동		57 9.2	233 37.5	331 53.3	621 100.0
어떤 친구들과 무엇을 하며 놀든지 전혀 상관하지 않는 행위	부모		32 6.4	112 22.4	356 71.2	500 100.0
	아동		76 12.2	247 39.8	298 48.0	621 100.0
위험한 물건(칼, 압정, 핀 등)을 가지고 놀아도 내버려 두는 행위	부모		17 3.4	74 14.8	409 81.8	500 100.0
	아동		50 8.1	186 30.0	385 62.0	621 100.0
옷이 더러워져도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혀 주지 않는 행위	부모		77 15.4	112 22.4	311 62.2	500 100.0
	아동		65 10.5	195 31.4	361 58.1	621 100.0
어두워질 때까지 혼자 집을 보게 하는 행위	부모		65 13.0	126 25.2	309 61.8	500 100.0
	아동		101 16.3	189 30.5	330 53.2	620 100.0

라. 성학대 행위에 대한 인식 비교

- 성학대 행위에서 부모와 아동의 인식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 76>과 같으며, 성학대 행위에 대한 학대 인식은 부모가 아동보다 높게 나타남
- 성학대 행위 중에 ‘억지로 입을 맞추는 행위는 부모(93.0%)와 아동(89.1%) 모두에서 가장 낮은 학대인식을 보였음

<표 76> 성학대 행위에 대한 인식 차이

성학대 행위	집단		학대가 아니다 (1점)	학대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2점)	학대다 (3점)	전체
	부모	아동				
싫어하는데도 어른이 자기 몸을 만져 달라고 하는 행위	부모	<i>n</i> %	5 1.0	15 3.0	480 96.0	500 100.0
	아동	<i>n</i> %	28 4.5	30 4.8	564 90.7	622 100.0
어른이 성기를 만지는 행위	부모	<i>n</i> %	3 0.6	14 2.8	483 96.6	500 100.0
	아동	<i>n</i> %	27 4.3	21 3.4	573 92.3	621 100.0
성인이 발가벗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비디오(동영상)나 책을 보여주는 행위	부모	<i>n</i> %	2 0.4	11 2.2	487 97.4	500 100.0
	아동	<i>n</i> %	29 4.7	31 5.0	560 90.3	620 100.0
억지로 옷을 벗겨 몸을 보려고 하는 행위	부모	<i>n</i> %	2 0.4	9 1.8	489 97.8	500 100.0
	아동	<i>n</i> %	26 4.2	20 3.2	576 92.6	622 100.0
싫다고 해도 몸을 만지는 행위	부모	<i>n</i> %	2 0.4	11 2.2	487 97.4	500 100.0
	아동	<i>n</i> %	26 4.2	21 3.4	575 92.4	622 100.0
억지로 입을 맞추는 행위	부모	<i>n</i> %	5 1.0	30 6.0	465 93.0	500 100.0
	아동	<i>n</i> %	29 4.7	39 6.3	554 89.1	622 100.0

- <표 77>은 부모와 아동의 학대유형별로 학대 인식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학대행위 문항의 총점을 구하고 부모와 아동의 전체 학대인식에서 차이를 살펴본 결과로서 부모가 아동보다 학대 인식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남($t=4.93, p<.001$)
- 신체학대 인식에서는 부모와 아동이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정서학대 ($t=3.86, p<.001$), 방임($t=6.26, p<.001$), 성학대($t=4.63, p<.001$)에서 부모가 아동보다 유의미하게 학대인식이 높게 나타남

<표 77> 신체학대 행위에 대한 인식 차이

학대유형	집단	평균	표준 편차	t
신체학대	부모	22.35	2.42	1.71
	아동	22.04	3.74	
정서학대	부모	14.09	1.68	3.86***
	아동	13.62	2.41	
방임	부모	24.02	3.97	6.26***
	아동	22.37	4.81	
성학대	부모	17.74	1.01	4.63***
	아동	17.22	2.57	
학대 전체	부모	78.21	7.48	4.93***
	아동	75.26	12.27	

*** $p<.001$

5. 소결

가. 초등학교 아동학대 실태 및 인식

1)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양육태도와 훈육방법

-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들은 대체적으로 애정과 관심을 갖고 양육하고 있다고 생각함. 가끔 같은 일에 대해서 화를 낼 때도 있고 안낼 때도 있지만, 기분 내키는 대로 대하진 않음. 하지만 소수의 부모들은 잘못하면 신체적 체벌을 훈육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학생에게 관심이 없는 부모들도 소수 나타남
- 높은 편은 아니지만 조사대상의 21.3% 부모들은 모든 면에서 자녀가 남보다 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46.4%의 부모들은 자녀의 능력 이상으로 높은 기대를 갖고 있어

서 자녀가 부담을 느끼며, 부모의 25.0%~28.1%는 자녀에게 과잉간섭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과잉기대와 과잉간섭은 자녀의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향후 부모교육 내용으로 과잉기대와 과잉간섭의 문제점을 다룰 필요가 있음.

- 부모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훈육방법은 ‘말로 야단치기’이며, 다음으로 ‘장남감이나 게임기, 휴대폰 사용 제한하기’, ‘선물, 말로 칭찬하기, 칭찬스티커 주기 등’, ‘벌 세우기’, ‘신체적 처벌’ 순으로 나타났으며, 신체적 처벌은 5%, 벌 세우기는 9.5%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서적 학대가 가정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2) 학대 받은 경험

- 신체학대는 전반적으로 낮게 경험하고 있으나, 눈여겨 볼 부분은 심각한 신체학대에 비해 가벼운 신체적 학대는 아동이 더 많이 경험하고 있다는 것임. 또한 신체적 방임과 정서방임 경험은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지만, 부모님이 술을 많이 마시는 문제로 인한 방임과 어두워질 때까지 혼자 집을 보게 하는 행위는 다른 방임 행위보다 더 많이 경험하고 있었음. 그리고 신체적인 학대나 신체적 방임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남
- ‘내가 듣기 싫은 별명으로 부르곤 했다’ 문항을 제외한 모든 정서학대 문항에서 ‘전혀 없음’ 이나 ‘드물게 있음’ 으로 반응하고 있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 아동들이 정서학대를 적게 경험하는 것을 알 수 있음. 그리고 직접적으로 정서적 학대를 당한 적이 있는지 묻는 문항에서는 ‘전혀 없음’ 이 92%로 나타났지만, 다른 정서학대 문항에서는 ‘전혀 없음’ 이 39.4%~86.1%까지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면, 아동들이 정서학대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을 보임. 또한 부모들은 자녀훈육에 있어서 정서적 학대인 욕을 사용하거나 심하게 언어적 야단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부모교육에서 이 부분을 강화하여 다룰 필요가 제기됨
- 성학대 경험은 소수의 학생이 경험했던 것으로 나타남.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한 인식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음

3) 아동학대 인식

- 학대받는 아동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을 알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40.0%의 아동들은 ‘모른다’고 응답하였으며, 60.0%의 아동들이 아동학대 신고전화를 ‘모른다’고 응답함
- 생활하면서 고민이 있거나 어려움이 생기면, 주로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지 조사한 결과, 주로 부모님(84.1%), 다음으로 친구나 선·후배(46.3%), 학교 선생님(30.7%)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으로 나타남
- 자신에게 아동학대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하겠는지 조사한 결과, 아동들은 부모님(47.6%), 다음으로 경찰서(39.1%), 아동보호전문기관(38.2%), 선생님(24.1%) 순으로 도움을 요청함. 그리고 그냥 가만히 참는 아동도 4.5%로 나타났으며, 참는 이유로는 이길 힘이 없어서(32.1%), 가족이기 때문에(28.6%), 무서워서(25.0%), 대응하면 폭력이 심해지므로(21.4%) 순으로 나타남
- 친구에게 아동학대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하겠는지 조사한 결과, 선생님(45.3%)에, 다음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42.5%), 경찰서(42.4%), 부모(28.9%) 순으로 알리는 것으로 나타남.
- 앞서 살펴본 결과는 아동의 학대인식이 낮음을 알 수 있으며, 아동대상 아동학대 인식개선 교육이 시급히 필요한 사항임을 나타낸 결과임

나. 부모의 아동학대 실태 및 인식

1) 부모 양육태도와 훈육방법

- 전반적으로 부모들은 거부적이지 않고 온정적 양육태도 가지고 있으며, 부모의 규칙과 기대를 분명하고 양육에 있어서 일관된 태도를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음. 또한 자녀의 자율성을 지지하고 강제적으로 자녀를 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비교한 결과, 대체로 부모 간에 양육태도가 비슷하나 온정적 양육태도 어머니가 아버지 보다 높게 나타남
- 자녀 양육과정에서 신체적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모는 34.0%, 모르겠다는 11.6%, 불필요하다는 54.4%로 나타나, 자녀양육에서 체벌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

함을 알 수 있음

- 양육과정에서 자녀 훈육방법을 살펴본 결과는 훈육방법에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차이가 없었으며, 부모들은 가장 많이 사용하는 훈육방법은 칭찬과 보상 사용하기(69.2%), 다음으로 말로 야단치기(59.0%), 장난감이나 게임기, 휴대폰 사용 제한하기(45.4%)로 나타났지만, 소수이지만 아직도 부모들은 신체적 처벌(4.0%)과 벌 세우기(6.8%)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 아동학대를 한 경험

- 부모들의 아동학대를 한 경험을 조사한 결과, 아버지와 어머니는 학대를 한 경험에서 차이가 없었으며, 가벼운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인 욕과 심하게 야단치는 행위가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어두워 질 때까지 혼자 집을 보게 하는 행위와 식사 때가 되어도 밥을 챙겨주지 않는 방임 행위도 나타남. 그리고 성학대 측면도 부모가 성학대 인식이 없어서 했던 경험이 소수 나타남

3) 부모 아동학대 인식

- 대부분의 부모들은 아동학대가 심각하다고 인식(84.2%)하고 아동학대 신고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음(94.8%). 하지만 대부분의 부모들이 학대받는 아동을 도와 줄 수 있는 기관을 알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는 많은 부모들이 모르고 있는 것(65.6%)으로 나타나 부모의 인식 개선 교육이 시급히 필요함
- 아동학대를 하는 장면을 보고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유로는 양육은 부모의 권한이므로 간섭할 수 없어서(68.2%), 개입할 정도로 심하지 않았거나 그 증거가 확실치 않아서(51.4%), 부모나 아동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칠까 두려워서(30.2%), 신고자의 신변 노출 위험으로 신고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서(28.2%) 순으로 나타남. 아직도 사회인식 개선이 안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또한 아동학대가 초기에 발견되지 못하고 은폐되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 다양한 학대행위를 아동학대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사회인식(60.6%), 아동학대를 가족문제로 취급하는 사회적 분위기(57.6%)가 높게 나타남

다. 부모와 아동의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인식 비교

- 전반적으로 아동이 부모보다 신체적 학대 행위에 대한 인식 수준이 조금 낮게 나타남. 또한 아동과 부모 모두 심각한 신체적 학대 행위는 학대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으나, 가벼운 수준의 신체적 학대 행위는 학대로 인식하는 비율이 낮게 나타남
- 정서학대 행위에 인식 수준에서 전반적으로 아동이 부모보다 낮게 나타남. 아동인 경우 ‘심하게 야단쳐서 기를 완전히 꺾는 행위’ 에서 가장 낮은 학대인식(68.6%), 부모인 경우는 욕을 하는 행위(78.4%)가 가장 낮은 학대인식을 보임
- 방임 행위에 대한 인식 수준은 아동이 부모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성학대 행위에 대한 학대 인식은 부모와 아동이 모두 높게 나타났지만 상대적으로 부모가 아동보다 조금 높게 나타남
- 이상의 결과들은 아동과 부모 모두 아동학대 예방 및 인식개선 교육이 시급히 필요하지만 특히, 아동대상으로 교육이 더 급함을 알 수 있음

제주지역 아동학대 예방대책 심층면접 분석 결과

1. 조사 개요
2. 면접조사 분석 결과
3. 소결

1. 조사개요

가. 심층면접 목적

- 심층면접 조사는 현장에서 느끼고 경험하는 아동학대의 어려움과 아동학대 예방대책 및 정책 방향을 찾기 목적으로 실시함

나. 심층면접 대상

- 아동보호, 아동학대 예방 및 치료 관련 현장에서 활동을 하는 아동학대 관련 전문가 10명의 및 인터뷰 진행하였으며, 대상의 특성은 다음 <표 78>에 제시함

<표 78> 심층면접 대상자의 특성

구분	연령	경력	직위
사례1	50대	17년	소장
사례2	30대	6년	팀장
사례3	50대	14년	소장
사례4	40대	15년	소장
사례5	30대	14년	경찰(경사)
사례6	30대	16년	교사
사례7	40대	20년	부소장
사례8	50대	34년	교장
사례9	70대	40년	이사장
사례10	60대	35년	소장

다. 심층면접 내용

- 심층면접 내용은 <표 79>에 제시하였으며, 아동학대 심각성과 인식, 예방대책, 제안점을 중심으로 심층면접이 이루어짐

<표 79> 심층면접 내용

영역	주요 내용
아동학대 심각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지역 아동학대 원인과 심각성에 대한 생각 • 제주지역 아동학대가 높아지는 이유
아동학대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이나 학생의 아동학대 인식 • 성인들의 아동학대 인식 • 훈육과 학대에 대한 인식
아동학대 예방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에서 느끼는 아동학대 예방의 어려움과 보완점 • 현 아동학대 예방 정책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 평소에 생각하는 아동학대 예방대책이나 정책
제안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나 소속된 기관에 제안하고 싶은 점이나 제도 개선 방안

라. 심층면접 기간과 방법

- 심층면접은 2017년 7월 14일부터 2017년 8월 22일까지 이루어짐
- 심층면접은 모두 연구책임자가 아동보호, 아동학대 예방이나 치료 활동을 하는 관계기관에 방문하여 진행하였으며, 면접 소요 시간은 약 2시간에 걸쳐 이루어짐
- 면접은 사전에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준비하여 질문하는 형식으로 하되, 조사목적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구술하는 방식으로 진행함
- 면접 내용 분석은 녹취록을 반복하여 읽고 주요 주제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주요 주제 중에 현 아동학대 예방대책의 보완점과 예방대책 측면에 보다 강조점을 두면서 분류하고 분석하는 방법으로 진행함

2. 면접조사 분석 결과

가. 아동학대 원인

1) 잘못된 훈육방법과 역기능적 부모양육 태도

- 아동학대 관련 전문가들은 자녀양육 방법을 잘 모르고 자신의 양육 받아온 방법으로 자녀를 양육하므로써 학대가 대물림 되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과거에 용인되던 잘못된 훈육방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봄

옛날 어른들은 그래도 부모님들이 키우는 방식으로 키우면 됐는데 그 다음 세대는 본인들이 자라온 방식으로 키우면 안 되는 세대거든요. 너무 급변하고 가치관도 혼란스럽고 사회적으로도 너무 많은 것들을 요구하니깐 부모도 혼란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아동을 양육하는 방법을 몰라서 더 많이 일어나는 거 같은데요. 정서적인 학대 부분에서 더 많이 일어나면 일어나지 줄어들지는 않았어요.(사례 4)

제가 오랫동안 고민하고 걱정하는 부분들이지만 학대의 대물림이 이어진다는 것.(...)나도 모르게 내 아이들한테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학대인지도 모르고 학대를 하고 있고 (...)아이는 내가 만들어내는 조형물이 아니거든요. 정신 불건강이 계속 전수되는 거죠. 그 아이들이 또 악순환을 겪게 되고 또 악순환을 겪게 되고.(사례 10).

내 아이인데 왜 못 때리냐. 이게 아동학대냐. 애들한테도 그러더라고요. ‘그래, 너 신고해라. 엄마 잡아가서 교도소에 가면 너 혼자 살아야 돼.’ 이런 식으로 하시더라고요.(사례 5)

훈육이라는 이름하에 아이들을 학대하는 부모들도 있겠죠. 그거는 교육만이 인식 개선만이(사례 8)

2) 부모의 이혼

- 제주도는 이혼율이 전국에서 높은 현실에서 아동들이 부모의 이혼문제로 인한 가정 폭력이나 방임, 정서적 학대 등을 경험함으로써 학대당하고 있음. 또한 이혼 후에도 방임이나 정서적 학대 등을 경험하기 때문에 이러한 위기 가정에 찾아가는 아동 학대 예방 교육이 필요함을 지적함

1위 아니면 그러면 이혼을 사유가 사유 중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가정 폭력이잖아요. 가족이 가정으로서의 울타리 역할을 기능을 다하지 못한 다면 아이들이 그 자리에 계속 가정에 머물러있기보다는 밖에 나와 있는 시간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러다보면 자연스럽게 폭력이라거나 술이라든가 약물에 노출될 수 있는 그런 기회나 상황이 더 많이 상황에 맞닥트리다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단화되어있는 그런 폭력에 많이 노출 되어있는 그런 것들에 참 많이 영향을 끼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례 7)

이혼만큼 아동학대가 큰 게 없죠. 본인들이 아무 생각 없이 엄마, 아빠가 따로 살고 누구랑 살 것인지 선택해야하고.(사례 3)

3) 부모의 정신건강 문제

- 부모들의 정신건강 문제를 원인으로 보고 있는데, 부모의 스트레스 관리하지 못하거나, 술을 많이 마시는 문제가 아동학대를 일으킬 수 있음을 제시함. 따라서 지역의 술병에 아동학대 예방 광고를 협의하는 것도 예방방법으로 생각해 볼 여지가 있음

가장 기본적인 건 부모들, 성인 개개인의 정신 건강 문제죠. 생활이 힘들면 사람은 저를 포함한 모두도 그 스트레스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면 주변에 있는 약자에게 넘어가거든요. (사례 10)

굉장히 정상적인 가정이에요. 그렇다고 집이 굉장히 불우하거나 문제

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평범한 가정인데 아버지가 그런 지도를 함에 있어가지고 자기가 기분이 나쁘면 그런 행동이 가끔 보인다는 겁니다(사례 6)

사실 알콜과 연관이 많다고 봐요. 술 소비량과 가폭, 이혼율은 연관되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평소에 멀쩡하던 사람이 술만 먹으면 180도 바뀌거든요(사례 5)

4) 아동의 문제

- 아동의 비행이나 아동의 문제 행동으로 인한 부모의 훈육차원의 아동학대도 현장에 있는 전문가들은 종종 경험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부모를 위한 양육태도 교육 및 심리치료를 제공하고 있었음

아동요인이 심한 경우라도 판단을 내리고 몇 개월을 모니터링 하다 보면 부모를 위로해주는 역할도 하거든요. 애들 키우면서 힘든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지를 해주거든요.(...)학대뿐만 아니라 양육에 대해서도 서비스 지원을 하는 거죠. 양육 스트레스가 심한 엄마들은 심리 치료를 연계하고 행위자들도 심리 치료를 연계하고(...)(사례 2)

5) 부모의 장애로 인한 문제

- 부모가 정신지체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가정은 부모가 방임이라는 생각 없이 방임하며, 자녀가 외부에서 학대를 당해도 그 부분에 대한 인지가 부족하여 알아차리지 못함. 따라서 학대에 노출되거나 방임된 아동은 자연스럽게 정신적·신체적 문제를 경험하게 됨

중요한 건 초·중·고등학교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 친구들이 집에 와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보호 체계가 안 되다보니깐 방임이 되고 무슨 일을 하는지 부모들은 모르는 거죠. 관심도 별로 없고.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사건 지원할 때 보면 어린 친구가 임신하고 발견되기도 하고. 분

명히 성폭력인데 부모들은 모르는 경우와 본인들도 인지가 안 되고. 그래서 의도적이 아닌 장애로 인한 방임이 생각보다 많은 사건을 발생시키는 원인적인 경우가 되지 않나 싶어요.(사례 3)

본인이 방임이라는 생각하는 방임은 죄가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본인이 자기가 방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면 지적장애인 분들이 결혼을 하셔서 아이를 낳으면 방임인거 예요.(...)이 방임을 제도적으로 지원이 되지 않으면 향후 장애가정에서 큰 아동은 자연스럽게도 장애가 되는 거예요. 비장애 아동도 방임해놓으면 학생부 진아처럼 장애가 나중에 발생하잖아요. 부모가 장애이기 때문에 방임을 하다 보니깐 장애가 되고 이 학대로 인해서 향후 나중에 다른 부모가 생각하지 않는 부분까지도 많은 피해가 속출하기도 하죠. 우리 사무실 같은 경우도 방임을 하다보니깐 성폭력도 발생하고. 방임이 가정폭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부모는 방임을 폭력이라고 아직 인지하지 못해요.(사례 3)

6) 사회 문화적 요인

- 사회 문화적 요인으로 맞벌이 문제로 인해 자연스럽게 방임되거나 아동에게 정서적 학대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이야기 되었으며, 제주도 지역 말투가 투박하여 말투에서 오는 정서적 학대 부분을 지적, 또한 옛날 부모들의 폭력에 대한 허용도가 높은 부분에서 오는 사회문화적 학대 부분이 언급됨

사회가 맞벌이니 워니 일자리 바쁘고 하다보니깐 책임지지 못하는 부분들, 부모로서 책임지는 부분들을 담임선생님들, 학교 교사들한테 사각지대까지 가서 확인을 해라, 돌봐라. 물론 취지는 이해되고 관찮은데(...)
(사례 6)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말투가 직설적이고 목소리가 크고 투박한 것들에 대한 문화적인 영향이 있는데. 그것들을 보면 다 학대야. (...) 보통 제주에서 얘기하는 것이 서울 수준에서 볼 때는 싸움의 수준인

데.(사례 1)

폭력에 대한 허용도가 더 높으세요. “이건 뭐가 폭력이라게. 장이 부에 나니깐 한 거주.”, “자이 술 취해부난 경 해연.”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사례 7)

나. 아동학대 인식

1) 아동학대 인식의 긍정적 변화

- 아동학대 관계 전문가들은 제주도민의 아동학대 인식 전반적으로 개선됐다고 동의하고 있었음

제주도민들이 아동학대에 대해 바라보는 자체가 도민들도 자체도 그렇고 아동들 자체도 그렇고 이제는 시선이 바뀌기 시작했다 긍정적 변화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사례 2)

예전에는 학대로 인식을 안했다가 이제는 학대로 인식을 해서 신고를 한다거나 이제 사람들이 적극적인 태도들이 나오는 거지. 워낙 사건화가 되다보니깐 이제는 신고해야한다는 인식이 생겨서. 없었던 것들이 생겨난 게 아니라 드러나지 않은 것들이 신고로 드러난 게 아닐까. 예전에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아동학대 관련해서 제주도가 실적이 계속 상위권이잖아요. 그게 학대가 많아서가 아니라 인식이나 신고하는 태도가 훨씬 더 성숙해져서 그렇다는 현장에서 얘기가 있었던 거 같은데.
(사례 1)

2) 아동학대 교육이나 홍보로 인한 인식 개선

- 아동학대 예방교육이나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한 언론과 미디어 등 다양한 홍보방법이 인식개선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함. 특히, 성폭력과 성학대 측면은 보다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언급함

갈수록 신고가 늘어나는 게 아동 본인 신고율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게 늘어난다는 건 가정 내에 훈육 행위가 있을 때 아동들은 폭력 행위로 받아들인다는 거고. 작은 행위여도 자기한테 추가적으로 피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된다면 애들이 적극적으로 의사표현을 하는 거죠. (...) 자기 권리나 인식에 대한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애들이 그런 교육을 받아왔다 거 말고는... (사례 2)

요새는 교육이나 홍보가 잘 되다 보니까 신고건수도 많아졌고(...) 아동학대가 옛날보다 많아졌다고 생각 안 해요. 드러나는 게 많아졌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지. 요새 신고자 유형을 보면요. 옛날에는 '나 아동학대 당했습니다.' 본인이 신고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감히 부모를 그런 게 있었는데요. 그런데 요새는 선생님한테 맞으면 바로 신고하기도 하고요. 부모를 직접 신고하는 아동들도 있어요. 그런데 요새는 유치원에서도 그렇게 교육이 잘 되는 거 같아요.(사례 5)

아동성학대 부분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성폭력이라고도 하잖아요. 성 학대를 성폭력 이 경우는 과거도 많이 있었고 지금도 많이 있는 건 여전하다고 생각해요. 다만 지금에 와서 이슈화되고 있는 것은 신고건수가 높아졌을 뿐 발생건수가 높아졌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전에는 그것이 성폭력인지 성 학대인지 인식이 미미했었다면 지금에 와서는 굉장히 체계적인 성폭력 또는 아동학대에 대한 교육이 어려서부터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공공기관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많이 예방교육이 활성화되어져 있고 체계적으로 개입하다보니까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져서 성폭력에 대한 신고율이 높아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례 7)

지금 젊은 부모들부터 많이 바뀌고 있어요. 문제다 뭐다 하지만 예전에 비해서 정말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는 것이 제일 크다고 생각해요. 워낙 메스미디어가 자극적인 걸 터트리니까.(사례 2)

3) 훈육으로서의 학대

- 부모들의 아동학대 인식의 개선으로 아동학대가 줄어들기는 하지만, 훈육이라는 이름하에 가정에서 학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부모들이 학대와 훈육을 구분하기 어려워함. 부모들에게 교육이 강화 될 필요가 있음

옛날에 비해서는 많이 학대는 좀 줄어들었다고 생각합니다. 훈육이라는 이름하에 학대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학대는 빈도는 줄어들었지만 신고 수는 늘어나고. (...) 정말 동네 슈퍼 아저씨가 우리 남자 아이의 고추를 만졌을 때 옛날 같으면 귀여움의 표시로 받아들일 건데 이제는 신고를 하잖아요. 그런 것들의 차이가 있는 거 같고 또 이럴 경우에 아이를 전부 한 곳에 모아놓고 교육을 시켰죠.(사례 8)

사실은 저희도 자녀 교육으로 부모로서 말 안 들으면 맴매라고 몇 대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컨트롤 한다고 치면.(사례 6)

자기는 때렸지만 나는 학대를 한 게 아니다. 굉장히 확고해요. 저희 교육을 다 받고 검찰 가서도 법원 가서도 나는 학대를 한 적이 없다. 애를 바로 잡아야 할 거 아니냐. 재 인생 어긋나면 당신들이 책임질 거냐. (...) 계속 얘기를 하다보니깐 어느 순간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변화는 시도하겠다. 아이들에 언어에 맞춰가지고 아이들에 눈에 맞춰가지고 하도록 지금보다 더 노력은 하겠다. 근데 또 이런 일이 일어나면 난 때릴 수밖에 없다. (사례 2)

학대에 대한 생각은 많이 달라졌는데 실제 행위에 대해서는 개선될 여지가 많이 필요한게 있다.(사례 4)

비행문제 일으키는 청소년들 만났을 땐데 그게 항상 두 의견이 상충되거든요. 부모는 자식이 저러는데 부모가 가만 놔 두냐 술 먹고 담배피고 사고치고 도둑질하고 다니는데 가만 놔 두냐 하고 애들은 집에 가면

맨날 욕하고 때리니깐 집밖에 나가서 돌아다니는 거고 돌아다니다보면 친구들이랑 어울리니깐 어울리려면 술담배도 해야 되고 없으니깐 또 도둑질도 하게 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그 문제가 나오는데 사실 부모한테 있어서 애들을 바르게 자라게 해야 될 의무는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훈육을 해야 하는 권한에 대해서 인정은 해주야 되는데 근데 훈육방식이 잘 못된 거를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것에 있어서 일단 폭력이 잘못됐다는 인식은 대부분 있거든요. 내가 때리는 게 내가 월 잘 못했냐 나오지는 않는데 근데 이렇게 안하면 애를 어떻게 바로 잡을 거냐 방법적이 면으로 해서 오는데 그거를 사실 애들도 모르고 어른도 모르거든요. 어른도 자기 겪어왔던 경험에 기인해서 대부분 부모세대들이나 저희 세대만해도 훈육의 방법은 욕먹고 맞는 거가 대다수였기 때문에(...)부모세대들이나 저희 세대만해도 훈육의 방법은 욕먹고 맞는 거가 대다수였기 때문에.(사례 2)

4) 현장에서 느끼는 아동학대 기준의 모호성과 신고의 어려움

- 아동복지법의 아동학대 개념은 포괄적이기 때문에 신고의무자 입장에서 보면 학대 기준을 현장에서 적용하기에 애매함. 훈육과 학대 범주에 대해 공론화가 필요한 시점.

지금 처벌을 당해야 할 위치에 있다고 하면 경계 라인이라든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모호하다는 거죠. 학교 현장에서도 그렇고(사례 6)

자잘한 것들 학대인건지 어느 권리에 대해 침해 받은 건지 애매한 지점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 서로가 정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동학대가 이렇다, 아동학대인 경우에는 무조건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의무자가 상당히 자잘 자잘 많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신고해야 해요. 그래야 내가 보호받으니깐, 그러니깐 신고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사례 3)

제도화 되어져야 하긴 하지만 (...) 모호한 포괄적인 내용이다 보니깐

흑과 백을 가려하는 부분이 있는데 흑과 백이라는 기준이라는 것은 이
러이럴 때 처벌해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기록하는 건 별로 현실적이지
않고요.(사례 7)

범위를 좁혀버리면 오히려 학대로 해석해야 할 부분이 빠져버릴 수 있
고. 지금처럼 넓혀버리면 이것저것 다 학대로 판단할 수도 있고(사례 1)

저 같은 경우는 별 세워요. 왜냐하면 보통 벌주는 게 형제들끼리 다툼
있잖아요. 다툼이기 때문에 서로 화해나 사과할 때까지 반성하라고 벌
주는 거예요. 벽 보고 서있거나. 이걸 학대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기준
이, 훈육하고 학대의 명확한 기준이 없는 거 같아요(사례 5)

문화 자체가 그러다보니깐 저희가 적극적으로 신고를 할만큼 합의나 문
화나 당연하다라는 건 알지만 액션을 취하기까지의 과정도 있잖습니까.
잠재된 과정들이 사회 문화적인 분위기라든지, 다른 케이스 사례든지
비일비재하고 신고 안했는데 처벌을 당했다 이런 케이스가 발생하고 그
러다보면 저희들도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사례 6)

5) 부모의 아동학대 인식

- 자녀 인권을 고려하지 않고 자녀를 나의 비속이고 내가 내 새끼니까 내 맘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개선될 필요가 있으며, 신체적 학대 부분에 인식이 많이 개선되
고 있지만 아직도 정서적 학대는 낮은 학대인식을 가지고 있음. 부모의 아동학대
인식 개선을 위해 지역단위(동네, 마을) 찾아가는 교육이 필요함

어쨌든 애들은 내 밑이다, 나의 비속이다, 나는 세대주고 가구 구성원
이고 내 새끼다 이렇게만 봐버리면 한계가 있죠. 그 시각의 변화를 해
야 하는데 쉽지가 않은 거죠. 어쨌든 그거의 영향이 크다고 봐요. 애들
을 동일하게 봐주지 않는다는 거. 그 시선을 바꾸는 것이 가장 시급하
다고 생각을 해요(사례 2)

실제로 신체적인 학대도 매를 들고 때리는 것만 해당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밀쳤어. 너 저리가 하면서 밀었어요. 너 저리가 이 소리가 사실은 언어폭력 플러스 신체폭력이거든요. 밀쳤는데 심하게 밀쳐지면 뒤로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것도 심각한 학대인데 학대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사례 10)

부모님이 원하지를 앓았어요. 어머니는 겁만 주세요라고 했는데 아버지가 에이, 삼촌인데 내뽀씨 영 하나니까.(...) 동네사람이 남자 아이의 성기를 만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부모님이 사건화하지 않겠다. 본 아이들도 다 동네 삼촌이어서 안 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매뉴얼대로 하다가 다 멈췄는데 저는 아동학대는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이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강도로 봤을 때 언론에서 이슈화되어가지고 조금 그렇게 줄어들 거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많긴 많지만, 줄어 들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사례 8)

6) 시설피해자의 학대 인식

- 시설피해자의 폭력에 많이 노출이 되다보니 아동학대를 학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설에서 아동학대 민감성 교육을 통해 학대인식을 높이기 위해 노력함

시설입장에서는 좀 민감하게 대처하거든요. 이 안에서 혹시 동반 아동에 대해서 엄마가 방임하든가 학대하면 바로 조취하고 교육시키고 서약서 쓰게 해요. 한 번 더 일어나면 신고하겠다. 실제로 신고한 경우도 있어요. 엄마들이 심각성 인식이 낮아요(사례 1)

남편한테 커다란 폭력을 경험하면 그것은 폭력으로 인식 못해요. 피해자들의 인식은 덜하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제 조금 달라지지 않았나(사례 1)

7) 아동의 학대 인식

- 아동의 학대 신고률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은 아동학대 예방 교육의 효과로 볼 수 있으며, 하지만 아직도 신고를 어려워하는 학생이 많이 있음. 또한 아동들은 욕을 학대로 생각하지 않고 있음. 아동의 인식은 개선되고 있지만 성추행, 성희롱 수준의 인식 개선이 필요함

아동들은 학교에서 교육하고 NGO·NPO들어가서 교육하고 저희도 교육하고 애들 스스로도 TV 보면서 인지도 많이 올라가고 한데 애들은 눈이 이만큼 높아져 있는데 부모들 눈은 아직 그대로거든요. 그러다보니 까는 이전에는 없던 신고유형이 많이 생겨요. 이전에는 엄마아빠 아빠가 나한테 큰소리쳤어요. 이런 류의 신고가 없었거든요. 애가 직접 경찰에 신고해서 아빠가 나한테 욕해요. 집에 가기 무서워요. 이런 류의 신고가 거의 없었어요. 1년에 많아봐야 3,4건 정도였는데 요즘은 애들 본인 신고률이 굉장히 늘어났거든요. 그니깐 저는 아동 신고률이 늘어났다는 거 자체는 진짜 애들은 학대에 대해서 그리고 폭력 행위에 대해서 자기가 부당하다고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인지를 하기 시작했다. 그 정도 수준까지 올라갔다 생각(사례 2)

아이들이 직접 자신의 피해 상황을 신고하는 것 거의 드뭅니다. 대부분은 친구하고 공유를 해요. 자기가 피해를 입었을 때 친구하고 얘기하고 그 친구가 자기 부모나 선생님하고 얘기를 하거나 친구하고 얘기하다가 경찰에 신고를 한다거나 하는. 연결이 되어요. 혼자서 피해라고 하는 확신을 갖는 인식이 깨어있지 않은 경우가 더 많거든요. 아까 아동 학대에서도 아이들이 인식을 더 낮다는 것과 같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아동학대도 그럴진데 자기 스스로가 수치스럽고 자기 스스로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니깐 오히려 더 심각하죠. 그래서 스스로가 신고를 하거나 문제라고 인식하지는 않고요(사례 7)

아동학대 인식이 개선 됐다는 수준이 어느 정도 되어야 개선됐다고 보느냐면, 요즘은 성추행, 성희롱 관련해서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말 한

마디를 해도 이게 성추행, 성희롱으로 언론에 올라가고 신고하겠다고 얘기하고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은 많이 됐단 말이에요. 그 정도까지는 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사례 4)

아이들이 느끼는 학대가. 욕을 욕으로 생각 안 할 수도 있잖아요(사례 3)

다. 아동학대 예방 정책 방향

1) 현 아동학대 예방 정책의 긍·부정적 측면

- 경찰조직이 아동학대 업무를 본인들의 업무로 중요하게 인식, 더 나아가 아동학대 자체 조사를 경찰이나 공공쪽에서 해야한다고 인식변화가 있음. 또한 예전보다 아동학대 근절 시스템이 갖춰가고 있다고 지각함. 전체적으로 경찰조직의 아동학대 인식이 긍정적으로 많이 변화하였음

지구대의 시각하고 수사팀의 시각의 갭이 있는데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고. 경찰조직 내에서도 아동학대의 업무를 본인들의 업무로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바뀌고 있어요.(...) 아동학대 자체에 조사를 하는 영역에 있어서는 경찰이나 공공 쪽에서 최종 쪽으로 가져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 민간이 하는 것 보다는 공공기관에서 역할을 해주는 게 훨씬 더 강제력이 있고 사회적으로 인식을 높이는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효과가 더 좋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이 상담을 했다고 하는 거 보다는 어디 수사팀에서 와서 상담을 하고 갔다는 것이 부모들한테도 더 크게 오는 거죠(사례 2)

지금 본청에서는 여성청소년 국이 없거든요. 국을 추진하고 있어요. 학대 대책과가 생기답니다. 만약 국이 생기면. 그만큼 이 업무가 우리 사회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학대 업무가. 하여튼 업무는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사례 5)

장기결석아동은요 어쨌든 간에 미취학이나 예비소집부터 저희가 했거든요. 예비소집 끝내고 미취학아동 끝내고 장기결석은 1년 내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학교 이랑 APO들이 수사 의뢰받고 수사 의뢰 받으면 소재 수사까지는 경찰서에서 담당하고 그 후에 학대 영역은 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시스템은 잘 갖추어져 있어요(사례 5)

112로 바뀌고 나서 역기능적인 부분이 많다 이런 저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저는 무조건 좋다고 생각해요. 상담원들 문제에 있어서도 무조건 안전 문제가 확보가 되고요. 일단은 안전 위협 때문에 걱정할 일은 없으니깐. 신속성 부분도 해결되는 거니깐. 하다보면 시각 차이에 따라서 아동학대를 조사해야 하는데 이제 시각이 많이 바뀌면서 경찰도 많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고요(사례 2)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이 긍정적이며 더욱 확대가 필요함. 특히, 교사대상 예방 교육을 강화 확대하고 학생교육을 활성화 할 필요가 제기됨

그나마 신고의무자 직군에 종사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하니깐. 방법 중에 하나는 신고의무자 직군을 더 늘려버리는 거죠(사례 2)

교직원 대상으로 하는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생활 담당 선생님이 진행해 주셔서 최근에 받긴 받았어요. 담임인 경우에는 신고의무자이다. 징후 라든가 상황이 인지되면 최대한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하지 않으면 벌금 처해진다. 저희 같은 경우는 300백만원 이상이면 직을 내려놔야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중요한 위치에 서있다 그런 정도의 연수를 받고. 학교 자체적으로는 어떤 학생들이 주도가 되어가지고 아동학대를 예방 하자는 캠페인이나 활동은 아직 초등학교에는 없습니다(사례 6)

2) 현장에서 경험하는 아동학대 예방 업무의 어려움

- **친권문제:** 현장에서 친권문제로 부모와 갈등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고, 친권 일시 정지 등 친권을 제한하기 까지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법률적 측면의 문제가 산재함.

또한 친권문제로 학대 보호자에게 알림으로서 일어나는 2차 학대 문제가 제기됨

제가 봤을 때 친권박탈까지는 쉽게 안 가요. 아주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면.(...)부모가 학대하더라도 예를 들어 아이를 전학시키는 부분, 뭐할 수 있는 부분, 입소시켜야하는 부분 다 동의가 필요해요(사례 4)

우리입장과 엄마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동학대라면 미국처럼 딱 분리시켜서 이런 태도를 원하는 거죠(사례 1)

2차 학대라고 보거든. 1차는 가해자에 의한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학대고. 2차는 피해자에 의한. 그럼 우리는 들어오는 애들에 대해 다 신고해야하는데. 그럼 그 사람들에게 대한 비밀을 누가 보장할 거냐 이거죠. 그건 법적으로 없어요(...) 신고하는 것도 딜레마에 빠져요.(...)시설에 있다는 게 노출이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인거죠. 이게 가장 큰 딜레마예요.(...)우리는 최대한 가해자 모르게 이 사람을 보호해서 자립하도록 도우는 것이 우리의 기능인거죠.(...)신고하는 게 오히려 피해자나 아동을 더 위험에 빠트리는 구조인거죠.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되어야 해요.(사례 1)

○ **사례관리 문제:** 부모가 바쁘거나 상담 및 교육에 거부적일 때 사례관리가 어려움. 특히, 너무 늦은 시간에 부모가 집에 오거나 전화를 거부하는 경우 사례관리가 힘들

이혼 가정이고. 그러다보니까 계속 지각 10시 되어야 오고, 다음 날 안 오고, 오고 싶을 때오고. 그래서 한 번 가보면 할머니는 손님맞이 하려고 엄청 바쁘지 않겠습니까. 아빠는 안 계시고. “상담 좀 하러 왔습니다”하면은 바쁘데 무슨 상담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결국은 하려면 일을 마무리하는 저녁 시간대에 가야하는 의미인데(사례 6)

6개월은 최소 모니터링하면서 아동이랑 부모랑 상담하면서 욕구가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욕구를 되도록 들어주려고 하고요. 강제로 법원

명령 받고 온 사람들한테는 법원에 따라서 교육 진행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끝까지 거부적인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애들도 끝까지 거부적인 애들도 있어요. 어쨌든 저희는 재학대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야 하니깐 거부하든 말든 계속 받을 때까지 전화하고요. 애가 10시에 만나자고 하면 집 앞으로 10시 만나러 가기도 하고. 그래서 학대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최소 기간을 6개월로 두고 있어요(사례 2)

- **예방교육에 대한 부모의 관심 부재:** 예방과 관련하여 좋은 교육이 많으나 부모들의 관심부재로 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음. 부모교육대상자 모집이 어렵고 늘 보이는 사람이 교육에 참여하고 있어서 부모의 관심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가 필요함. 예를 들어, 교육 이수증이 있으면 지방세 할인을 해주는 방안

생각보다 제주도내 있는 교육들이 좋은 교육들이 많아요. 무료교육들이 근데 홍보도 안 될 뿐더러 가려고 해도 바쁘거나 아니면 마음이 없거나 어찌됐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게 제일 큰 문제네요. 나랑 상 없는 일. 나는 별로 문제없고 잘 살고 있고(사례 4)

부모들에 대해서 교육을 할 수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사전 예방적 차원이든 부모에 대한 인식개선이 차원이든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사실 마땅히 없죠(...)저희는 참여를 원하는 부모가 있는 경우에는 예방교육을 한 적도 있지만 실제로 부모가 오는 경우는 많지 않고요.(...) 늘 보이는 사람들이 있고. 사실 맞벌이 한다거나 먹고 살기 바쁜 사람들은 다 못가죠. 저만 해도 어린이집에서 교육 있다고 와 달라고 하면 둘 중에 한명은 겨우 시간 내서 가는 거죠. 어린이집 교육에 큰 관심이 있어서 가는 거보다는 관계 때문에 가는 게 크죠(사례 2)

받는 사람만 교육을 계속 받는다. 성과 관련한 부모님 대상 00 교육 들 어보면 000 기관에서 보고 저기서보고 교육투어하시는 멤버는 정해져 있는 거 같아요(사례 3)

- **아동학대 관련 기관간 네트워크 문제:** 현장에서 관련 기관 간에 네트워크 문제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 좀더 구체성 있는 기간 간 역할을 정하기 위한 회의나 모임이 정기적으로 필요하고, 더 나아가 기관 간 역할을 구체화한 매뉴얼 제작·보급이 필요함

OO하고 항상 마찰이 생기는 이유가 그네들은 그네들 입장에서 바라보고 저희는 저희들 입장으로 바로 보는데. 저희도 한 가지 예를 들자면 학대한 부모는 왜 애를 키우면 안 되냐 그게 그네들 입장이거든요. 해서 저희도 OO 쪽이랑은 항상 마찰이 많거든요. (...)자기네가 어떻게 만져보려고 하다가 이제 다 틀어져버렸는데 자기네도 이걸 어떻게 마무리 지어버려야 하니깐 애가 있으니깐 저희 쪽으로 던지고 마무리 짓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사례 2)

아동학대 네트워크는 우리가 한 두세 번 정도했는데 다 소통이 잘 안됐어요. (...) 또 노력을 안 하는 거 같아. 아동학대 쪽에서도. 우리 쪽에서 연계하거나 협력 체계를 갖추는 것에 대해서 그쪽에서도 노력을 안 하는 거 같고, 우리에서도 노력을 안 하는 거 같고(사례 1)

3) 학교 현장의 아동학대 예방 교육의 어려움

○ **부모 참석률 저조** 학교현장에서는 아동학대 예방관련 부모교육을 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부모참석률임. 부모교육 의무화 방안이 모색 될 필요가 있음

시교육청에서 200명 대상으로 서울에서 강사 불러도 안와요. 내가 갔는데 내가 창피해서 죽을 뻔 했어요(사례 4)

어울림프로그램 교육도 하는데 학생들 교육이 있고 학부모교육이 있어 그래서 학생 교육 하러 가서 그날 학부모도 와서 교육을 받도록 하는데 학교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한데 학부모들이 거의 안와. 예를 들어서 중학교 1,2,3학년 전체 같으면 몇백명 되잖아 몇백명 하는데 학부모가 별로 없어(사례 9)

이런 교육이라든가 할 때 있잖습니까. (...) 참석률이 매우 저조하다는

거요. 참석율도 저조하지만 한 번 했다하면 대규모 강의를 요청한다든가 아무 의미 없는 그런 접근들은 저희가.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 대강당에 모여 놓고 하는 그런 교육 전혀 효과 없거든요. 딱 그 쪽 학교에서나 아이들이나 시스템 되어 있는 중심 기관에서 몇 명 이상 대규모 교육은 시키지 않는 그런 것들을 규정으로 하면 좋을 거 같아요. 저희한테 마치 통과 의례적으로 하고 있는 걸돌기 식의 교육들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사례 7)

부모 회의를 담당하시는 분이 일년 연간 계획을 잡아서 주제에 맞게 진행하시면 학부모님들이 오셔서 강의를 들으시고, (...) 실질적으로 모이시는 학부모님들이 극소수여서 이런 교육이 있다고. 만약에 했을 때, 그리고 아동학대교육이라는 타이틀을 건다고 하면 일단 관심에서 떨어져요. 심리적으로. 당연히 애들을 학대하는게 안 되는데 왜 예방교육을 할까? 실질적으로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실태에 대해서 저희조차도 사실상 파악하기 힘들어요. 파악하기 힘든 상태에서 예방교육을 한다고 했을 때 임원진들이 오셔서 들었지. 그렇게 끝나지 않나, 다른 학교도 그러고. 실질적으로도 해보시면 참석률이 많이 저조하죠(사례 6)

- **교육시간 확보와 교육 교재 문제:** 학교에서 학생대상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질적으로 높이기 위한 교육시간 확보가 필요하지만, 다른 중요한 교육에 밀려 시간확보가 어려움. 또한 예방교육은 누가 해야 하는 지, 교재는 개발되어 있는지 등 점검이 필요

안전 교육도 해야 하죠, 교통안전, 물놀이 안전, 황사에 맞춰서, 폭염이면 폭염주의보. 과연 어떤 시기에 끼어서 해야 할 건가가 첫 번째 문제예요. 왜냐하면 창체라는 시간은 정해져 있잖습니까. 일반교과에 무조건 파고들어서 할 수는 없잖습니까. 장체 시간에 해야 하는데 장체라는 시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 그럼 그 시간에 하려고 보니깐 범 교과 영역이라고 해서 엄청나게 많은 영역 중에 그것도 다 교육을 시켜야 하는 겁니다. 특히나 재작년부터는 교육청에서 나온 안전, 오십 몇 시간 인가 교육이 있습니다. (...) 그걸 하다보면 나머지 자투리 시간을 떼고

보면 그 시간에도 자체 활동도 해야 하고 행사, 계발, 봉사활동 다 해야 하는데 이 시간을 파고들기 너무나 힘들다. 시간 확보가 너무 힘들다. 이차적으로는 없는 시간을 쪼개서 진행하려고 하다보니깐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하나. (...) 학급에 맞는 교재는 어떻게 시작할 수 있나. 나와 있다. 보급된 게 있다. 이런 것들이 저희에게 있어서(사례 6)

- **교사의 업무 과다 문제:** 교육시간 내에 수업은 수업대로 하고 방과 후 교육과정 개설과 카톡이 활성화로 24시간 생활지도 문제에 노출되므로써 학생지도의 어려움에 노출됨

꼭 그렇진 않더라도 방과 후 있는 거 가지고 담당을 하고 케어를 해야 하는 입장에 놓이다보면 선생님들이 카톡이 활성화되면서 나쁜 점은 24시간 동안 생활 지도가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애들이 막 카톡으로 누가 뭐 했어요, 나한테 욕했어요 하면은 그럼 카톡으로 제가 누가 욕했어. 이렇게 카톡으로 24시간 생활지도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SNS가 활성화 되면서(사례 6)

4) 현장에서 바라본 아동학대 예방교육 정책의 방향

가) 예방교육 정책의 방향

- 지역까지 내려가는 체감형 아동학대 예방 정책이 필요함. 읍면동 협의체 위원들이 활동을 잘하는 곳도 있지만 임원의 변화가 없고 형식적으로 사업을 하는 문제가 제기됨. 협의체 위원들에 대한 아동학대 근절 및 예방 교육 의무화가 필요성이 제기됨

얼핏 느낀 건데 읍면동 협의체 위원들 있잖아요.(...) 그 임원을 맡게 되면 그 임원이 또 다른 임원을 맡고 그 임원이 계속 임원의 직급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나면, 사업을 하더라도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계속 그 사람들이 하고 사업 대상자들이나 관리가 되는 사람들도 계속 같은 사람들로 반복되는 거예요. 언론에서 아무리 떠들고 맞춤형 복지라고 떠들어도 결국 자기네끼리의 사업이에요. 정말로 복지사

각지대에 안 들어가요. 맨날 하는 사람이 하는 거고(사례 4)

읍면동 지역 사회 보장 협의체가 지역에 있는 동사무소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구석구석 못 보니까 마을 주민들이 더 잘 아니까 마을 주민들이 하자고 해서 한 건데. 사례 관리를 해보니까 정말 잘 하는데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곳은 정말 한 두 군데이고요. 나머지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동네 임원들 돌아가면서 하니깐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인식이 똑같아요. 야간에 선도 캠페인 한다고 해가지고 사진 한 장 딱 찍고 그냥 회식해요(사례 4)

나) 교육방법 개선 필요

- **1회성 교육 지양**: 현장에서 실적 만들기 1회적이고 편법적인 이수시간 교육은 지양해야 하며,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함. 단순히 교육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보든 과제를 주든지 하여 통과하면 이수증 주는 제도 필요

현장에서는 어찌보면 실적 아닌 실적 만들기 위해서 1회성 교육, 강사 한 분 초청하고 임원진 엄마 분들만 모셔놓고 파워포인트 띄어놓고 사진 찍어서 아동학대예방교육하고 결국 듣는 사람들은 시간 있는 임원진 엄마들만 세시에 와서 듣는다는 겁니다. 오후 세시에 시간 낼 수 있는 분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분들 가정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아동학대 관련 된 내용이 많을 건데. 취약계층이라고 본다면. 물론 그렇다고 해서 임원진 엄마들이 아니라는 건 아니지만 비율적으로 좀 맞지 않겠습니까.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받으셔야하고 커뮤니케이션 소통도 되어야하고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려면 체계적인 접근 방법이 필요하지 않나. 실적 맞추기 위한 1회성 교육 보다는(사례 6)

편법적으로 이수시간도 한 시간 반 해서 두 시간 한 것처럼 한다거나 하는 그런 것들은 전혀 의미가 없고 짧게 한다고 하더라도 당신의 의무 교육 대상자인 사람들은 그 내용에 대해서 레포트 쓰게 하는 거 있잖아요. 강의를 들었으면 이 건에 대해서 적어도 쓰다보면 내가 이 강의를 들었는데 이런 성폭력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거

있잖아요. 내가 이런 걸 목격했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한다, 내가 이런 걸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한다는 그걸 쓸 수 있으려고 한다면 한번은 읽고 한 번은 들을 거란 말이죠. 저는 막 그렇게 해야겠다고 막 해요(사례 7)

- **집체교육 지양**: 많은 아동학대 예방교육이 집체교육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교육효과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음. 좀 더 심도 있고 체계적이며 많은 시간을 요하는 아동학대 예방교육의 특성을 고려하여 찾아가는 소규모 교육이 필요함을 제기

저희가 봐도 막상 교육을 한다고 해도 저희는 직군에 계시는 분들 대부분이 집체 교육이 워낙 익숙하신 분들이니깐 교육과 동시에 5분 들어보고 재미없으면 자거든요. 자버리거나 딴 을 하니깐. 그것을 가지고 시험을 따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교육을 실제로 한다고 해도 그 성과에 대해서는 답을 할 수도 없고. 교육계의 가장 큰 성과는 아동학대가 일어나면 112에 신고해야 한다는 것만 알고 가시면 된다고. 신고를 똑바로 안하면 내가 처벌 받을 수 있다고 그 두 가지만 알고 계셔도 된다고(사례 2)

신고의무자도 저희 쪽에서 요청 들어오는 경우에 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연합회에 보수교육이나 어떤 대회 같은 거 할 때 삼천명 모인 자리 가서 교육하기도 하고요. 몇 백 명 단위로 이상 모여서 요청 오면 가기도 하고 그거 외에도 교사들 여름방학에 연수 같은 거 할 때 탐라 교육원 쪽에서 요청 왔을 때(사례 2)

- **사례중심 교육**: 아동학대 예방 교육에서 실제 사례중심으로 교육하면 쉽게 이해하고 다가올 수 있음. 단순히 지식 나열식 교육보다 실제 체감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함

진짜 사례 얘기하면 사람들 눈이 달라집니다(사례 5)

그렇게 되면 부모들 스스로가 범죄라는 인식이 안 생길래야 안 생길 수 없어요. ‘저게 아동학대야?’라고 봤던 것들이 ‘아, 저게 아동학대구나, 잘못하면 저렇게 되네.’라고 볼 수 있으니깐. 강하게 처벌하는게 조금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대표사례를 몇 개만 해도 교육이 많이 될 거예요.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례를 교육에 실제로 활용하거든요(사례 2)

그래도 실제로 처분을 받는 경우가 있다는 사람에 대해서 많이들 충격 받아요. 교장 선생님이 신고를 막은 경우에 교장 선생님이 처분을 받는 얘기 해버리면 충격을 받죠(사례 2)

- **교육 자료개발:**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체크리스트에 체크해보고 아동학대하고 있는 정도를 알 수 있는 체크리스트 개발이 필요함. 현장에서 딱 필요할 때 쓸 교재가 필요함을 제기하였으며, 이런 체크리스트를 선거 공보물이나 가정에 세금고지서나 도에서 보내는 우편물에 함께 보내서 배포하는 면도 제기됨

현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딱 필요할 때 쓰는 교재, 일차적으로는 시간 확보, 이차적으로는 확보된 시간 안에서 효과적으로 전달될 교재,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체크리스트 굉장히 좋은 거 같아요(사례 6)

가정에서 일어나는 체크리스트가 있어야 해요(사례 5)

부모님들이 체크해보면서 내가 자녀에게 학대를 하고 있구나 (사례 8)

선거 공보물이 이년에 한번 씩 가잖아요. 그거 할 때 아예 교육자료 끼어 넣어 가지고(사례 2)

- **찾아가는 상담 및 교육 확대 강화:** 위기가정이나 아동학대 예방교육이 꼭 필요한 가정을 찾아가는 상담 및 교육이 필요함. 특히, 예방교육을 거부하는 가정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교육이 이루어져야 사회인식개선이 빨라짐

찾아가는 교육을 하는 거죠. 집에서라도 반드시 그 시간을 이수하게끔 하는 방법이 있어요. 몇 시간 이상을 (...) 그리고 그런 상황에 교육을 하기 위해서 나가는 교육자 상담자도 반드시 두 사람 이상이 동행이 되어야 해요. 절대 1인 1명이 나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경찰이 두 사람이 파트너가 되잖아요. 사건 조사 나갈 때 그런 것처럼 이 교육도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한 사람은 초록우산 직원, 아동학대센터 직원이 되는 거고 다른 한 사람은 부모교육 담당자. 아니면 부모 상담 전문가 이렇게 찾아가길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게 학대인지 왜 부모 교육을 반드시 해야 하는 건지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이거는 사실은 대단한 인적자원과 물적 자원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사례 10)

건강증진센터에서 새로운 가족 건강 지원 사업이 내려왔는데 그게 뭐냐면 가정행복드림 사업 같은 거예요. 찾아가는 상담인 거예요. 부모. 그래서 전문상담사를 채용을 했어요. 석사 이상.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 부모 가정에 찾아가서 그 부모를 직접 상담하고 부모교육하고 하는 시간이 20회래요. 기본이. 그럼 그런 단체하고 함께 그 교육 안에 반드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넣게끔 만드는 방법이 있죠.(...)20회면 굉장히 좋은 회기수예요. 최소한 3회기 이상은 학대와 관련한 예방 교육을 하게끔(사례 10)

이 시스템에 들어오지 않은 예방적 차원에서의 잠재적인 아동 성폭력 피해자들에 교육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그거예요. 보호자들 교육이 너무나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 시스템 상 아까 제가 통합 폭력 예방 강사로서 학교와 여러 가지 기관하고 업체들 찾아가서 다 교육을 하고 있어요(사례 7)

일종의 방문상담이라든가 도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같은데서는 방문 상담하고 하잖아요. 상담 전문가가 찾아가는데 말하자면은 찾아가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래도 약간은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사람이 찾아가야 하고(사례 9)

- **부모교육 강제화 방안 필요:** 사회 인식 개선을 위한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모의 거부적 태도와 관심부재를 돌파할 방법은 부모교육의 강제성(의무화)이로 의무화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부모 상담을 하게 될 때 대부분은 안하려고 하죠. 내가 그걸 당신이랑 뭘 해야 되나 내가 학대했다는데 나는 학대를 한 적이 없다. 내 자식이 바르게 크도록 바로 잡아야지 그럼 그걸 안하면 당신이 재 벗어나는 걸 잡아 줄 거냐 그렇게 나 올 경우에 저희가 어떤 말을 해도 안 들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법원에서 명령을 받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 싫든 좋든 20시간 마주보고 앉아서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애들을 안 사랑하는 부모는 없었어요(사례 2)

교육 시간도 늘려야하고 끝나고 나서도 가정에서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걸 해주게끔 해야 하고 의무화 시키는 거죠. 법제화. 이걸 법률적인 강제성이 없으면 불가능해요(사례 10)

할 수 있는 홍보수단이란 홍보수단은 다 해서.... 버스 안에 LED 광고도 해봤고 카메라 단속하는데 카메라 달려있는데 나와 있는 것도 해봤고 현수막도 걸어봤고 어디 행사한다고 하면 다해봤고 학교 앞에 눈에 들어오는데도 해봤고. 뭘 해봐도 없더라고요. 이런 연구에서 목적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저희도 찾고 싶거든요.(...)강제성을 줄 수 있는 그 방법 밖에 없는 거 같아요(사례 2)

- **아동중심 교육 강화:** 부모의 교육이 어렵다면 먼 미래의 부모인 아동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제기됨.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강화하는 것이 제안됨

그렇게 하면서 좀 성폭력 사항 메뉴 책자를 도교육청에서 급하게 만들었죠. 그렇게 하면서 전 제주도 내에 그걸 배포를 하는데, 그렇게 하면

서 인식이 조금씩, 조금씩. 어쨌든지 간에 이걸 알게 되었을 때 내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교통 법규도 잘 모르는 사이에 대상이 되는 거처럼. 이전보다는 강력한 처벌이라든가 이런 사례가 발생하니까 선생님들이 전화로 많이 문의해오는 경우가 이전보다 많아진 거 같아요(사례 7)

부모를 끌어 들일 수 없으면 조금 당장에 것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초중고 아이들 대상으로 해서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시키는 건 어떨까요. 요새는 뭐 인성교육은 그런 식으로만 가긴 하는데 인성교육은 조금 약한 거 같고요. 학교에서 일어나는 학교폭력 관련된 것도 아동학대의 일환으로도 볼 수 있을 거 같거든요(사례 4)

효과에 너무, 아웃풋에 너무 기대하지 말고 그리고 이러한 교육 접근이건 고단위 학생제도 아니고 진통제 아스피린이 아니에요. 갑자기 열 안 내려가요. 그리고 갑자기 열 내려가게 아스피린 열알 먹으면 죽어요. 그거와 똑같이 장기간 가야하는 걸 시작을 하고 가능하다면 아이들 세대만이라도 이런 학대를 그 다음 세대로 전수 시키지 않게 그게 더 중요할 거예요(사례 10)

학교가 힘든 거 알지만 아까 같이 접근성은 초중고 밖에 수월한 데가 없으니깐(사례 4)

부모가 가능하지 않다면, 부모에게 오랜 시간 교육이 가능하지 않다면 이미 학대 받은 아이들 이 아이들에게서 고리를 끊자(...) 부모를 개입하기에는 너무 오랜 시간, 그리고 부모들이 동의를 안 해요. 아동들만이라도 우리가 접할 수 있다면 어느 시점에서 연결 고리를 단절시키는 거죠.(사례 10)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여기에서 학대예방교육, 학대를 받았을 때 어떻게 신고해야 할지. 이 학대 예방 교육과 신고는 학교 왕따, 학교폭력 다 포함하는 거예요. 전체 다예요. 가정폭력 뿐만 아니고. 그 부분을 어린 시절부터 교육을 시키는 거죠(사례 10)

5) 아동학대 예방대책 및 정책 방안

가) 아동학대 예방 의무교육 확대 실시

- 현재 제주도의 지원을 받고 있는 수급자, 한부모, 장애인, 양육자 등에게 아동학대 예방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함. 현재 정부에서는 온라인으로 양육수당을 신청할 때 의무적으로 4분정도의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음

수급자든 한부모든 장애인 뭐든. 사회적으로 열악한 계층한 분들이 사실 경제적으로 안정 안 되어 있는 분들이 또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그런 부모 밑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내가 아이한테 또 그렇게 하는 그런 세대 간에 전이가 되는 시스템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니까 그런 교육을 아까 얘기한 아동학대 받는 것처럼 이분들한테도 이런 것들이 체킹 할 때마다 인터넷 교육이라도. 이거 한 번 받으면 4분 끝나는 게 아니고 문제해서 틀리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처럼(사례 7)

양육수당을 받는 모든 부모들을 교육 받게 하는 것도 있죠. 왜냐하면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예전에는 양육수당을 주지 않았으니까 의무화하기도 힘들었겠지만, 지금은 가능하네요(사례 10)

- 부모대상 아동학대 의무교육이 필요함. 호주인 경우, 연금을 받을 때 운동을 하는지 정기적으로 체크하여 연금을 깎는 제도가 있음. 제주도의 지원을 받는 자는 모두 의무적으로 예방교육을 집중적으로 이수하지 않으면 지원금을 깎거나 이수한 경우는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를 제기함

제가 이걸 느낀 것이 호주를 갔는데 1999년도와 2000년도 사이에 간 거 같은데 아직도 생각나는 게 이게 선진국이나 느낀 것이 호주 어느 한 지방을 가신디예. 나이든 사람이예. 와서 운동을 하지 않으면 연금을 받을 때 깎아버립니다. 정기적으로 체크를 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

네가 운동하지 않으면 의료비로 들어가는 나라 예산이 너무 많은 거 마썸.(...)지속적으로 나이든 사람들이 와서 운동을 하는데 등록하지 않으면 날마다 체크를 하지 않으면 수당을 깎아요. 그런거처럼예. 우리 부모님들도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을 받지 않으면 그만큼 불이익을 받아야. 왜냐하면 나중에 아이들이 말썽을 일으켰을 때 그 보전 비용이 부모님이 교육을 받아서 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게 들어마썸(사례 8)

- 위원회에 위촉을 받으려면 반드시 의무교육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몇 개 이수해야 한다고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음

이제는 모든 위원이 성범죄조회를 하게 했어요. 그 사건 이후로. 그러니깐 마찬가지로. 이것도 하나의 문구를 넣을 수 있는 방법을. 저는 이게 좋다고 봐요. 위원회 위촉을 받으려면 의무교육 학대 예방에 관련한 교육 몇 개를 이수해야한다(사례 3)

법에 넣어야 합니다. 조례로. 이거를 주민자치든 복지위원회이든 자생단체임원이 하려면 의무적으로 이 교육을 이수해야한다고 넣어야 한다고 저는 봐요. 이수증을 받아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런 거(사례 3)

- 자생단체도 의무교육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받아야 하는 문제에 대해 의견이 제시됨

어쨌든 의무교육이잖아요. 신고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비신고자가 중요한 거 같아요. 비신고자는 결국 마을단위로 봐야 하잖아요. 마을단위로 보면 거기에 자생단체들이 많잖아요. 마을에 있는 자생단체들은 무조건 교육을 받아서 본인들의 감수성을 높일 필요가 있어요(사례 3)

사실은 도에서 작심하면 가능해요. 예를 들면 마을 자생단체들 교육시키는 방법은 이런 교육을 받으면 인센티브를 주면 되거든. 연 1회나 2회를 자생단체에서 이런 교육을 받았다하면 점수를 더 준다거나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면 너도 나도 해.(...) 예전부터 제주도만보면 제주도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공동체 문화예요. 그러면 그 지역의 자생단체들, 특히 청년이나 여성단체. 이쪽의 사람들의 인식을 좀 더 변화시킬 수 있는 자원들을 투입해서 이 사람들이 그 동네 공동체에 파급을 줄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봐요. 그 사람들 대상으로 교육을 한다거나 이화 관련된 캠페인을 자꾸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개선이 되면, 주로 청년회나 여성회 이런 사람들이 그 지역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사례 1)

예전에 주민자치위원회가 동장이 추천했었는데. 지금은 주민자치위원회 하려면 교육을 받아야해. 교육은 필수. 교육을 받아야 주민자치위원회를 선출할 수 있어요. (...)교육을 받은 사람들 중에 추천을 받을 수 있어. 그 교육에 아동학대가 들어가는 거지. 이제는 조례가 바뀌어서 작년부터 (...)조례가 변경이 되면서 주민자치위원회들을 하려면 주민자치 관련한 교육을 받은 사람들 중에 선출 할 수 있다고 규정이 바뀌었어요. 그 교육에 아동학대가 들어가면 좋지(사례 1)

○ 군대, 예비군, 민방위 교육 시에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의무화 필요

그니깐 성폭력예방교육 그거 하려고 군대 들어가잖아요. 교육들이 그거 하고 똑같이 하면 되죠. 군대는 거의 다 가잖아요(...)그때 부모교육하고 성희롱예방교육하고 인권교육하고 그런 거 다 하란 말이에요.(사례 4)

안보, 민방위 교육 같은 경우는 저희도 생각해본 적 있긴 하거든요. (...)(사례 2)

○ 결혼, 재혼, 이혼 과정에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받지 않으면 신고를 안받아주는 제도 도입이 필요함

재혼하는 과정에 대해서 예방교육 법으로 해야 된다. 그거 한 번 언론에서 본 적 있거든요. 재혼하는 가정이나 그런 곳에서. 이런 가정에서 학대가 많이 이루어지니깐(사례 5)

이혼위기 가정들 의무적으로 받을 수 있게. 아까 말한 예방 교육. 그거 굉장히 중요한 요소네요(사례 10)

혼인신고하기 전에 너희들은 교육을 받아야 하느니라(사례 3)

혼인 신고할 때 혼인 신고도 하려면 교육을 받아서 최소한 몇 시간 이상. 지금 제주도에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이런 데에서 내가 혼인을 한다는 것은 얼마만큼의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책임감, 가족으로서의 부모로서의 역할, 부부로서의 역할, 부부와 성, 부부와 경제, 부부와 법. 그리고 내가 자녀로서 부모한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옵티미스트라고 하죠. 결혼한 성인으로서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교육을 조금 받는다면... (사례 7)

나) 학교현장의 아동학대 예방대책 및 정책 방안

- 학교에서는 관심이 없는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교육을 강제할 방법이 없음. 부모교육 반드시 받아야 하는 의무규정을 만드는 것이 필요함. 필요에 따라서는 가정을 찾아가는 제도를 만들어서라도 의무적으로 교육을 하는 방법이 필요함

참여율은 역시 저조하죠. 기회는 아마 본인이 참여하려고 생각만 가지면, 학교에서 그리고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1년에 두세번은 다 마련하는데.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의지나 환경이 부족하죠. 이걸 강제를 해야만 이 사람들이 받는 건데, 강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뭐 어떻게 할 수 없죠(사례 2)

반드시 학교에 와야 한다는 날을 정하는 거야. 날을 정하는 걸 정해놓고 그 시간에 오면은 우리가 삼십 분이라던가 한 시간이던가 학부모 교육시키고 전문가 모셔가지고 시키고 그리고 담임선생님이 인터뷰하는 거지 인터뷰 할 때는 개인으로 하지 말고 그룹으로(사례 9)

학부모 교육한다고 해서 5명 이상 참가 이렇게 하잖아요. 학교 별로 몇

명 이상 참가하면요. 제가 느끼는 건데 가야할 사람이 안 가고요. 가지 않아도 될 운영위원장. 정말 지도층에 가게 되요. 그래서 이거야말로 정말 예산 낭비고 왜 이거 하지 않아도 될 걸 악순환을 하는가. (...) 학부모라면 의무적으로 5시간 이상 학부모 교육을 받아야한다 법률적으로. 대한민국의 학부모라면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오프라인은 5시간, 온라인은 10시간. 이런 식으로 하면 오프라인을 많이 가겠쥬. 그런 식으로 해서 이수증에 도장으로 찍지 않으면 벌금을 내는 제도. 저는 이걸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학부모 인식 개선하는 방법은 교육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학부모라면 의무적으로 다섯 시간 이상을 초등학교 몇 년 내에 받아서 그 증거물을 제출하지 않으면 봉사활동 몇 시간에 처한다든가, 벌금을 낸다든가 이런 제도가 있으면...(사례 8)

- 학교에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학기초라든가 학기말에 아동학대 및 정신건강 의심 징후 진단검사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도를 강화·확대하여 진단검사를 의무화함으로써, 교육과 상담이 필요한 아동과 가정을 선별하여 아동학대 예방교육과 상담을 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함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한 겁니다. 했을 때 설문에 대한 각각 파악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우울증세가 가장 높음, 아동학대 의심 징후가 보임 이런 것들이 싹 파악되어서 보이더라고요. (...) 그런 애들을 대상으로 센터에서 안내문을 작성을 해가지고 따로 안내문을 공지를 한 겁니다.(...)그렇게 해서 저희가 어찌 보면 몇 주 차에 걸친 부모 교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 문제가 있는 부모들만 모셔다 놓고 하는 교육이다 이게 아니라 일반 학생들도 참가 희망을 받고 이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넣어서 쉬어서 부모교육을 진행 (...) 4주 정도 교육을 꾸준히 진행했어요. 저녁 8시부터(사례 6)

- 학교폭력, 안전, 정신건강, 아동학대 등 학교에서 아동에게 필요한 중요한 교육을 모아서 통합교과목을 만들어 교육시키는 방법이 제기됨

교과목을 만드는 게 나아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들은 얘기인데 사회지도층이거나 이런 사람들이 가는 학교들은 조금 다르잖아요. 유명사립학교. 유명사립학교에서 반드시 해야 하는 게 인권교육, 철학. 사람존중에 대해서 꼭 교육한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일반학교보다 더 철저하게 한대요(사례 1)

현실성 얘기 나오니까 저는 이미 오래 전에 없어진 과목이에요. 가정이라는 과목이 옛날에 있었어요. 저는 그거 부활시켜야 한다는 입장이에요. 가족이 무엇인지, 가정이 왜 중요한지 이걸 가정 시간에 다룰 수가 있거든요. 왜 아동은 학대 하면 안 되는지 그러니까 부모 교육을 어린 시절부터 배우는 거예요. 내가 부모가 되면 어떻게 해야 할지 이런 교육을 담당했던 과목 중에 일부가 사실은 가정이었어요(사례 10)

전체적으로 학교폭력이니, 아동학대니, 성폭력이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인권 교육. 이런 식으로 해서(사례 7)

- 학생과 부모에게 배포할 책이나 교재,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여 아동학대 인식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함. 유치원 교사용 아동학대 자가 체크리스트가 있으며, 의료인이 아동학대를 구별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도 있음. 하지만 현재 초·중·고 교사용 체크리스트, 가정에서 부모가 자신이 얼마나 아동학대를 하는지 체크하는 체크리스트는 없기 때문에 체크리스트 개발이 필요성이 제기됨

인쇄물을 붙여서 학대 신고는 어디어디. 이렇게 하면 무심코 지나가면서 보면서 아이들 머릿속에 입력이 되니까. 그 입력이 훨씬 더 크죠. (...) 무의식적 학습이 더 오래 기억에 남거든요. 지나가고 오면서 아동학대는 이렇게 신고하세요. 신고 번호 뭐뭐뭐. 길면 안 되니까 (...) 가 끔씩 선생님들이 상기를 시켜주는 거죠. 상기를.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입력이 돼서 자연스럽게 교육이 되는 거예요(사례 10)

배포용으로. 브로슈어 보다는 조금 더 책다운 내용으로. 그래서 만화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너 이러면 엄마가 사랑

하지 않는다, 너 이러면 집 나가, 너 왜 이렇게 말 안 들어 하면서 밀쳤어 이런 것들. 신체적으로 왜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내 어깨에 손 얹는데 기분이 불쾌하면 성추행이란 말이에요. 그거와 같은 맥락인 거죠(사례 10)

- 선생님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활성화하므로서 학생들의 인식을 개선시키는 방법도 제기됨

아동학대 예방교육 관련된 내용들이 학생들까지 사그리 다 되려면 일단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선생님들께 업무적인 협조라든지 내용들이 학교에 공론 형태로 보급이 되지 않겠습니까. 생활지도 선생님들은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학교 단위에서 진행을 해야겠구나. 그럼 교직원들 대상으로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실시를 해보자하면 연수를 할 겁니다(사례 6)

라. 제주도나 아동학대 예방 관련기관에 제안하고 싶은 점

- 업무가 많은 학대예방경찰관의 처우 개선이 필요. 특히, 인원과 아동학대 업무에 전담할 수 있도록 다른 업무를 줄일 필요가 제기됨. 또한 사례관리에서 업무시간 외에 찾아가는 경우에 자비로 사례관리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며, 이 부분이 시급히 개선이 필요함

APO들도 미래에 일어나는 일을, 우리는 관리를 할 뿐이지. 개인을 교화시키거나 못하거든요.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언론은 100% 질타를 합니다. 그리고 일이 되게 많아졌어요. APO들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바뀌었어요. 작년 APO들이 저만 관리자로서만 있고요.(...) 한명 빼고 다 바뀌었어요. 6명 중에 5명이 바뀌었어요. (...) 도망가려고하는 거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자체 감사들도 심하거든요. 챙겨야 하는 자료가 많아요. 모니터링 한 달에 한 번씩 다 해야 해요. 이게 방문 모니터링이어서 다 찾아가야 해요. 아동학대 수가 계속 늘어나잖아요. (...) 예산이 충분한 것도 아니거든요. 모니터링하려면 빈손으로 가나요. 음료수라도 사가야 하거든요. 그리고 집에서 못 만나거든요. 밖에 커피숍

에서 만나거나 할 수 있어요. 상담을 하더라도. 그런데 예산도 없어서 자기 사비 털어서 만나고 그럼에도 사건이 터지면 못매를 맞는 경찰은 누가 하겠어요. 일한만큼 보상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상태도 아니고. (사례 5)

저희가 정원이 있고 현원이 있잖아요. 지금 APO가 정원에 다 반영이 안됐어요. 그러니깐 불안한 거죠. 신분이 경찰관이긴 한데 APO이면서도 내가 정원에 들어가지 않은 보너스 그런 의미. 저도 안 들어갔거든요. 본청에 노력은 하는데 넣어줄지 안 넣어줄지 모르죠.(사례 5)

만약에 인원이 하나 더 들어오면 모니터링만 전문적으로 하는 경찰관이 생기겠죠. APO 중에서도 모니터링하고 학대예방교육하고 그럴죠. 아동학대발생하면 합동심사위원회라고 개최를 하거든요. 기관끼리 모여서 사례회의도하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일이 되게 많은데 만약 인원이 총당된다면 그럴 수 있겠죠(사례 5)

- 교육과 홍보로 인한 아동학대 인식 개선으로 학생, 신고의무자의 신고률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사례관리 차원에서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인력 증원이 시급히 필요함. 또한 예방 교육이 필요한 현장이 많아짐에 따라 교육인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지금 아동보호전문기관도 인력이 많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경찰의 학대 관련 인력도 늘려야 하고 아동기관도 늘려야 합니다(사례 5)

저희가 인원은 작는데 아이들은 너무 많다보니깐 되도록 집체교육위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거 아니더라도 학교에선 신고의무자들 교육 받아야 되는 게 있어가지고 그거는 이제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 자료가지고 교육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사례 2)

계속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동학대 조사업무는 민간이 할 일이 아니거든요. 경찰이나 공공영역에서 할 일이지 민간이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 민간 영역 쪽에서는 사례 관리와 치료보호, 아동 보호하는 쪽을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저는 또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사례 2)

- 일반가정보다 더 많이 아동학대의 위험에 노출된 장애가정 사례지원을 위해 찾아가는 지원이 필요함. 특히, 활동보조인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지적장애인 3급자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함(예, 동네 복지위원회 연계 사례관리)

제주시청에 있는 상담복지센터가 센터에서 사례지원을 하면서 여기를 주기적으로 방문할 수 있는 인력을 배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거 같아요. 그렇게 해야 방임이라도 덜 할 수 있게끔(사례 3)

저희가 활동보조인 지원이라고 해서 각 장애 1,2,3, 급에 있는 분들을 활동보조인 신청을 해서 수급 선정이 되면 활동보조인 집에 가는데 우리가 이렇게 지적장애인분들을 결혼을 할 정도라면 1급은 아니라는 거예요. (...) 지적장애인 3급은 활동보조인 등급 외로 나오거든요. 신청은 하나 등급 외로 나와서 이 분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 각 지역별로 복지연회가 있잖습니까. 원래 세 모녀 사건 때문에 그 위원회가 생긴 거거든요. 그분들한테 그거를 각 마을, 동 단위마다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것만 해줘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 장애인 지원협의회나 복지위원회나 주민자치위원회나 밀반찬에서 나르는 비슷한 형식으로 하지 말고 차라리 그렇게 아동보호전문기관하고 저희 상담소하고 연계를 하면서 저희 집이 요구를 하고 필요하다 그러면 복지전문위원회들이 자발적으로 그 집으로 가서 방문을 하면 동네 복지위원회들 동네 사람들 위촉하시잖아요(사례 3)

- 교육청에 바라는 점은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달라는 것과 교육은 누가 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에 대해 명확한 기준과 다양한 연수와 홍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해 달라는 것. 그리고 교재 개발과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예산 지원을 해달라는 것

교육청에 바라는 바는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입니다. 시간 확보, 시간 확보를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정책을 마련해달라. 이걸 굳이 아동학대예방 영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영역도 다 마찬가지로 보시면 되는데. 학교 단위에서 선별도 물론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육전문가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담임이 이거는 교육 시킬 것, 이걸 말 것, 이걸 과감하게 쳐낼 것 했을 때 과연 아동학대 예방교육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선생님들 인식개선도 시켜야 될 것도 있겠지만 이걸 담당하시는 기관이나 지금 계시는 연구소나 이런 데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셔서 일선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이 어떻게 보면 최전방에 계신 분들 아닙니까. 신고의무자이면서도 가장 관찰하기 쉬운 위치에 있고 애들이랑 제일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고. 그런 분들에 대한 관심을 많이 두셔야 되고 다양한 홍보와 연수라든지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줄 수 있는 노력을 해주십사(사례 6)

학교 현장에서 사용할만한 교재 개발이라든지. 아까 말씀 드린 거와 같이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재정적인 지원. 그런 것들은 일단 아웃풋이 있으려면 인풋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로는 해서는 안 되고 홍보를 하든지 어떤 투입을 하든지, 프로그램을 진행하려면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예산을 마련해서 내려주시는 방향(사례 6)

○ 자생단체나 주민단체 위원회를 하게 되면 성폭력이나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게끔 도 업무지침이나 권고라고 했으면 함

이걸 조례로 안 넣어줘도 업무지침으로라도. 도청에서만 업무지침을 내리면 되거든요. 자생단체나 주민단체든 어느 위원회를 하고자 하면 법정 이수하는 거 있잖아요. 성폭, 아동학대 이런 교육을 이수하게끔 권고라든가 이런 것들을 꼭 내보내면 당연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꼭 조례가 아니더라도 업무지침으로라도 이런 것들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사례 3)

3. 소결

가. 아동학대 인식

- 아동학대 관계 전문가들은 아동학대 예방교육이나 홍보로 인해 제주도민의 아동학대 인식 전반적으로 개선됐다고 동의하고 있지만, 아직도 훈육이라는 이름하에 가정에서 학대가 이루어지고 있음. 부모들은 자녀교육에서 학대와 훈육을 구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부모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인식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아동의 학대 신고률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은 아동학대 예방 교육의 효과로 볼 수 있으며, 하지만 아직도 신고를 어려워하는 학생이 많이 있음. 또한 아동들은 욕을 학대로 생각하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는 시급히 아동의 인식은 개선이 필요함
- 부모의 신체적 아동학대 인식은 많이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도 정서적 학대는 낮은 학대인식을 가지고 있음. 부모들은 자녀 인권을 고려하지 않고 자녀를 나의 비속이고 내가 내 새끼니까 내 맘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아동인권 측면의 교육이 부모에게 확대 보급되어야 함. 특히, 부모의 아동학대 인식 개선을 위해 지역단위(동네, 마을) 찾아가는 교육이 필요함
- 아동복지법의 아동학대 개념은 포괄적이기 때문에 신고의무자 입장에서 보면 학대 기준이 모호하여 현장에서 적용하는데 혼란을 경험함. 현장에서 학대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학대기준과 훈육과 학대 범주에 대해 공론화할 필요가 있음

나. 아동학대 예방 정책 방향

1) 현장에서 경험하는 어려움

- 예방과 관련하여 좋은 교육이 많으나 부모들의 관심부재로 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음. 부모교육 대상자 모집이 어렵고 늘 보이는 사람이 교육에 참여하고 있음. 부모의 관심 유도를 위해 인센티브 제도가 필요함. 예를 들어, 교육 이수증이 있으면 지방세 할인을 해주는 방안이 필요함. 학교현장에서도 아동학대 예방관련 부모교육을 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부모참석률로서 부모교육 의무화 방안이 모색

될 필요가 있음

- 현장에서 친권문제로 부모와 갈등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고, 친권 일시 정지 등 친권을 제한하기까지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법률적 측면의 문제가 산재함으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음. 또한 친권문제로 학대 보호자에게 알림으로서 일어나는 2차 학대 문제가 제기됨. 친권문제로 관련하여 빠르게 법률적, 서류적 문제를 도와주는 시스템이 필요함
- 부모가 바쁘거나 상담 및 교육에 거부적일 때 사례관리가 어려움. 특히, 너무 늦은 시간에 부모가 집에 오거나 전화를 거부하는 경우 사례관리가 힘들기 때문에 사례관리 측면에서 부모의 참여를 의무화 할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함
- 현장에서 관련기관 간에 네트워크 문제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 기관 간 역할을 구체화 위한 협의체나 모임을 확대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더 나아가 기관 간 역할을 상세화한 매뉴얼 제작·보급이 필요함
- 학교에서 학생대상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질적으로 높이기 위한 교육시간 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다른 중요한 교육에 밀려 시간확보가 어려움. 또한 예방교육은 누가 해야 효과적인지, 전문성은 누가 있는지, 예방교육 교재는 잘 개발되어 있는지 등 점검이 필요함

2) 현장에서 바라본 아동학대 예방교육 정책의 방향

- 경찰조직이 아동학대 업무를 본인들의 업무로 중요하게 인식함. 더 나아가 아동학대 자체 조사를 경찰이나 공공쪽에서 해야한다고 인식변화가 있음. 또한 예전보다 아동학대 근절 시스템이 갖춰가고 있다고 지각함. 전체적으로 경찰조직의 아동학대 인식이 긍정적으로 많이 변화하였으며, 그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고 있는 상황에 지속적인 역할의 확대·강화가 필요함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이 효과적이고 긍정적 정책이기 때문에 더욱 확대가 필요함. 특히, 교사대상 신고의무자 교육을 강화 확대하고 학생교육을 활성화해야함
-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교육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현재의 교육방법을 바꾸어 1회성 교육과 집체교육 지양하며, 단순 지식 나열식 교육보다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사례중심의 소규모 교육이 활성화가 필요함

- 지역에서 아동학대 예방 정책을 체감하기 어려움. 읍면동 협의체 위원들이 활동을 잘하는 곳도 있지만, 임원의 변화가 없고 형식적으로 사업을 하는 문제가 제기됨. 지역까지 내려가는 체감형 아동학대 예방 정책을 펼치기 위하여 지역 협의체 위원들에게 아동학대 근절 및 예방 교육을 의무화 할 필요성이 제기됨. 또한 지역(마을) 전담 아동학대 예방 위원을 지정하여 아동학대 예방과 근절을 위해 앞장서도록 하며 연말에 그 실적을 가지고 포상도 하는 정책을 제안함
-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체크리스트에 체크해보고 아동학대하고 있는 정도를 알 수 있는 체크리스트 개발이 필요함. 또한 현장에서 딱 필요할 때 쓸 교재 개발이 필요. 그리고 개발된 체크리스트를 선거 공보물이나 가정에 세금고지서, 도에서 보내는 각종 우편물에 지면을 활용하여 가정에 배포하는 방법을 제안함
- 위기가정이나 아동학대 예방교육이 꼭 필요한 가정을 찾아가는 상담 및 교육이 필요함. 특히, 예방교육을 거부하는 가정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교육이 이루어져야 사회인식개선이 빨라짐
- 부모의 교육이 어렵다면 먼 미래의 부모인 아동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함.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강화하는 것을 제안함

3) 아동학대 예방대책 및 정책 방안

- 부모대상 아동학대 의무교육이 필요함. 호주인 경우, 연금을 받을 때 운동을 하는지 정기적으로 체크하여 연금을 깎는 제도가 있음. 제주도의 지원을 받는 자는 모두 의무적으로 예방교육을 집중적으로 이수하지 않으면 지원금을 깎거나 불이익을 주며, 이수한 경우는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 도입이 필요함(예, 자동차세를 할인하는 것처럼 지방세를 할인한다거나 각종 지원제도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
- 현재 정부에서는 온라인으로 양육수당을 신청할 때 의무적으로 4분정도의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음. 제주도의 지원을 받고 있는 수급자, 한부모, 장애인, 양육자 등에게 아동학대 예방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위원회에 위촉을 받으려면 반드시 의무교육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몇 개 이수해야 한다고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음. 더불어 자생단체도 의무교육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받아야 하는 문제에 대해 의견이 제기됨

- 생애주기별로 부모대상 교육을 강화하며, 결혼, 재혼, 이혼 과정에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받지 않으면 신고를 안받아주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또한 군대, 예비군, 민방위 교육 시에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 추진이 필요함
- 현재 학교에서는 관심이 없는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교육을 강제할 방법이 없음. 부모교육 반드시 받아야 하는 의무규정을 만드는 것이 필요함. 필요에 따라서는 가정을 찾아가는 제도를 만들어서라도 의무적으로 교육을 하는 방법이 필요함
- 현재 학교에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학기초라든가 학기말에 아동학대 및 정신건강 의심 징후 진단검사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도를 강화·확대하여 진단검사를 의무화하므로써, 교육과 상담이 필요한 아동과 가정을 선별하여 아동학대 예방교육과 상담을 하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함. 또한 학생들을 현장에서 가장 가까이서 관찰하고 도와줄 수 있는 선생님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더욱 강화·확대하므로써 학교에서의 아동학대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학교폭력, 안전, 정신건강, 아동학대 등 학교에서 아동에게 필요한 중요한 교육을 모아 통합교과목을 만들어 교육시키는 방법이 필요하며, 학생과 부모에게 배포할 책이나 교재,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여 아동학대 인식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함. 유치원 교사용 아동학대 자가 체크리스트가 있으며, 의료인이 아동학대를 구별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도 있음. 하지만 현재 초·중·고 교사용 체크리스트, 가정에서 부모가 자신이 얼마나 아동학대를 하는지 체크하는 체크리스트는 없기 때문에 체크리스트 개발이 필요성이 제기됨
- 교육청에 바라는 점은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달라는 것과 교육은 누가 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에 대해 명확한 기준과 다양한 연수와 홍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 그리고 교재 개발과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예산 지원이 필요함
- 신고의무자의 신고률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사례관리 차원에서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인력 증원과 처우개선이 시급히 필요함. 또한 예방 교육 현장이 많아짐에 따라 교육인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 일반가정보다 더 많이 아동학대의 위험에 노출된 장애가정 사례지원을 위해 찾아가는 지원이 필요함. 특히, 활동보조인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지적장애인 3급자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함(예, 동네 복지위원회 연계 사례관리)

- 자생단체나 주민단체 위원회를 하게 되면 성폭력이나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게끔 조례 제정이 필요하며, 조례제정이 어려울 경우는 도 업무지침이나 권고라고 했으면 함

제주지역 아동학대 예방대책 및 정책 제언

1. 요약 및 시사점
2. 정책 제언

1. 요약 및 시사점

가. 아동학대 인식

- 아동학대 예방교육이나 홍보로 인해 제주도민의 아동학대 인식 전반적으로 개선됐지만, 아직도 훈육이라는 이름하에 가정에서 학대가 이루어지고 있음. 부모들은 자녀교육에서 학대와 훈육을 구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부모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인식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자녀 양육과정에서 신체적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모는 34.0%, 모르겠다는 11.6%, 불필요하다는 54.4%로 나타나, 자녀양육에서 체벌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함을 알 수 있음
- 대부분의 부모들은 아동학대가 심각하다고 인식(84.2%)하고 아동학대 신고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94.8%), 실제로 부모들이 학대아동을 도와줄 수 있는 기관을 알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많은 부모들이 모르고 있었음(65.6%). 부모 대상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저조한 참여율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함
- 아동학대를 하는 장면을 보고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유로는 양육은 부모의 권한이므로 간섭할 수 없어서(68.2%), 개입할 정도로 심하지 않았거나 그 증거가 확실치 않아서(51.4%)로 나타났으며, 아동학대가 초기에 발견되지 못하고 은폐되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는 다양한 학대행위를 아동학대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사회인식(60.6%), 아동학대를 가족문제로 취급하는 사회적 분위기(57.6%)가 높게 나타남
- 부모의 신체적 아동학대 인식은 많이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도 정서적 학대는 낮은 학대인식을 가지고 있음. 부모들은 자녀 인권을 고려하지 않고 자녀를 나의 비속이고 내가 내 새끼니까 내 맘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아동인권 측면의 교육이 부모에게 확대 보급되어야 함. 특히, 부모의 아동학대 인식 개선을 위해 지역단위(동네, 마을) 찾아가는 교육이 필요함
- 아동들은 정서학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서학대를 당하고 있어도 정서학대를 당하는지 잘 모름. 부모들은 자녀훈육 과정에서 정서적 학대인 욕을 사용하거나 심하게 언어적 야단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부모교육

에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음

- 최근 아동의 신고률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은 아동학대 예방교육의 효과로 볼 수 있음. 하지만 아직도 신고를 어려워하는 학생이 많이 있음. 또한 학대받는 아동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을 알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60.0%의 아동들이 아동학대 신고전화를 ‘모른다’ 라고 응답함
- 생활하면서 고민이 있거나 어려움이 생기면, 주로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지 조사한 결과, 주로 부모님(84.1%), 다음으로 친구나 선·후배(46.3%), 학교 선생님(30.7%)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으로 나타남
- 자신에게 아동학대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하겠는지 조사한 결과, 아동들은 부모님(47.6%), 다음으로 경찰서(39.1%), 아동보호전문기관(38.2%), 선생님(24.1%) 순으로 도움을 요청함
- 친구에게 아동학대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하겠는지 조사한 결과, 선생님(45.3%)에, 다음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42.5%), 경찰서(42.4%), 부모(28.9%) 순으로 알리는 것으로 나타남
- 이상의 결과들은 아동과 부모 모두 아동학대 예방 및 인식개선 교육이 시급히 필요하고 특히, 아동대상으로 교육이 더 급함을 알 수 있음

나. 아동학대 예방 정책 방향

1) 현장에서 경험하는 어려움

- 아동복지법의 아동학대 개념은 포괄적이기 때문에 신고의무자 입장에서 보면 학대 기준이 모호하여 현장에서 적용하는데 혼란을 경험함. 현장에서 학대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학대기준과 훈육과 학대 범주에 대해 공론화가 필요함
-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보호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예방과 관련하여 좋은 교육이 많으나 부모들의 관심부재로 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부모교육 대상자 모집이 어렵고 늘 보이는 사람이 교육에 많이 보임. 사회 인식개선을 위해 다각적인 부모참여 방법을 모색해야함. 특히, 부모의 관심 유도를 위해 인센티브가 필요함. 예를 들어, 교육 이수증이 있으면 지방세 할인을 해주는 방안. 학교현장에서도 아동

학대 예방관련 부모교육을 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부모참석률로서 부모교육 의무화 방안이 모색 될 필요가 있음

- 현장에서 친권문제로 부모와 갈등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고, 친권 일시 정지 등 친권을 제한하기까지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법률적 측면의 문제가 산재함으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음. 또한 친권문제로 학대 보호자에게 알림으로서 일어나는 2차 학대 문제가 제기됨. 친권문제로 관련하여 빠르게 법률적, 서류적 문제를 처리하거나 도와주는 법률 도움 체계가 필요함
- 부모가 바쁘거나 상담 및 교육에 거부적일 때 사례관리가 어려움. 특히, 너무 늦은 시간에 부모가 집에 오거나 전화를 거부하는 경우 사례관리가 힘들기 때문에 사례관리 측면에서 부모의 참여를 의무화 할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함
- 현장에서 관련기관 간에 네트워크 문제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 기관 간 역할을 구체화 위한 협의체나 모임을 확대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더 나아가 기관 간 역할을 상세화한 매뉴얼 제작·보급이 필요함

2) 현장에서 바라본 아동학대 예방교육 정책의 방향

- 경찰조직이 아동학대 업무를 본인들의 업무로 중요하게 인식함. 더 나아가 아동학대 자체 조사를 경찰이나 공공쪽에서 해야한다고 인식변화가 있음. 전체적으로 경찰조직의 아동학대 인식이 긍정적으로 많이 변화하였으며, 그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으며, 지속적인 역할 강화가 필요함
- 위기가정이나 아동학대 예방교육이 꼭 필요한 가정을 찾아가는 상담 및 교육이 필요함. 특히, 예방교육을 거부하는 가정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교육이 이루어져야 사회인식개선이 빨라짐
- 부모의 교육이 어렵다면 먼 미래의 부모인 아동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함. 특히,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강화하는 것을 제안함
- 교육청에 바라는 점은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달라는 것과 교육은 누가 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에 대해 명확한 기준과 다양한 연수와 홍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 그리고 교재 개발과 프로그램을 운영

할 수 있는 예산 지원이 필요함

- 일반가정보다 더 많이 아동학대의 위험에 노출된 장애가정 사례지원을 위해 찾아가는 지원이 필요함. 특히, 활동보조인 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지적장애인 3급자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함(예, 동네 복지위원회 연계 사례관리)

2. 정책 제언

- 본 연구는 아동학대 사후관리 측면보다는 아동학대 인식개선과 예방대책 측면에 초점을 두었으며, 현 제주도 아동학대 정책에서 확대·보안해야 할 부분과 아동학대 실태조사와 심층면접을 통해 나타난 결과를 중심으로 정책 제언을 함

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확대와 인력 충원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이 효과적이고 긍정적 정책이기 때문에 더욱 확대가 필요함. 특히, 교사대상 신고의무자 교육을 강화 확대하고 학생교육 활성화가 필요함
- 신고의무자의 신고률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사건 처리와 재학대 예방을 위한 사례관리 차원에서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인력 증원이 필요하며, 일이 과중한 만큼 처우개선이 시급히 필요함. 또한 예방 교육 현장이 점점 많아짐에 따라 교육할 수 있는 인원 충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나. 아동학대 교육방법 개선

-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교육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현재의 교육방법을 바꾸어 1회성 교육과 집체교육 지양하며, 단순 지식 나열식 교육보다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사례중심의 소규모 교육이 활성화가 필요함

다. 지역 체감형 정책

- 지역에서 아동학대 예방 정책을 체감하기 어려움. 읍면동 협의체 위원들이 활동을 잘하는 곳도 있지만, 임원의 변화가 없고 형식적으로 사업을 하는 문제가 제기됨.

지역까지 내려가는 체감형 아동학대 예방 정책을 펼치기 위하여 지역 협의체 위원들에게 아동학대 근절 및 예방 교육을 의무화할 필요성이 제기됨. 또한 지역(마을) 전담 아동학대 예방 위원을 지정하여 아동학대 예방과 근절을 위해 앞장서도록 하며 연말에 그 실적을 가지고 포상도 하는 정책을 제안함

- 부모가 바쁘거나 너무 늦게 집에 오거나 교육에 거부적은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경우 사례관리가 힘들기 때문에 사례관리를 지역사회(마을) 위원과 연계하여 꾸준히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함

라. 현장 체감형 아동학대 교육 자료 및 자가 체크리스트 개발

-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체크리스트에 체크해보고 아동학대하고 있는 정도를 알 수 있는 체크리스트 개발이 필요함. 또한 현장에서 딱 필요할 때 쓸 교재 개발이 필요. 그리고 개발된 체크리스트를 선거 공보물이나 가정에 세금고지서, 도에서 보내는 각종 우편물에 지면을 활용하여 가정에 배포하는 방법을 제안함.

마. 아동학대 예방 교육 의무화 정책

- 부모대상 아동학대 의무교육이 필요함. 호주인 경우, 연금을 받을 때 운동을 하는지 정기적으로 체크하여 연금을 깎는 제도가 있음. 제주도의 지원을 받는 자는 모두 의무적으로 예방교육을 집중적으로 이수하지 않으면 지원금을 깎거나 불이익을 주며, 이수한 경우는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예, 자동차세를 할인하는 것처럼 지방세를 할인한다거나 각종 지원제도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
- 학교에서는 관심이 없는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교육을 강제할 방법이 없음. 부모교육 반드시 받아야 하는 의무규정을 만드는 것이 필요함. 필요에 따라서는 가정을 찾아가는 제도를 만들어서라도 의무적으로 교육을 하는 방법이 필요함
- 현재 정부에서는 온라인으로 양육수당을 신청할 때 의무적으로 4분정도의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음. 제주도의 지원을 받고 있는 수급자, 한부모, 장애인, 양육자 등에게 아동학대 예방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지원을 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위원회에 위촉을 받으려면 반드시 의무교육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몇 개 이수해

야 한다고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음. 더불어 자생단체도 의무교육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받아야 하는 문제에 대해 의견이 제기됨

- 자생단체나 주민단체 위원회를 하게 되면 성폭력이나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게끔 조례 제정이 필요하며, 조례제정이 어려울 경우는 도 업무지침이나 권고라고 했으면 함

바. 생애주기별 아동학대 예방교육 강제화 정책

- 생애주기별로 부모대상 교육을 강화하며, 결혼, 재혼, 이혼 과정에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받지 않으면 신고를 안받아주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또한 군대, 예비군, 민방위 교육 시에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 추진이 필요함

사. 학교현장 진단검사 도입과 사례관리

- 학교에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학기초라든가 학기말에 아동학대 및 정신건강 의심 징후 진단검사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도를 강화·확대하여 진단검사를 의무화함으로써, 교육과 상담이 필요한 아동과 가정을 선별하여 아동학대 예방교육과 상담을 하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함. 또한 학생들을 현장에서 가장 가까이서 관찰하고 도와줄 수 있는 선생님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더욱 강화·확대하므로써 학교에서의 아동학대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아. 학교현장에서 교과목을 활용한 아동교육 강화

- 학교폭력, 안전, 정신건강, 아동학대 등 학교에서 아동에게 필요한 중요한 교육을 모아 통합교과목을 만들어 교육시키는 방법이 필요하며, 학생과 부모에게 배포할 책이나 교재,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여 아동학대 인식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함. 현재 유치원 교사용 아동학대 자가 체크리스트와 의료인이 아동학대 아동을 선별하는 체크리스트가 있음

차.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법적 시스템 강화

- 아동학대 관련 기관 간 협력의 문제가 계속적으로 언급되고 있음.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 법원,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시설기관 등의 협력하여 사례회의를 하는 구체적 매뉴얼 마련과 법적 권한을 명시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학대아동을 도와주려고 해도 가족이 동의하지 않으면 접근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법적으로 경찰이나 아동전문기관이 교육이나 치료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시스템 구축과 친권문제와 관련하여 법률적으로 서류나 행정을 도와줄 수 있는 법률행정 지원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함

참고문헌

- 강동욱 (2016). 아동학대 관련 법령-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중심으로. **젠더리뷰(봄호)**.
- 강은영, 김희균 (2015). **아동학대의 실태와 학대피해아동 보호법제에 관한 연구**. 한국형 사정책연구원.
- 강지영, 배화옥 (2016). 아동학대 재발생 특성에 따른 하위집단 분류와 관련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권리학회**, 20(2), 177-198.
- 관계부처 합동 (2016). **아동학대 방지 대책(안)**.
- 관계부처 합동 (2016. 3. 27.). **보도참고자료**.
- 굿네이버스 (2016). **아동권리실태조사**.
- 굿네이버스 (2017. 6). 아동학대 현황과 개선 과제. **아동권리이슈포커스**, 8, 1-11.
- 김미숙 외 8인 (2011). **아동종합실태조사**.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지현 (2016). **아동학대 신고의무 관련 법률 및 미국 입법례**. 국회도서관.
- 김향미, 홍성대 (2016).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발생원인의 사례분석 연구. **Industry Promotion Research**, 1(1), 105-113.
- 김형모(2016). **서울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과제**. 서울특별시의회
- 김혜정, 신희영 (2017). **부산지역 아동학대 실태 및 인식조사**. 부산: 부산여성가족개발원.
- 문재우, 김상철, 이선화, 오현주 (2016). **아동학대 예방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한세대학교협력단(경기도 의회 용역 보고서).
- 보건복지부 (2016. 5. 2.). **보도참고자료**.
-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4, 2015). **전국아동학대현황 보고서**.
- 시사제주 (2017.03.31). **제주서 친딸 상습 학대 40대 男 징역형**.
- 오정옥, 이경원 (2015). 미취학아동 부모가 인식하고 경험하는 훈육과 학대에 관한 연구.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20(2), 247-271.
- 유재학, 박지선, 박두흠, 유승호, 하지현 (2009). 한국판 아동기 외상 질문지의 타당화: 상담 및 치료적 개입에서의 활용.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4(3), 563-578.

- 이만우 (2016). 제19대국회 아동학대 관련 쟁점 및 향후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 이은주 (2015). 아동학대보호체계의 변화와 개선방안. **한국가족복지학**, 20(1), 69-85.
- 이은주 (2016). 우리나라 학대피해아동의 보호서비스 개선방안. **한국케어매지니먼트연구**, 19, 73-94.
- 임종근 (2016). 무너지는 가정을 바로 세우는 교육이 시급. **National Assembly Review**, 14-15.
- 임홍수, 박송춘 (2016). 부모의 아동학대 실태와 대처방식에 관한 연구. **복지상담교육연구**, 5(1), 129-152.
- 전경숙 (2015). 아동학대 특례법 시행 1년, 쟁점과 향후과제.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전경숙, 김람희(2014). 경기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체계 구축 방안.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
- 정교영, 신희천 (2011). 한국판 부모 양육행동 척도의 타당화. **상담학연구**, 12(4), 1287-1305.
- 정규석(2016).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 **여성우리**, 55, 17-21.
- 제주일보 (2017.03.30). 14개월 딸 때려 숨지게 한 '비정한 아빠'.
-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청소년과 (2017.6.). 2017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종합계획.
- 조범근, 김준영, 배귀희, 문명재 (2017). 아동학대 보호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지방정부연구**, 20(4), 269-298.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6). 아동학대현황 속보치.
- 최영진(2015). 아동학대에 관한 법적 대응방안.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23(4), 349-378.
- 허남순·고윤순(2015). 한국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을 위한 특례법 시행 이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교정복지연구**, 37, 1-19.
- 허묘연(2004).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양육행동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청소년상담연구**, 12(2), 170-189.
- 홍순옥, 이옥경(2010). 초등학생 학부모의 아동학대에 관한 인식 연구. **아동교육**, 19(3), 75-90.
- 황옥경(2016). 아동학대 사후조사보다 예방에 주력해야. **National Assembly Review**, 18-19.

부 록

설문조사지

	<h2 style="margin: 0;">제주도내 아동 실태조사(아동용)</h2>
---	---

안녕하십니까?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출연 연구기관으로 제주지역에 맞는 여성 및 가족 정책을 연구·개발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조사는 아동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한 정책 개발에 목적이 있습니다. 귀하의 의견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아동정책을 만드는 데 귀중한 자료가 되오니 한 문항도 빠짐없이 성실히 응답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귀하가 응답하여 주시는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거하여 무기명 통계처리에만 사용되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절대 노출되지 않으며, 조사 내용은 연구 목적 이외에 일절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7년 6월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원장

이은희

<연구 및 조사 관련 문의사항 연락처>
 연구책임자: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연구원 김홍석 ☎ 064-710-3485

학교	_____초등학교 _____학년				
성별	① 남학생 ② 여학생				
가족구성	함께 살고 있는 가족에 “○”로 표시하고 ()안에 숫자로 답해 주세요.				
	친아빠 1	()명	친엄마 5	()명	할아버지 9 (외할아버지)
	새아빠 2	()명	새엄마 6	()명	할머니 10 (외할머니)
	형(오빠) 3	()명	남동생 7	()명	가족없음 11
	누나(언니) 4	()명	여동생 8	()명	기타 12 (삼촌, 이모 등)

A. 부모 양육태도

문1. 다음은 부모님(양육자)에 대한 평소 느낌을 묻는 것입니다. 일치하는 곳에 √표 해주세요.

(부모님 중 한 분 이상 함께 살고 있는 경우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응답, 부모님 두 분 모두 함께 살지 않은 경우는 돌봐주시는 분을 생각하면서 응답).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방과 후에 어디에 가는지 알고 계신다.	①	②	③	④
2) 내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알고 계신다.	①	②	③	④
3) 부모님의 결정을 무조건 따르게 하기보다는, 왜 그래야 하는지 설명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4) 부모님이 화내는 이유를 잘 설명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5) 같은 일에 대해서 화를 낼 때도 있고 안낼 때도 있다.	①	②	③	④

문2. 다음은 부모님(양육자)에 대한 평소 느낌을 묻는 것입니다. 일치하는 곳에 √표 해주세요.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6) 기분 내키는 대로 나를 대하신다.	①	②	③	④
7) 모든 면에서 남보다 잘해야 한다고 강조하신다.	①	②	③	④
8) 나에게 내 능력 이상의 높은 기대를 가지고 계신다.	①	②	③	④
9) 나의 사생활에 대해서까지 잔소리 하신다.	①	②	③	④
10) 작은 일에 대해서도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신다.	①	②	③	④

문3. 다음은 부모님(양육자)에 대한 평소 느낌을 묻는 것입니다. 일치하는 곳에 √표
 해주세요.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1) 내가 잘못하면 때부터 드신다.	①	②	③	④
12) 심하게 때려서 내 몸엔 항상 멍이나 상처가 있다.	①	②	③	④
13) 나에게 대해 관심이 없어서 칭찬하거나 혼내는 일이 없 다.	①	②	③	④
14)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관심이 없다.	①	②	③	④
15) 나를 좋아한다는 표현을 하신다.	①	②	③	④
16) 내가 힘들 때 나에게 용기를 주셨다.	①	②	③	④

문4. 부모님(양육자)은 다음의 훈육 방법을 어느 정도 사용하십니까?

내용	거의 사용 하지 않는 다	별로 사용 하지 않는 다	자주 사용 한다	매우 자주 사용 한다
1) 신체적 처벌	①	②	③	④
2) 별 세우기	①	②	③	④
3) 말로 야단치기	①	②	③	④
4) 장난감이나 게임기, 휴대폰 사용 제한하기	①	②	③	④
5) 선물, 말로 칭찬하기, 칭찬스티커 주기 등	①	②	③	④

B. 아동학대 인식

문5. 다음은 “부모님 혹은 다른 가족 구성원, 주변사람들과의 사이에서 겪었던 경험”을 나타낸 문항입니다. 잘 읽고 지금까지 다음과 같은 경험이 전혀 없으면 1점에서 자주 있었다고 생각되면 4점에 √표시를 해주십시오.

	내용	전혀 없음	드물 게 있음	가끔 있음	자주 있음
1)	내가 듣기 싫은 별명으로 부르곤 했다. (예: 멍청이, 똥똥이)	①	②	③	④
2)	나에게 “너 같은 애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어.”라고 말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3)	가족 중에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고 느꼈다.	①	②	③	④
4)	가족 중에 나에게 모욕적인 이야기나 심한 말 등을 해서 마음이 상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5)	나는 정서적으로 학대를 당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내용	전혀 없음	드물 게 있음	가끔 있음	자주 있음
6)	세계 맞아 멍이나 상처를 입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7)	세계 맞아 병원에 간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8)	회초리 이외에 물건(허리띠, 몽둥이)으로 맞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9)	나는 신체적으로 학대를 당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10)	다른 사람들이 알아볼 정도로 너무 많이 맞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문6. 다음은 “부모님 혹은 다른 가족 구성원, 주변사람들과의 사이에서 겪었던 경험”을 나타낸 문항입니다. 잘 읽고 지금까지 다음과 같은 경험이 전혀 없으면 1점에서 자주 있었다고 생각되면 4점에 √표시를 해주십시오.

내용	전혀 없음	드물 게 있음	가끔 있음	자주 있음
11) 가족 안에서 사랑받았다고 느꼈다.	①	②	③	④
12) 가족 안에서 내가 중요한 존재라는 생각이 들었다.	①	②	③	④
13) 우리 가족들은 서로 가깝다고 느꼈다.	①	②	③	④
14) 우리 가족은 나를 지지해준다고 느꼈다.	①	②	③	④
15) 우리 가족은 서로를 배려한다고 느꼈다.	①	②	③	④
내용	전혀 없음	드물 게 있음	가끔 있음	자주 있음
16) 나에게 제때 밥을 챙겨주지 않았다.	①	②	③	④
17) 가족들에게 나는 충분한 보살핌을 받았다.	①	②	③	④
18) 부모님이 술을 너무 많이 마셨다.	①	②	③	④
19) 내가 씻지 않거나 더러운 옷을 입어도 내버려둔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20) 내가 아파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①	②	③	④

문7. 『지난 1년 동안』 다음 행위에 대해 생각해 보고, 자신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에 √표 해주세요.

내용	어른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행위를 받은 적이 있는가?			이러한 행위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전혀 없다	가끔 있다	자주 있다	확대 가 아니 다	확대 인지 아닌 지 모르 겠다	확대 다
1) 칼이나 흉기로 위협하는 행위	①	②	③	①	②	③
2) 사정없이 마구 때리는 행위	①	②	③	①	②	③
3)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리는 행위	①	②	③	①	②	③
4) 물건(재떨이, 책, 그릇, 의자 등)을 던지는 행위	①	②	③	①	②	③
5) 회초리 이외의 물건(벨트, 막대기, 빗자루 등)으로 엉덩이 이외의 부분을 때리는 행위	①	②	③	①	②	③

문8. 『지난 1년 동안』 다음 행위에 대해 생각해 보고, 자신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에 √표 해주세요.

내용	어른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행위를 받은 적이 있는가?			이러한 행위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전혀 없다	가끔 있다	자주 있다	확대 가 아니 다	확대 인지 아닌 지 모르 겠다	확대 다
6) 손바닥으로 뺨, 얼굴, 머리를 때리는 행위	①	②	③	①	②	③
7) 세계 밀치는 행위	①	②	③	①	②	③
8) 회초리로 손바닥이나 엉덩이를 때리는 행위	①	②	③	①	②	③
9) 다락, 골방, 창고 등의 캄캄한 곳에 가두는 행위	①	②	③	①	②	③
10) "나가 죽어라"라고 말하는 행위	①	②	③	①	②	③

문9. 『지난 1년 동안』 다음 행위에 대해 생각해 보고, 자신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에 √표 해주세요.

내용	어른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행위를 받은 적이 있는가?			이러한 행위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전혀 없다	가끔 있다	자주 있다	학대 가 아니 다	학대 인지 아닌 지 모르 겠다	학대 다
11) 욕(멍청한 것, 못된 것, 병신 같은 것 등)을 하는 행위	①	②	③	①	②	③
12) "학교 그만두고 일이나 해라! 돈이나 벌어오라!" 라고 말하는 행위	①	②	③	①	②	③
13) 심하게 야단쳐서 기를 완전히 꺾는 행위	①	②	③	①	②	③
14) 몸이 아프다고 해도 그냥 내버려 두는 행위	①	②	③	①	②	③
15) 남의 물건이나 돈을 훔쳐도 전혀 상관하지 않는 행위	①	②	③	①	②	③
16) 식사 때가 되어도 밥을 챙겨주지 않는 행위	①	②	③	①	②	③
17) 집에 늦게 들어와도 신경 쓰지 않는 행위	①	②	③	①	②	③
18) 이유 없이 학교를 결석해도 아무 말도 안하는 행위	①	②	③	①	②	③
19) 어떤 친구들과 무엇을 하며 놀든지 전혀 상관하지 않는 행위	①	②	③	①	②	③
20) 위험한 물건(칼, 압정, 핀 등)을 가지고 놀아도 내버려 두는 행위	①	②	③	①	②	③

문10. 『지난 1년 동안』 다음 행위에 대해 생각해 보고, 자신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에 √표 해주세요.

내용	어른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행위를 받은 적이 있는가?			이러한 행위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전혀 없다	가끔 있다	자주 있다	확대 가 아니 다	확대 인지 아닌 지 모르 겠다	확대 다
21) 옷이 더러워져도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혀 주지 않는 행위	1	2	3	1	2	3
22) 어두워질 때까지 혼자 집을 보게 하는 행위	1	2	3	1	2	3
23) 싫어하는데도 어른이 자기 몸을 만져 달라고 하는 행위	1	2	3	1	2	3
24) 어른이 성기를 만지는 행위	1	2	3	1	2	3
25) 성인이 발가벗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비디오(동영상)나 책을 보여주는 행위	1	2	3	1	2	3
26) 억지로 옷을 벗겨 몸을 보려고 하는 행위	1	2	3	1	2	3
27) 싫다고 해도 몸을 만지는 행위	1	2	3	1	2	3
28) 억지로 입을 맞추는 행위	1	2	3	1	2	3

문11. 생활하면서 고민이 있거나 어려움이 생기면, 주로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합니까? (택 2)

- | | |
|---------------------------|----------|
| ① 부모님 | ② 친척 |
| ③ 학교 선생님 | ④ 이웃주민 |
| ⑤ 기관(사회복지관, 지역아동센터 등) 선생님 | ⑥ 친구 부모님 |
| ⑦ 학원/과외 선생님 | ⑧ 경찰 |
| ⑨ 친구, 선.후배 | |

문15. 친구에게 아동학대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택 2)

- ① 그냥 가만히 있다.
- ②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한다.
- ③ 이웃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 ④ 경찰서에 신고한다.
- ⑤ 형제자매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 ⑥ 친구(학교, 학원)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 ⑦ 아빠나 엄마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 ⑧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한다.
- ⑨ 기타()

♣ 설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A. 가정생활 및 자녀 양육

문1. 현재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까?

- ① 그렇다 ② 아니다

문2. 현재 결혼생활에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불만족하다 ② 불만족한 편이다 ③ 만족하는 편이다 ④ 매우 만족한다

문3. 다음은 자녀 양육행동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신과 일치하는 곳에 √표 해주세요.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우리 아이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2) 나는 우리 아이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3) 나는 부모의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 지에 대해 아이에게 분명히 한다.	①	②	③	④
4) 나는 내가 허락해서는 안 되는 것도 우리 아이가 하도록 내버려둔다.	①	②	③	④
5) 나는 우리 아이의 감정을 듣기 힘들 때조차도, 아이에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도록 격려한다.	①	②	③	④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6) 우리 아이는 매번 나와 싸운다.	①	②	③	④
7) 나는 벌어지는 일에 대해 우리 아이가 어떻게 느끼는지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8) 나는 종종 우리 아이를 좋아하기가 힘들다.	①	②	③	④
9) 나는 우리 아이에게 내가 무엇을 기대하는지 분명히 한다.	①	②	③	④
10) 우리 아이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내 반응은 정말 종잡을 수 없다.	①	②	③	④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 지 않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1) 나는 우리 아이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때조차도, 아이에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도록 격려한다.	①	②	③	④
12) 우리 아이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내 반응은 정말 종잡을 수 없다.	①	②	③	④
13) 나는 우리 아이와 특별한 것들을 한다.	①	②	③	④
14) 이따금 나는 우리 아이의 요구가 부담스럽다.	①	②	③	④
15) 우리 아이는 내가 무엇을 기대하는지 모르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 지 않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6) 나는 우리 아이가 많은 것을 스스로 결정하도록 내버려 둘 여유가 없다.	①	②	③	④
17) 나는 시간을 내서 우리아이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에 대해 대화를 나눈다.	①	②	③	④
18) 우리 아이는 내가 줄 수 있는 이상의 시간을 필요로 한다.	①	②	③	④
19) 나는 집에서 규칙을 자주 바꾼다.	①	②	③	④
20) 나는 때때로 아이에게 뭔가를 하도록 독촉해야 한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 지 않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21) 나는 언제든지 우리 아이를 위한 시간을 낼 수 있다.	①	②	③	④
22) 때때로 나는 '우리 아이가 나를 필요로 할 때 그곳에 함께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23) 나는 우리 아이와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나 자신을 보곤 한다.	①	②	③	④

B. 학대 인식

문6. 『지난 1년 동안』 다음 행위에 대해 생각해 보고, 가장 가까운 것에 √표 해주세요.

내용	아동이나 자녀에게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있는가?			이러한 행위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전혀 없다	가끔 있다	자주 있다	학대가 아니다	학대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학대다
1) 칼이나 흉기로 위협하는 행위	①	②	③	①	②	③
2) 사정없이 마구 때리는 행위	①	②	③	①	②	③
3)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리는 행위	①	②	③	①	②	③
4) 물건(재떨이, 책, 그릇, 의자 등)을 던지는 행위	①	②	③	①	②	③
5) 회초리 이외의 물건(벨트, 막대기, 빗자루 등)으로 엉덩이 이외의 부분을 때리는 행위	①	②	③	①	②	③
6) 손바닥으로 뺨, 얼굴, 머리를 때리는 행위	①	②	③	①	②	③
7) 세계 밀치는 행위	①	②	③	①	②	③
8) 회초리로 손바닥이나 엉덩이를 때리는 행위	①	②	③	①	②	③
9) 다락, 골방, 창고 등의 캄캄한 곳에 가두는 행위	①	②	③	①	②	③
10) 아동에게 "나가 죽어라"라고 말하는 행위	①	②	③	①	②	③

문7. 『지난 1년 동안』 다음 행위에 대해 생각해 보고, 가장 가까운 것에 √ 표 해주세요.

내용	아동이나 자녀에게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있는가?			이러한 행위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전혀 없다	가끔 있다	자주 있다	확대 가 아니 다	확대 인지 아닌 지 모르 겠다	확대 다
11) 욕(멍청한 것, 못된 것, 병신 같은 것 등)을 하는 행위	①	②	③	①	②	③
12) "학교 그만두고 일이나 해라! 돈이나 벌 어오라!" 라고 말하는 행위	①	②	③	①	②	③
13) 심하게 야단쳐서 아동의 기를 완전히 꺾는 행위	①	②	③	①	②	③
14) 몸이 아프다고 해도 그냥 내버려 두는 행위	①	②	③	①	②	③
15) 남의 물건이나 돈을 훔쳐도 전혀 상관하지 않는 행위	①	②	③	①	②	③
16) 아동에게 식사 때가 되어도 밥을 챙겨주지 않는 행위	①	②	③	①	②	③
17) 아동의 집에 늦게 들어와도 신경 쓰지 않는 행위	①	②	③	①	②	③
18) 이유 없이 학교를 결석해도 아동에게 아무 말도 안하는 행위	①	②	③	①	②	③
19) 아동이 어떤 친구들과 무엇을 하며 놀든지 전혀 상관하지 않는 행위	①	②	③	①	②	③
20) 위험한 물건(칼, 압정, 핀 등)을 가지고 놀아도 내버려 두는 행위	①	②	③	①	②	③

문8. 『지난 1년 동안』 다음 행위에 대해 생각해 보고, 가장 가까운 것에 √표 해주세요.

내용	아동이나 자녀에게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있는가?			이러한 행위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전혀 없다	가끔 있다	자주 있다	확대 가 아니 다	확대 인지 아닌 지 모르 겠다	확대 다
21) 아동의 옷이 더러워져도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혀 주지 않는 행위	①	②	③	①	②	③
22) 어두워질 때까지 아동 혼자 집을 보게 하는 행위	①	②	③	①	②	③
23) 아동이 싫어하는데도 어른이 자기 몸을 만져 달라고 하는 행위	①	②	③	①	②	③
24) 어른이 아동의 성기를 만지는 행위	①	②	③	①	②	③
25) 성인이 발가벗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비디오(동영상)나 책을 아동에게 보여주는 행위	①	②	③	①	②	③
26) 역지로 아동의 옷을 벗겨 아동의 몸을 보려고 하는 행위	①	②	③	①	②	③
27) 아동이 싫다고 해도 아동의 몸을 만지는 행위	①	②	③	①	②	③
28) 역지로 아동의 입을 맞추는 행위	①	②	③	①	②	③

연구보고서 2017-06

제주지역 아동학대 실태 및 예방대책

발행일 2017년 9월 30일

발행인 이 은 희

발행처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30(연동)

☎064-710-3482, Fax.064-710-3489

www.jewfri.kr

인쇄소 열린출판기획

※ 이 보고서는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롭게 인용은 가능하나
내용의 무단 전제나 복제를 금합니다.

ISBN : 979-11-87026-21-1

제주지역 아동학대 실태 및 예방대책



제주여성가족연구원

6312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30(연동)

✉ jewfir@jewfri.kr 🏠 www.jewfri.kr



9 3330

9 791187 026211

ISBN 979-11-87026-21-1